

전국범죄피해조사(Ⅳ)

-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

Korean Crime Victim Survey(Ⅳ)

- Comparative Study on Crime Victim Survey Methodology -

최수형 | 탁종연



발 간 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4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본조사인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알 수 없는 숨은 범죄를 파악하여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범죄피해양상은 물론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범죄피해 실태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조사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범죄피해조사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통해 표본의 확대 및 조사방법론의 개선은 물론 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피해조사의 전면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범죄피해조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습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범죄피해보고율 차이에 대한 검토와 조사표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규조사와는 별도로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개편 전·후 범죄피해조사표의 효과분석을 통해 개편 작업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범죄피해조사에 사용하지 않았던 온라인조사방식을 자료수집방법으로 적용함으로써 온라인조사방식과 오프라인조사방식을 통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조사방식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조사응답의 주체인 조사응답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지적 면접조사를 설문조사와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방법론적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 향후 범죄피해조사가 정확성과 타당성, 그리고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자문을 아끼

지 않았던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치하합니다. 끝으로 연구를 맡아 수
행한 최수형 연구위원과 한남대 탁종연 교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 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최수형)	2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26
제2장 개편 전·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 및 선행연구 검토 (탁종연)	29
제1절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표본추출 및 추정방식 비교	31
1. 신규 표본크기 및 선정방식	31
2. 설문도구 비교	34
3. 요약	39
제2절 범죄피해조사표 수정의 효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40
1. 미국의 사례	40
2. 한국의 사례	41
제3장 연구방법 (최수형·탁종연)	43
제1절 설문조사	46
1. 모집단 및 표본설계	46
2. 조사의 실시	55
3.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72
제2절 인지적 면접조사	80
1. 조사 설계	81
2. 조사 진행 방식	83
제4장 조사표의 효과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탁종연·최수형)	87
제1절 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	89

제2절 개편 전·후 피해조사에 나타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비교	9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90
2. 전체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92
3. 지역별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96
4. 응답자 특성별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99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5
제3절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 비교	108
1. 미응답 비교	108
2. 응답자의 반응 및 인식	110
3. 조사원이 관찰한 응답자의 반응	112
제4절 요약	113

제5장 조사응답과정에 대한 분석 : 인지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최수형)	117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9
제2절 인지면접조사 결과	120
1. 개편 전·후 조사표 비교 평가	120
2.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응답오류의 가능성	129
3. 조사방법에 대한 선호도	155
제3절 요약	160

제6장 자료수집방법의 효과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최수형)	163
제1절 조사방법에 따른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비교	16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65
2.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168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74
제2절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 비교	177
1. 응답자의 반응 및 인식	177
2.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유	183
3. 미응답 비교	186
4. 범죄피해조사의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188

제3절 요약	192
제7장 결론(최수형)	19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99
1. 조사표 효과 분석 결과	199
2. 조사응답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200
3. 자료수집방법 효과 분석 결과	202
제2절 향후 개선사항	204
1. 조사표 수정 및 개선	204
2. 자료수집방식 보완	207
3. 조사기준 기간의 통일	208
4. 다양한 접근의 범죄피해조사 진행의 필요성	209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210
참고문헌	213
Abstract	215
부록	219
부록 1. 범죄피해조사표 비교연구를 위한 조사 지침서 및 참여안내문	
1-1. 범죄피해조사표 비교 연구 조사 지침서	219
1-2. C형 조사에 대한 참여 안내문	311
1-3. C형 조사형 스크립트(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 및 피해경험 수 결정식)	313
부록 2. 인지면접조사 지침서 및 자료제공 동의서	
2-1. 인지면접조사 지침서	320
2-2. 참여안내 및 자료제공 동의서	325
부록 3. 인지면접사전조사표	
3-1. 개편 전 범죄피해 스크리닝 질문(A형)	327
3-2. 개편 후 조사표 범죄피해 스크리닝 질문(B형)	330
3-3. 배경변인 및 범죄피해 관련 이론적 변인(C형)	334
부록 4. 조사표 효과분석에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비교 시 중복사례 관련 조치 내용	341

표 차례

〈표 3-1-1〉 모집단 분포	47
〈표 3-1-2〉 층의 개수	48
〈표 3-1-3〉 표본수	49
〈표 3-1-4〉 조사표본	49
〈표 3-1-5〉 최종 표본 배분표	50
〈표 3-1-6〉 최종 집계구 배분표	53
〈표 3-1-7〉 단계별 집계구 추출방식	54
〈표 3-1-8〉 표본 가구추출방식	54
〈표 3-1-9〉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55
〈표 3-1-10〉 설문지 및 조사방법의 유형	57
〈표 3-1-11〉 실사개요	58
〈표 3-1-12〉 조사대상자의 기준	59
〈표 3-1-13〉 조사표 구성	60
〈표 3-1-14〉 가구 대체 원칙	62
〈표 3-1-15〉 유형별 조사방법	63
〈표 3-1-16〉 조사 A형의 조사진행 방식	64
〈표 3-1-17〉 조사 B형의 조사진행 방식	64
〈표 3-1-18〉 조사 C형의 조사진행 방식	65
〈표 3-1-19〉 조사인력현황	66
〈표 3-1-20〉 단계별 조사원 교육 내용	67
〈표 3-1-21〉 집계구 대체현황	68
〈표 3-1-22〉 조사유형별 응답률 현황	69
〈표 3-1-23〉 조사유형별 답례품 지급 기준	70
〈표 3-1-24〉 유형별 평균 조사기간	70
〈표 3-1-25〉 조사방법별 검증 실시 결과	71
〈표 3-1-26〉 분석대상 및 내용의 유형	73
〈표 3-1-27〉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 판별조건식	77
〈표 3-1-28〉 개인대상 범죄피해유형 판별조건식	78
〈표 3-1-29〉 기본형 범죄유형 결정규칙	79
〈표 3-2-1〉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81
〈표 3-2-2〉 인지면접조사 설계	83
〈표 4-1-1〉 전국 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피해율의 추이	90

〈표 4-2-1〉 조사표 유형에 따른 설문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91
〈표 4-2-2〉 신규 조사표에 따른 피해자 빈도 비교	93
〈표 4-2-3〉 신규 조사표에 따른 천 명당 피해율 비교	94
〈표 4-2-4〉 2012년 범죄피해조사 피해율과 현재 설문방식 피해율 비교	95
〈표 4-2-5〉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조사표별 피해율 비교	97
〈표 4-2-6〉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신규 조사표 피해율 비교	98
〈표 4-2-7〉 지역특성별 과거방식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과 현재방식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98
〈표 4-2-8〉 성별 과거방식 피해율과 현재방식 피해율의 비율	99
〈표 4-2-9〉 나이대별 과거방식 피해경험 보고율과 현재방식 피해경험 보고율의 비율	101
〈표 4-2-10〉 가구 소득별 과거방식 피해율과 현재방식 피해율의 비율	102
〈표 4-2-11〉 학력수준 과거방식 피해경험 보고율과 현재방식 피해경험 보고율의 비율	104
〈표 4-2-12〉 응답자 특성별 과거방식 피해경험 보고율과 현재방식 피해경험 보고율의 비율	105
〈표 4-2-13〉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조사표의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효과 분석)	106
〈표 4-2-14〉 조사표와 응답자특성이 전체 범죄피해 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107
〈표 4-2-15〉 조사표와 응답자특성이 개별 범죄피해 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107
〈표 4-3-1〉 설문지별 피해경험 회상 후 미응답 인정 빈도	108
〈표 4-3-2〉 두 설문도구에 기록된 피해응답사례와 미응답 건수 비교	109
〈표 4-3-3〉 설문지별 응답자들의 주관적 반응 비교	111
〈표 4-3-4〉 설문지별 조사원들이 느낀 응답자들의 반응비교	112
〈표 5-1-1〉 인지면접 대상자 기본정보	120
〈표 6-1-1〉 조사방법(오프라인/온라인)별 조사대상 수	166
〈표 6-1-2〉 조사방법별 설문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167
〈표 6-1-3〉 피해횟수별 피해자 수 분포	168
〈표 6-1-4〉 조사방법에 따른 범죄피해 횟수별 피해자 수 차이	169
〈표 6-1-5〉 세부 조사방법에 따른 피해 횟수별 피해자 수 분포 비교	169
〈표 6-1-6〉 개인대상 범죄피해 분포	170
〈표 6-1-7〉 조사방법에 의한 개인대상 범죄피해 건수 차이	170

〈표 6-1-8〉 개인대상 폭력범죄피해 분포	171
〈표 6-1-9〉 조사방법에 의한 개인대상 폭력범죄피해 건수 차이	172
〈표 6-1-10〉 개인대상 재산범죄피해 건수	172
〈표 6-1-11〉 조사방법에 의한 개인대상 재산범죄피해 건수 차이	173
〈표 6-1-12〉 가구대상 범죄피해 분포	173
〈표 6-1-13〉 조사방법에 의한 가구대상 범죄피해 건수 차이	174
〈표 6-1-14〉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	175
〈표 6-1-15〉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자특성이 가구 대상 범죄 피해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175
〈표 6-1-16〉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자특성이 개인 대상 범죄 피해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176
〈표 6-1-17〉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자특성이 개별 범죄피해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177
〈표 6-2-1〉 조사유형에 따른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의 차이	178
〈표 6-2-2〉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	179
〈표 6-2-3〉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	180
〈표 6-2-4〉 조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반응 및 인식	181
〈표 6-2-5〉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 및 인식의 차이	182
〈표 6-2-6〉 세부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 및 인식의 차이	182
〈표 6-2-7〉 조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 및 인식에 대한 조사방법유형 비교 ...	183
〈표 6-2-8〉 세부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 및 인식 차이	183
〈표 6-2-9〉 설문에 응한 이유(표준화 가중치 적용)	184
〈표 6-2-10〉 조사방법에 따른 설문에 응한 이유 차이	185
〈표 6-2-11〉 조사방법에 따른 설문에 응한 이유 차이	185
〈표 6-2-12〉 자료수집방법별 피해응답사례와 미응답 건수 비교	187
〈표 6-2-13〉 범죄피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87
〈표 6-2-14〉 세부 조사방법별 범죄피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88
〈표 6-2-15〉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	189
〈표 6-2-16〉 세부 조사방법별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	190
〈표 6-2-17〉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	191
〈표 6-2-18〉 조사방식에 따른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	192

그림 차례

[그림 3-1-1] 집계구 정보	47
[그림 3-1-2] 다단계 총화 과정	48
[그림 3-1-3] 조사표 및 자료수집방법의 유형과 비교 내용	57
[그림 3-1-4] 집계구 조사방식	58
[그림 3-1-5] 집계구 조사방법	61
[그림 3-1-6] 집계구 구역 요도 및 집계구 주변 지역 요도	63
[그림 3-1-7] 조사교육 진행절차	67
[그림 3-1-8] 자료처리 과정	72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범죄피해조사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이는 2천개의 표본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소규모 설문조사였다. 이후 2008년에 범죄피해조사 개편 준비위원회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의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여 2009년 개편 후 제1차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하였다.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실시되어 2014년 현재 제3차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완료되었다. 개편 전·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 규모를 비교해보면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은 조사시행 시점 2013년 기준 6,300가구 13,317명으로 개편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세 차례에 걸친 모든 조사를 통계청에서 직접 대규모의 무작위표집을 실시하였고, 실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적용된 조사방법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 비해 향상된 것은 분명하지만 범죄피해조사의 전면적인 개편작업 이후 개편 전·후 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보고율 차이에 대한 검토 작업 뿐 아니라 개편작업을 거친 조사표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개편된 범죄피해조사가 시행된 이후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가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실사 차원의 어려움 뿐 아니라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솔직한 응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아이디어를 주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는 온라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김지선·홍영오, 2011 : 278; 김은경 외 2013 : 339)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조사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온라인조사를 적용하여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

한편, 지금까지 조사방법론 분야의 연구에서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표본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집오차에 대한 통제방법을 중심으로 조사오차를 줄이는데 주목

14 • 전국범죄피해조사(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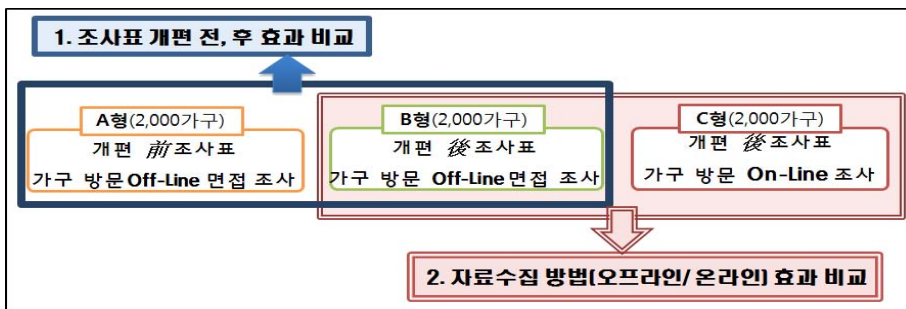
++하여 상대적으로 조사표나 자료수집방법, 응답자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비표집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박영실, 2013 : 76-77). 특히, 조사응답의 주체인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는 조사표 설계나 조사표 평가 과정에서 있어서 필수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 도입한 전국범죄피해조사 개편방법의 효과, 특히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에 큰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 변경의 효과뿐 아니라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에 도입된 적이 없는 온라인조사방식을 지금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 중인 오프라인 면접조사방식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그 차이를 검증하고 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 및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응답 오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경험적 자료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범죄피해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여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범죄피해조사와 같은 종단적 조사 자료의 특성상 조사방식과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계열자료 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조사는 매 회 조사 때 마다 조사방법의 수정과 개선 작업을 반복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축적한 후 그에 따른 검토 작업을 통해 2009년 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작업과 같이 일정 기간 이후 범죄피해조사의 전체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 설문조사 : 세 개의 무작위 표본에 대해 모든 방법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복수의 설문방식(A형 : 개편전조사표+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B형 : 개편후조사표+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C형 : 개편후조사표+가구방문온라인조사)을 통해 조사표의 효과와 온라인조사라는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표본 수는 6,000가구이며 3가지의 조사 유형을 번갈아가며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가구방문을 원칙으로 하였고 조사 A형은 개편 전 조사표를 사용해 조사원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B형은 개편 후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원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C형은 개편 후 조사표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설문조사 유형 및 비교 내용

- 인지적 면접조사 : 일대일면접상황에서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지적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전·후 조사표의 가장 큰 변화는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이다. 이에 인지면접조사에서는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형식의 차이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이해 수준과 개편 후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에 대한 응답형성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배경변인이나 범죄피해 관련 이론적 변인 문항에 대한 응답오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 및 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태도 등의 주요 문항을 선별하여 예상쟁점과 면접지침을 구성하고, 면접조사 과정에서 응답자 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발견빈도는 낮더라도 조사표 설계상 주요한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면접에 참여할 사람에 대한 리쿠르팅의 경우는 자발적인 연구참여자 가운데 연구참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10명을 추출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3. 주요 분석 결과

■ 조사표의 효과분석

2006년 이전 범죄피해조사의 도구로 사용하던 과거의 설문지와 2012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범죄피해율을 비교함으로써 각 설문지의 피해 경험 포착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존에 범죄피해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논의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006년 이전의 설문도구에서 1.8배 더 높은 피해율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피해율의 차이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보다 폭행 및 상해나 성폭력과 같은 대인범죄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개편 후 설문지의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이 개편 전 설문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까? 설문도구를 비교하면 과거 설문지가 오히려 범죄피해경험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장치를 많이 갖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개편 전 조사표에서는 조사응답자의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여성 응답자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성희롱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피해 사례를 기록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의 범죄피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본인의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할 준비단계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개편 후 조사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특정한 범죄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 질문함에 있어서 개별 문항마다 절도, 폭력, 협박 등 다양한 범죄피해경험을 묻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개편 전·후 조사표 효과 분석을 통해 그동안 간과했던 개편 전의 범죄피해조사표가 범죄피해 경험을 보고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강점과 개편 후의 범죄피해조사표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표 효과 분석 결과만으로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평가나 개편 효과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다. 즉, 범죄피해조사 개편 작업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인지적 면접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조사응답과정에 대한 분석

조사표에 따른 범죄피해보고율의 차이나 조사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에 대한 분

석 결과는 설문지 개편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경험을 발굴하고자 함에 있어서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는 조사응답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된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보고형태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개편 작업의 시작이었다. 즉,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범죄피해보고율이 개편 전의 조사표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개편 전 조사표에서 응답한 모든 범죄피해경험이 본래 범죄피해조사에서 포착하고자 한 범죄피해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개편 전 설문도구는 조사응답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범죄의 기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응답오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조사표를 통한 범죄피해 보고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사응답자가 개편 후 조사표의 핵심인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예시를 꼼꼼하게 읽었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즉, 조사표 효과분석의 결과만으로는 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작업 결과에 대한 효과를 단언할 수 없다. 조사표 개편의 취지는 일반인이 법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과는 상관없이 행위나 행위자, 행위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항을 보고 그러한 관련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함으로써 피해 경험을 기억해 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조사응답자에게는 조사 응답 시 그저 읽어야 할 내용이 많아 부담의 요인이 작용하여 제대로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사표 효과분석의 결과로 무조건 높은 범죄피해보고율을 보이는 조사표가 더 낫다는 식의 평가는 할 수 없다. 특히,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가 과거의 개편 전 조사에 비해 낮은 범죄피해보고율을 보였다고 해서 조사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고 대규모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청에 의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의 발전적인 시도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피해를 경험하고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해 응답할 수 없는 경험을 자극하기 위한 질문 방식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도구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질문 방식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에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인지적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편 전·후 조사표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평가를 보면 개편 후의 조사표가 개편 전의 조사표보다 응답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경험을 회상하는 데 더 용이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실제로 참여자 가운데 개편 전 설문도구를 통해서 회상자극을 받지 못했지만 개편 후의 설문도구를 통해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인지면접조사 결과 참여자의 대부분이 개편 후 조사표의 질문과 예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 방식과 개별 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의 내용적인 면과 구성 및 형식적인 면에서 응답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에서 개별 문항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경험을 묻고 있고 범죄피해경험 회상 질문에서 제시하는 예시의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예시가 지나치게 많거나 혹은 너무 많은 문구를 진하게 표시하는 등의 기술적인 부분의 미흡함 등이 응답오류의 원인이었다. 이 외에도 동일사건 중복 보고 방지를 위한 문구와 조사기준 시점의 차이 역시 조사응답자의 응답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범죄피해조사표를 가지고 자료수집방법의 차이에 따라 범죄피해경험 보고율과 조사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수집방법의 차이가 범죄피해경험 보고에 영향을 주는지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범죄피해경험 보고여부를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이나 강도, 폭행과 같은 폭력범죄 피해 경험 보고에서 자료수집방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모두 동일할 때 현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조사)에서는 온라인조사방식에서 보다 폭력범죄피해 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0.2배 떨어졌다. 이처럼 폭력범죄피해의 경우는 오프라인조사 방식보다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통한 조사가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을 높이는데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측면에서 온라인조사를 경험한 조사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면은 약하고 부정적인 면은 강하게 나타나 범죄피해조사에 온라인 조사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사응답의 이해도 및 편의성을 위한 장

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발전을 위해 실시한 최초의 대규모 설문조사로 서울·경기지역 6천 가구(12,285명)라는 표본의 크기 뿐 아니라 무작위 확률표본 방식을 사용하였고 조사표와 조사방법의 효과 분석을 위해 반분조사 방식을 응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인지적 면접조사를 통해 그동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표본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범죄피해경험 응답율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통계상으로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감소추세이고 실제로 범죄피해건수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본 조사는 기존의 정규조사인 범죄피해조사와의 결과를 비교하거나 전국의 범죄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분조사의 성격을 지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직접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조사가 아니고 통계청을 통한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표본추출틀이 집계구 정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실사는 민간사회조사업체에 고용된 조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결국 가구 응답율로 이어져 조사컨택가구 가운데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사실 조사를 거부한 사례의 상당부분이 실제로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피해경험을 회상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 관련 내용의 설문에 응하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소규모 표본을 통해 실시된 인지적 면접조사 결과를 조사응답자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인집면접조사는 사전에 준비된 공간에서 행해진 것으로 실제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든 조사방법론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에 앞으로 인지적 면접조사의 반복적인 측정 등의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박영실 외, 2013 : 52).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분명하다. 내년에 시행될 제4차 범죄피해조사부터는 민간조사업체를 통한 실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본 조사의 경험은 내년도에 진행될 정규조사의 표본 추출이나 실사 과정의 원칙과 지침을 새롭게 정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표 효과분석과 인지적 면접조사의 분석 결과는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현실화하여 개편 전·후 조사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한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인 온라인조사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방안 제시가 가능하였다. 이에 앞으로 범죄피해경험 보고응답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한 설문도구 및 자료수집방법의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관련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와 같은 접근 방식의 조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관련 연구의 축적과 지속적인 검토 작업으로 범죄피해조사가 정확성, 타당성, 유용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최수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범죄피해조사는 공식범죄통계로는 알 수 없는 범죄피해규모의 정확한 파악,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다(김준호·심영희·조정희, 1991).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행정원)은 1991년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3년 현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 형태의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규모의 범죄피해조사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2천개의 표본으로 3년에 한번씩 시행되다가 2008년에 행정원은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발전을 위해 범죄피해조사 개편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에 범죄피해조사 개편준비위원회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범죄피해조사의 형태 및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범죄피해조사를 기획하여 2009년 제1차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하였다.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실시되어 2014년 현재 제3차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완료되었다. 개편 전·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 규모를 비교해보면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이 2,000명인데 반해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은 조시가 시행된 시점으로 2013년 기준 6,300가구 13,317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세 차례에 걸친 모든 조사를 통계청에서 대규모의 무작위표집을 통해 실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조사응답자의 지난 한 해동안의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구체적인 행위 중심의 다양한 예시항목 등을 통해 범죄피해회상자극 질문과 자신이 경험한 범죄피해 유형과는 상관없이 문항을 따라 가며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춘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응답자 스스로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범죄인 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없다.

이처럼 새롭게 적용된 조사방법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 비해 향상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범죄피해 자료와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 342;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 : 338). 즉, 개편작업을 거친 조사표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개편 전·후 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보고나 관련 인식 등의 차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개편된 범죄피해조사가 시행된 이후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가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실사 차원의 어려움 뿐 아니라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솔직한 응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아이디를 주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는 온라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김지선·홍영오, 2011 : 278; 김은경 외 2013 : 339)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조사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온라인조사를 적용하여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 즉, 온라인을 통한 조사의 경우 가구원 전원과의 접촉을 위해 반복적인 가구방문이나 장기 부재중인 가구원을 위해 일정 양의 조사표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실사 과정의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온라인 조사가 가구방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피해조사의 자료수집방법으로 효율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피해경험 보고가 핵심인 범죄피해조사에 온라인을 통한 자료수집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검증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조사방법론 분야의 연구에서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표본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집오차에 대한 통제방법을 중심으로 조사오차를 줄이는데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조사표나 자료수집방법, 응답자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비표집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박영실, 2013 : 76-77). 이러한 문제점 인식의 확산과 함께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여 조사설계 및 조사표 평가방식으로 인지면접조사(cognitive interviewing)가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면접조사를 통해 그동안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조사표를 응답하는 주체인 조사응답자의 개편 전·후 조사에 대한 이해 수준과 응답과정 등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조사응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해 충분한 논의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조사표 개편 과정에 있어서 조사응답자의 응답과정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생략되어 실제 실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반응이나 태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잘못된 이해 등으로 생긴 응답오류는 결국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어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인지면접조사는 이와 관련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는 2009년에 도입한 전국범죄피해조사 개편방법의 효과, 특히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 변경의 효과뿐 아니라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에 도입된 적이 없는 온라인조사방식을 지금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 중인 오프라인 면접조사방식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그 차이를 검증하고 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반분조사방식을 통한 설문조사와 인지면접조사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두 개 이상의 무작위 표본에 대해 조사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사 방법은 동일하게 한 후,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조사표 차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는 반분조사(박영실, 2013;79)의 형태를 응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 개의 무작위 표본에 대해 모든 방법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복수의 설문방식(A형 : 개편전조사표+오프라인면접조사, B형 : 개편후조사표+오프라인면접조사, C형 : 개편후조사표+온라인조사)을 통해 조사표의 효과와 온라인조사라는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일대일면접상황에서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지적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 및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응답 오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경험

적 자료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범죄피해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여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범죄피해조사와 같은 종단적 조사 자료의 특성상 조사방식과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계열자료 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조사는 매 회 조사 때 마다 조사방법의 수정과 개선 작업을 반복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축적한 후 그에 따른 검토 작업을 통해 2009년 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작업에서처럼 일정 기간 이후 범죄피해조사의 전체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는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발전을 위한 실증적 조사연구로 1장의 서론과 7장의 결론까지 총 7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총 2절로 구성되는데 개편 전·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을 표집방식과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내용이 1절이고 2절은 범죄피해조사 변경 효과에 대해 분석한 미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다.

3장은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와 인지적 면접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및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한 것이다.

4장은 설문조사 결과의 하나로 조사표의 효과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총 4절로 구성된다. 1절은 그 동안의 범죄피해조사를 중심으로 한 추세분석 내용이고 2절은 개편 전·후 조사표를 통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의 차이를 검증한다. 그리고 3절은 조사표에 따른 조사응답자의 반응과 인식을 살펴보고 4절은 4장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5장은 일대일면접상황에서 조사응답자의 조사응답형성과정을 살펴본 인지면접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총 3절로 구성된다. 1절은 인지적 면접조사에 참여

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고 2절은 인지면접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개편 전·후 조사표 비교 평가 내용과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응답오류의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3절은 5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6장은 조사수집방법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총 3절로 구성된다. 1절은 조사방법에 따른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을 비교하고 2절은 조사에 대한 반응과 인식이 조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며 3절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개편 전·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 및 선행연구 검토

탁 종 연

제2장

개편 전·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표본추출 및 추정방식 비교

2008년 범죄피해조사의 개편으로 개편 전 조사와 내용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변화의 핵심은 표본과 설문 방식이다. 표본의 경우, 소규모 편의적 표본에서 대규모 무작위 표본으로 탈바꿈하였고, 설문도구 또한 미국의 조사처럼 설문응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장치를 도입하여 보다 정교한 도구로 변모한 것이다. 이 같은 개혁은 범죄학계의 지속적 지적과 행정원의 공감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김은경 외, 2009). 구체적으로 2008년 8월 범죄학자 12명이 참여한 범죄피해조사 개편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설문내용의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한 것이 수용된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고 표본설계에서부터 실사 진행, 데이터 자료처리까지 통계청에서 진행함에 따라 조사방법상의 발전을 가지고 왔다. 아래에서는 개편 전후의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변화내용을 표본과 설문의 측면에서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규 표본크기 및 선정방식

가. 과거 범죄피해조사의 표본 및 조사방식

개편 전인 제5차까지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표본은 소규모 편의적 표본으로

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거 범죄피해조사 표본은 크기가 매우 작았다(김은경, 2009; 박철현, 2012). 조사에 할당된 예산이 작아 표본을 2천 명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사현실을 이해하지만 이처럼 작은 표본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였다. 특히 범죄피해 가능성이 적은 성범죄 등을 추정하거나, 지역별로 피해양태를 비교하는 경우 표준오차가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조사의 표본은 대표성을 담보하기 힘든 일종의 편의적 표본이라는 것이다. 2006년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세 이상의 남녀를 모집단으로 상정하면서, 규모비례확률표집 방식을 적용하여 전국에서 100개의 읍·면·동을 표집한 후 선택된 지역에서 20명씩을 선택하였다고 한다(김지선 외, 2006 : 37-38). 그러나 이 표본추출방식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100개의 표본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 정확한 규모비례확률표집 방식인지의 여부이다. 동(洞)이 지정되면, 동 속의 통(統)을 행정 단위로 나열한 후 가운데 통을 선정하고, 다시 그 통 내의 반(班)을 행정 단위로 나열하여 가운데 반을 뽑아, 반장 집에서 한 집 건너씩 조사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김지선 외, 2006 : 37), 여기서 통과 반이 짝수인 경우 어떻게 가운데 지역을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선정된 반에서 반장 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통상 한 반에 속한 가구의 수는 수십에서 백여 개에 이르는데 반장 집에서 한 집 건너 조사했다면 반장 집의 위치에 따라 표본의 성격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은 지리적으로 사각형 혹은 원형의 모양을 가질 텐데, 반장 집에서 어떤 방향으로 한 집 건너씩 조사했다는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동과는 달리 읍이나 면지역에서는 조사한 리(里)를 편의적으로 선정했다고 하므로(김지선 외, 2006 : 37) 표본의 무작위성은 거의 담보하기 힘들다.

과거 표본방식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발견된다. 조사가구가 선정되면, 임의의 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표집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할당표본 방식을 사용하였다. 할당은 성별, 직업,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김지선 외, 2006 : 38), 할당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표본의 대표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제 5차 조사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인구통계 자료를 모집단틀로

설정하고 표본을 비교하였는데, 선정된 표본의 성별 할당은 큰 문제가 없지만, 연령대별로는 모집단과 비교해 20대나 60대 이상 집단은 과소표집되고, 나머지 집단은 다소 과대표집되었을 뿐 아니라, 직업적인 분포는 모집단과 제대로 비교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김지선 외, 2006 : 42-43).

과거 범죄피해조사 표본의 또 다른 결함은 표본조사와 자료처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2006년 이전 조사에서는 응답률이나 표본대체율 등이 아예 기록되지 않았다. 즉 조사가 몇 가구를 방문한 끝에 응답자를 찾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응답률이 낮았을 경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응답을 회피하고 경험자들이 응답에 더 호응을 하는 무응답 편향(non-response 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조사의 응답과 범죄피해자체가 크게 상관되어 있다면 편향의 정도는 강할 것으로 볼 수 있다(Groves, 2006). 만일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비경험자보다 설문조사에 더 잘 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비경험자들이 보고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의 피해율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조사에서 표본치에 일체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표본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여 볼 때 제 5차까지의 범죄피해조사는 전국조사로서 가치가 크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예산이나 우리나라 조사여건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범죄피해조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나. 개편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추출 및 조사방식

2009년 이후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대규모 무작위표본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모집단을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14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변경하고, “이들 중 감옥, 군대, 요양원 등의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은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부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 직장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반성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목표모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김은경 외, 2013 : 66). 또 표본의 크기가 현격히 증가했다. 종래 2천명에 불과했던 표본이 2013년 기준 6,300가구 13,317명으

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김은경 외, 2013).

또한 통계청 통계대행과에서 직접 조사시행을 담당하면서 정교한 무작위표본이 이용되었다. 통계청에서는 우선 전국을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로 분류한 후, 각 광역특별시는 1곳, 각 도는 동부와 읍면부 2곳씩으로 나누는 등 25개 층으로 분류하였다. 즉, 전국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6개 광역시와 경기도 동부, 경기 읍면부 등 25개 층으로 배분한 것이다(김은경 외, 2013 : 72-75; 한국형사정책연구원·통계청, 2013 : 4-5). 다음으로 각 층별로 비례배분과 제곱근배분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각 층에서 조사구들을 주택유형(1차 분류), 15세 이상 인구비율 (2차 분류), 교육정도(3차 분류), 조사구번호(4차 분류) 등의 분류기준으로 정렬한 후, 조사구내 가구 수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방법(PPS)을 사용하여 630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선정된 조사구내에서는 전체 가구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조사구내 가구 수를 감안하여 추출간격을 정하는 계통표집을 통해 10가구씩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즉 전국을 25개 광역 층으로 나눈 후, 거기서 630개 조사구를, 다시 조사구에서 6,300개의 표본가구를 표집한 것이다. 일종의 다단계층화집락 표집(multi-state stratified cluster sampling)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또한 표집과 조사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가구당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응답자에 대한 성, 연령, 직업을 고려하여 가구당 한 명을 편의적으로 선택한 반면(김지선 외, 2006), 새로운 조사에서는 가구원 전원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였다(김은경 외, 2013). 이렇게 함으로써 선정된 가구에서 응답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의 가능성을 통제하고, 가구범죄와 개인범죄의 표집오차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박철현, 2013).

2. 설문도구 비교

가. 미국의 피해조사 개편사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 조사의 모델이 된

미국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1992년까지 20년간 전국범죄조사(National Crime Survey)를 수행해 왔는데 끊임없이 측정의 정확도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Kinderman et al., 1997). 대표적으로 1970년 중반 미국의 국립과학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분석한 후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다. 핵심내용은 응답자들이 상당량의 범죄, 특히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처럼 비전형적인 범죄를 잘 기억하지 못하므로 설문내용을 개선하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피해경험을 되살리게 해주는 질문 즉 자극질문(screening question)을 개선하여 망각으로 인해 미응답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하라는 점, 범죄피해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하고 질문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줄이도록 하라는 점, 그리고 분석에 유용한 피해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라는 것 등이 있었다(Kinderman et al., 1997 : 1-2). 이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서는 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피해조사 개선을 담당한 연구컨소시엄 결성을 지원하여 1985년에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종래 피해경험 중 포착하기 힘든 것으로 자주 지목되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범죄를 보다 더 잘 포착하기 위해 미국 통계학회의 법과 정의 통계위원회(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s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Statistics)와 연합한 특별 위원회를 결성하여 강간, 성폭행, 가정폭력의 문항을 개선토록 제안하였다. 조사의 실행을 담당하는 인구통계국(Bureau of the Census)에서는 이런 권고안들을 모두 검증하여 1992년 범죄피해조사로 전면 개편할 때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나. 신규 범죄피해조사 설문지 비교

형정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는 1994년 제1차 조사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2008년에 들어서 설문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개선하였다(김은경 외, 2009). 먼저 과거의 설문내용을 분석해보면, 구 설문지는 응답자가 피해경험을 회상하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설문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앞부분(흰색)에서 응답자의 일상생활, 주변환경,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 등을 묻고, 응답자의 신상정보를 질문한 후, 본인과 주변

사람의 피해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만일 응답자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는 뒷부분(노란색)에서 피해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질문하도록 구성하였다. 문제는 앞부분에서 피해경험을 물을 때 최종별로 단 하나의 질문만을 던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인강도의 경우 “작년(2005년)에 귀하는 집 밖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여 돈(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나 물건(귀금속, 시계, 핸드폰, 가방, 카세트 등)을 빼앗긴 적이 있거나 빼앗길 뻔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바로 1)없다 2)있다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질문으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강도나 예시되지 않은 피해품이나 적은 가치의 피해품을 빼앗긴 사건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폭행의 경우에도 “작년(2005년)에 귀하는 누군가(낯선 사람, 잘 알고 지내는 사람, 가족 등)에게 강간이나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묻고 1)없다 2)있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질문 역시 가해자를 예시하고는 있지만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에 의한 피해나, 비전형적인 피해 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간, 성폭력, 성희롱을 한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측정한 것도 피해회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과거 질문의 또 다른 문제는 응답자에게 법적인 개념의 피해상황을 직접 판단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폭행, 강간, 도난 등은 추상적인 법률적 개념으로서 응답자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범죄의 구체적 상황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표에서 질문하는 범죄유형이 우리나라의 범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김지선 외, 2006; 박철현, 2012). 예를 들어 조사에서는 자동차부품 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과 성희롱 등 8종의 범죄피해경험을 질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자동차절도와 자동차부품절도가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사기처럼 흔하고 중대한 범죄가 빠져 있는 것 등은 조사의 효용가치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2008년 범죄피해조사 개편 준비위원회에서는 기존 설문지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VS) 사례를 준거모형으로 삼고 새로운 설문문항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실시한 제 1차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부터 새로운 설문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2011년의 제 2차 조사와 2013년

제 3차 조사에서 설문도구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기는 했으나 핵심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최근의 조사인 제 3차 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현 조사표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피해를 경험하고도 그 기억을 떠올리지 못해 응답하지 못하는 사례, 즉 회상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자극질문을 도입한 것이다(김은경 외, 2009). 설문지는 크게 기초조사표(피해자 선별양식)와 사건조사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기초조사표에서 피해 경험을 발굴하기 위해, 절도의 경우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까?(※도둑맞을 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라고 질문한 후, 피해품을 ① 현금, 수표, 상품권 등 ②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③ 지갑, 핸드백, 가방, ④ 개인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⑤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⑥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⑧ TV, DVD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⑩ 그 외 다른 물건 등 10개 범주의 32개 품목을 예시한 후 하나를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제5차 조사에서 두 가지 범주 8개의 품목을 예시한 것에 비하면 응답자가 회상하기에 좀 더 쉬워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7번 항목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아래의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묻고,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등 7가지 범주 23개 장소를 예시하는 방법으로 절도피해 경험 회상을 돕고 있다. 더 나아가 29번 항목에서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한 후 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② 친구, 애인 또는 이웃, ③ 가족이나 친척, ④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 등 4개 범주 8개 관계의 사람을 예시하여 회상을 촉진하고 있다. 즉 새로운 설문도구에서

는 절도 범죄를 회상시키기 위해 피해품, 피해장소, 가해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예시하고 있으므로 응답자들이 피해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식의 질문이 같은 사건에 대해 중복답변을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통해 이런 점을 방지하려 노력하였다.

새로운 설문지의 또 다른 장점은 각 사건의 본질을 좀 더 분명히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김은경 외, 2009). 과거에는 응답자가 미리 그 사건의 내용을 절도, 폭행, 성폭행 등으로 구분해서 답변해야 했지만, 새로운 설문지에서는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에서 신체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사건조사표를 통해 그 사건의 일시·장소는 물론, 침입방법, 범행여부, 무기사용여부, 구체적 공격방법, 피해여부와 그 정도 등을 상세히 질문하여 구체적 죄명을 연구자가 확정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재산 피해에 있어서도, 사기의 내용, 수법, 재산피해품의 내용, 강탈여부 및 방식, 파손여부 등을 질문하여 사기, 절도, 강도, 손괴 등 죄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조사에서는 개별 피해의 횟수 파악도 좀 더 명확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설문도구에는 미수건수와 상습 피해 수를 별도로 기록하게 하여 이런 범죄에 대한 측정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범죄가 좀 더 확장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은경 외, 2009). 현재 조사대상인 8대 범죄에는 강도, 강간(성추행 포함), 폭행, 상해 등 대인범죄와 사기, 절도, 손괴, 주거침입 등 재산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과거 조사에서는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분류는 절도(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강도(대인강도, 주거침입강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사기, 손괴, 단순주거침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새로운 설문에서도 절도와 강도를 피해품이나 침입방식 정보를 이용하여 과거 방식으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범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선된 조사방식이 여러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극 질문을 통해 준거기간 내 경험한 피해를 기억하지 못하는 오류 즉 회상오류는 상

당히 개선되었지만, 준거기간의 시점 착오에 의한 오류는 개선된 것이 없다. 즉, 현재의 범죄피해조사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준거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그 다음 해 봄이나 여름에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a) 준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응답한다든지(전진시기 회상오류), b) 준거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을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답변하지 않는 경우(후진시기 회상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김지선 외, 2006 : 258), c) 준거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d) 준거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을 그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답변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미국처럼 조사방식을 패넬방식으로 변경하고 준거기간을 조사 당시로부터 6개월 정도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기타 피해를 추정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변화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설문지 표지의 후원기관의 명칭이 행정원 단독에서 행정원과 통계청 공동으로 바뀌었고, 조사원도 통계청 소속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응답률과, 희망적으로 피해포착률도 높이는 후원효과(sponsor effect)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Groves, 2006). 또한 2013년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제목에서 갖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조사명을 기존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했으나, 효과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다.

변경내용이 반드시 긍정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실사를 담당할 통계청 관계자들에 의하면 새로운 설문지가 너무 길고 복잡해 응답하는 시간이 길어짐은 물론, 설문 참여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설문지로 인해 오히려 피해포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가능하므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요약

개편 전후의 범죄피해조사의 변화를 요약하자면, 과거 소규모 편의적 표본을 이용하여 피해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가 없는 단순한 피해조사가 2008년을 기해 대규모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회상자극을 위한 설문도구를 사용

하여 완전히 새로운 전국범죄피해조사로 변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피해 보고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조사표에서 회상 자극 방식을 도입하고 통계청이 수행기관으로 나타나는 등의 개선이 있었던 탓에 종래 잘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피해경험이 더 많이 포착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설문이 다소 복잡해 실제로 피해응답률을 높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표본의 품질측면에서는 무응답편향이 감소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피해율이 다소 높게 추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가지 변화 모두 추정치를 현실에 가깝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권장할 만한 것이지만, 효과의 방향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를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범죄피해조사표 수정의 효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1. 미국의 사례

전면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가 피해율 추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현재 우리의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기본적으로 1992년 개편한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를 근간으로 한 것이므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2002년 이전 기존 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Survey)에서 현재의 모델로 설문도구를 개편하는 것이 의도한대로 범죄추정의 정확도와 효용성을 향상시켰는지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예 : Hubble, 1995; Perseley, 1995; Kindermann et al., 1997; Cantor and Lynch, 2005; Lauristen, 2001).

전국범죄피해조사 변경효과를 실험을 통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Kinderman et al., 1997). 미국에서는 1992년 1월부터 1993년 6월까지 표본을 두 개로 나누어, 한 쪽에는 전국범죄조사(NCS)를, 다른 쪽에는 전국범죄피해조사(NCVS)를 실시함으로써, 설문도구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측정치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안의 효과는 한마디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폭력범죄는 전체적으로 49%가 증가

하였는데, 그 중 폭력은 57%(가중폭력 23%, 단순폭력 75%), 강간은 무려 157%나 증가하였다. 재산범죄는 전체적으로 23%가 높아졌는데, 이중 주거침입이 20%, 주거침입절도가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도, 개인절도, 자동차 절도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변경의 효과는 범죄의 구체적인 속성별로 달라짐이 발견되었다. 타인 보다는 지인에 의한 피해, 완성된 범죄보다는 미수에 그친 범죄, 경찰에 신고한 범죄보다는 신고하지 않은 범죄 등에 있어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Kinderman et al., 1997). 또한 피해자의 속성별로 나눠보면,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중년층 즉 33세에서 44세 집단이 다른 연령대 집단보다, 가계소득이 \$15,000 이상이 그 이하의 가정보다, 준도시민지역이 도심지역 거주자보다 피해보고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도나 개인절도에서는 이런 그룹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피해경험을 포착하게 했을 뿐 아니라, 특히 범죄의 성격으로 보면 그간 범죄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던 경험들, 예를 들어 지인에 의한 피해나, 미수, 미신고 사건 등에서, 피해자별로는 준도시민지역에 거주하는, 중류층이상, 중년층에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설계 변경이 피해율 산정에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한 편 존재한다. 박철현(2012)은 조사가 수정되기 전인 5회의 조사결과를 이용해 수정 후인 2008년과 2010년의 피해율 추정치를 계산한 후, 실제 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율과의 차이를 수정효과라고 보았다. 그는 침입절도, 성폭력, 폭행 및 상해, 강도, 절도 등 5개의 범죄유형별로 분석을 실시했는데, 2008년 침입절도의 경우 예상치보다 30%, 폭행 및 상해 30%, 강도 270%, 절도 640%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방식의 사용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발굴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성폭력의 경우 추정치보다 40%가 적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의 피해율이 이전에 비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였다.

박철현(2012)의 연구는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변화효과를 분석한 유일한 연

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몇 가지 중대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단지 5회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범죄피해를 추세선을 그린 후,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이후의 조사결과를 추정하려 했다. 이 같은 접근법은 추세연구기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각 방면에서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는 사회로서 범죄현상 역시 얼마든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급변할 수 있다. 또한 과거 3년에 한 번씩 실시했던 5회의 조사결과로 미래의 범죄피해율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연구의 다른 한계는 설사 이런 추세연구기법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의 조사는 단순히 설문내용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표본의 크기와 추출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의 사례와 같이 “복수의 (설문)양식을 적용하여 어떤 것이 더 많은 피해를 포착하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박철현, 2012 : 2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처럼 임의의 설문대상자를 나눠 복수의 설문양식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연구방법

최수형·탁종연

제3장

연구방법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는 소규모 편의적 표본에 가깝고 조사표는 조사응답자 스스로 법적인 개념의 범죄피해상황을 직접 판단하여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 수준이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하고 보고하는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에 의한 피해나 비전형적인 피해 등과 같이 일반인이 미처 범죄피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피해측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편 된 범죄피해조사는 전국 대규모 무작위표본으로 가구원 전원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조사응답자의 범죄피해 유형에 대한 이해 수준과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행위와 행위자, 행위 내용 및 방법 중심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범죄피해경험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screening question)의 형식을 개선한 것이다. 1990년도 중반부터 3년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통해 2009년 개편 후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개편 작업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 설계와 조사표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 설계 및 조사표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은 대규모의 현장조사를 통해 통계치를 비교하는 반분조사로 두 개 이상의 무작위 표본에 대해 조사표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조사방법은 동일하도록 설계하여 조사한 후,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조사표 차이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박영실, 2013;79). 실제 이러한 방법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범죄피해조사 개편 과정에서도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조사

원이 해당 조사응답과정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사표를 평가하기도 하고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이나 시선추적실험(eye-tracking), 포커스그룹면접(focus group interviewing) 등의 방식을 조사표 설계 나 조사표 평가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인지면접은 조사 자료의 타당성문제나 응답자 입장을 반영한 조사표 설계 통해 비표집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박영실, 2013). 즉, 인지면접방식은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질문 이해 수준과 조사 질문에 대한 응답과정을 이해하는데 탁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 비교 연구로 양적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분조사방식의 설문조사와 인지면접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절에서 하도록 한다.

제1절 설문조사

1. 모집단 및 표본설계

가. 모집단 규정 및 표본 추출틀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기준 시점(2014년 7월 22일 0시)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이다. 모집단 기준은 통계청 2014 추계가구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¹⁾ 본 조사는 전체 표본에서 세 가지 형식의 조사방식을 번갈아 가면서 설문조사하는 형태로 대규모 표본이 필요하고 조사방식에 따른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분석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죄피해 보고건수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지금까지의 지역별 범죄피해경험 보고율과 공식통계상에서 나타난 지역별 범죄발생건수, 그리고 실사 지역 확대에 인한 경제적 비용 증가 등과 같이 본 조사의 목적과 현실적인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본 조사의 모집단을 서울·경기로 한정하였다. 모집단 분포는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서울

1) ‘통계청 2014 추계가구’는 현재 시점을 반영한 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청 공식통계임.

과 경기지역의 일반가구 수는 전국의 일반가구 수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 모집단 분포

행정구역	일반 가구수
서울+경기	7,807,304
서울특별시	3,599,692
경기도	4,207,612
전국	18,457,628

표본추출틀은 집계구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²⁾ 집계구는 기초단위구를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사람이 모이도록 확정한 경계이다. 한편, 집계구는 평균 읍면동의 1/23 정도의 크기로 세밀한 집계구 단위의 통계 조화가 가능하다. 즉, 제공하는 통계항목은 성이나 연령, 교육정도 등의 ① 인구관련 사항과 방이나 거실의 수, 난방시설 등과 같은 ② 가구관련 사항, 주택유형이나 연건평 등과 같은 ③ 주택관련 사항, 그리고 ④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등과 같은 사업체 관련 사항으로 집계구 단위의 정보이다.

통계 네비게이터 집계구 검색화면



집계구(소지역) 통계보고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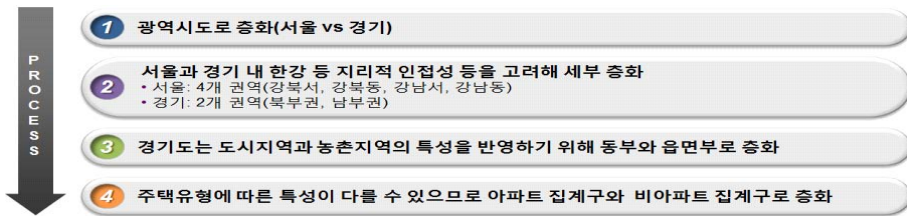
〔그림 3-1-1〕 집계구 정보

나. 층화 및 표본배분

표본은 다단계 층화방식으로 그 기준은 지역(시/도), 동부/읍면부, 주택유형으로

2) 본 조사가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청의 조사구를 제공받지 못하였음.

먼저, 광역시도 즉 서울과 경기도로 층화를 하고 서울과 경기 내 한강 등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해 세부층화를 거쳐 아파트 집계구와 비아파트 집계구로 층화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였다.



[그림 3-1-2] 다단계 층화 과정

앞서 설명한 다단계 층화방식을 통해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서울, 경기 각 8개의 층으로 총 16개의 층이다.

〈표 3-1-2〉 층의 개수

구 분	1차 층화	2차 층화	층의 개수
서울	4개 권역	아파트, 비아파트 집계구	8
경기	2개 권역·동부	아파트, 비아파트 집계구	4
	2개 권역·읍면부	아파트, 비아파트 집계구	4
총 계			16

표본규모는 서울/경기 지역의 6,000가구이며 서울과 경기의 모집단 자료는 2014 추계가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시도 내 세부 권역 자료는 2014 추계가구 통계에서 발표하지 않으므로, 서울과 경기의 세부 권역 배분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읍면동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종 표본 배분 방법은 비례배분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3-1-3〉 표본수

행정구역별(시도)		모집단	표본수
			비례배분
서울	강북서	615,264	473
	강북동	1,139,865	876
	강남서	1,108,187	851
	강남동	736,376	566
	소계	3,599,692	2,766
경기	남부_동부	2,709,629	2,083
	남부_읍면부	334,427	257
	북부_동부	781,829	601
	북부_읍면부	381,727	293
	소계	4,207,612	3,234
전국		18,457,628	6,000

세부 권역 내 주택유형 비율은 해당 세부 권역 내 집계구의 아파트 집계구와 비아파트 집계구의 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최종 층은 권역(시도 내 권역) * 지역규모(동부vs읍면부) * 주택유형(아파트 vs 비아파트)의 3way 방식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 설문조사는 반분조사형태를 응용한 것으로 각 집계구 내에서 3종류의 각 설문유형을 반영하여 조사하였다.

〈표 3-1-4〉 조사표본

	설문지 유형	조사방법	표본수
A형	설문지 A형(2009년 이전 개편전)	가구방문면접조사	2,000가구
B형	설문지 B형(2009년 이후 개편후)	가구방문면접조사	2,000가구
C형	설문지 B형(2009년 이후 개편후)	가구방문온라인조사	2,000가구

즉, 이러한 표본 층화방식을 통해 최종 표본 배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1-5〉 최종 표본 배분표

행정구역		모집단	비례배분	전체 기준 (6,000가구)	각 유형별 표본 (2,000가구)
서울 강북서	비아파트	615,264	473	324	108
	아파트			147	49
서울 강북동	비아파트	1,139,865	876	447	149
	아파트			429	143
서울 강남서	비아파트	1,108,187	852	465	155
	아파트			387	129
서울 강남동	비아파트	736,376	566	225	75
	아파트			342	114
경기 남부_동부	비아파트	2,709,629	2,082	795	265
	아파트			1,287	429
경기 남부_읍면부	비아파트	334,427	257	144	48
	아파트			114	38
경기 북부_동부	비아파트	781,829	601	159	53
	아파트			441	147
경기 북부_읍면부	비아파트	381,727	293	147	49
	아파트			147	49
총계(서울+경기)		7,807,304	6,000	6,000	2,000

다. 가중치의 산출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적용의 3단계를 거쳐 산출한다.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는 값이다. 표본 조사구는 집계구내 가구 수를 크기 척도로 사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된 표본 조사구 내에서 가구를 추출하는 방식의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w_h^0 = \frac{S_h}{\sum_{i=1}^{n_h} m_{hi}} = \frac{S_h}{s_h}$$

- h : 지역을 나타내는 첨자($h=1, 2, \dots, 8$)
- i : 집계구를 나타내는 첨자

- S_h : h 번째 지역의 모집단크기(표본설계 시 가구 수)
- n_h : h 번째 지역의 표본 집계구 수
- m_{hi} : h 번째 지역, i 번째 표본 집계구의 표본크기(조사된 가구 수)
- s_h : h 번째 지역의 표본크기

무응답 조정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를 이용하여 응답가구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량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집단 가구와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사후층화 조정하였다.

$$w_{h,g} = w_h^0 \times \frac{X_{h,g}}{\hat{X}_{h,g}}$$

모수에 대한 추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Y_{hij} : h 번째 층, i 번째 집계구, j 번째 가구(가구원)에 대한 관측치
 - w_{hij} : h 번째 층, i 번째 집계구, j 번째 가구(가구원)에 대한 관측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처럼 가중 평균을 계산한 것임

-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의 추정치, 95% 신뢰수준($\alpha=0.05$)의 경우 $z_{\alpha/2}=1.96$.

라. 표본 집계구 및 가구 추출

1) 표본 집계구 추출

표본 집계구 추출의 1단계는 집계구별 주택형태 비율을 이용하여 아파트 집계구와 비아파트 집계구로 분류한다. 여기서 분류기준은 아파트 집계구(집계구 아파트 비율이 50%이상인 집계구), 비아파트집계구(집계구 아파트 비율이 50% 미만인

집계구)이다. 2단계는 집계구 수를 산출하는 단계로 추출된 집계구 내에서 15개 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층별 집계구 수를 산출한다(A형, B형, C형 각 유형별로 집계구 내 5개 가구 조사). 각 층내 실제 표본수가 15개 이내라도 집계구는 1개를 추출해야 한다. 최종 집계구 배분은 다음과 같다.

〈표 3-1-6〉 최종 집계구 배분표

행정구역		전체 기준 (6,000가구)	각 유형별 표본 (2,000가구)	집계구 수
서울 강북서	비아파트	324	108	22
	아파트	147	49	10
서울 강북동	비아파트	447	149	30
	아파트	429	143	29
서울 강남서	비아파트	465	155	31
	아파트	387	129	26
서울 강남동	비아파트	225	75	15
	아파트	342	114	23
경기 남부_동부	비아파트	795	265	53
	아파트	1,287	429	86
경기 남부_읍면부	비아파트	144	48	10
	아파트	114	38	8
경기 북부_동부	비아파트	159	53	11
	아파트	441	147	30
경기 북부_읍면부	비아파트	147	49	10
	아파트	147	49	10
총계(서울+경기)		6,000	2,000	404

집계구 추출은 3단계로 계통추출방식에 의해 확률추출을 실시하였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추출된 집계구를 교체하였다. ① 20가구 미만의 집계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② 재개발,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③ 집계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동일한 층 내 집계구 중 해당 집계구와 가장 유사/인접한 집계구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3-1-7〉 단계별 집계구 추출방식

1단계 : 집계구 분류
집계구별 주택형태 비율을 이용하여 아파트 집계구와 비아파트 집계구로 분류 -분류기준 ① 아파트집계구 : 집계구 내 아파트 비율이 50% 이상인 집계구 ② 비아파트집계구 : 집계구 내 아파트 비율이 50% 미만인 집계구
2단계 : 집계구 수 산출
추출된 집계구 내에서 15개 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총별 집계구 수 산출(A형, B형, C형 각 유형별로 집계구 내 5개 가구 조사) 각 층내 실제 표본수가 15개 이내라도 집계구는 1개를 추출해야 함
3단계 : 집계구 추출
집계구 추출 방식은 계통추출 방식에 의해 확률추출 실시

2) 표본 가구 추출

표본 가구추출방식은 4단계로 먼저, 추출된 집계구 중심의 번지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초 가구를 선정하고 다음으로 최초 방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가구를 선정한다. 3단계로 추출된 집계구가 아파트 집계구이면 아파트가구만 조사하고 비아파트 집계구이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조사하고 4단계로 추출된 집계구 내 가구수에 따라 집계구당 15개 가구를 조사하며, A, B, C 유형을 1/3씩 조사한다. 이때, 집계구별로 조사 A, B, C형을 번갈아가면 배분하여 설문 배부 순서로 인한 편향을 방지한다.

〈표 3-1-8〉 표본 가구추출방식

STEP 1	• 추출된 집계구 중심의 번지의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초 가구 선정
STEP 2	• 최초 방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가구 선정
STEP 3	• 추출된 집계구가 아파트 집계구이면 아파트 가구만 조사, 비아파트 집계구이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조사 (※비아파트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등)
STEP 4	• 추출된 집계구 내 가구수에 따라 집계구당 15개 가구를 조사 • A, B, C 유형을 1/3씩 조사 • 집계구별로 설문을 A, B, C 유형을 번갈아가며 배분하여, 설문 배부 순서로 인한 편향 방지

2. 조사의 실시

가.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대규모 표본조사 형식을 갖춘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는 통계청의 조사대행과를 통해 2009년, 2011년, 2013년 총 3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이 되면 조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위해서 통계청 조사대행과에서 최소 2회 가량 실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의 경우 조사대행과의 원활한 협조로 3차년 조사까지 통계청에서 수행하였다. 한편,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조사 자체에 대한 조사 연구로 설문도구와 자료수집 방법의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발전적인 조사방법론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행과를 통한 조사는 불가능하였다. 한편, 본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범죄피해조사 만큼의 대규모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 인력이나 동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회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6월에 조달청을 통해 조사수행 업체 입찰공고를 냈고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사회조사 전문업체인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가 선정되었고 7월 3주까지 실사 준비를 하고 7월 4주부터 9월 4주까지 실사가 진행되었으며 10월 1주까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크리닝 작업을 완료하였다.

〈표 3-1-9〉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일 정	구 분	주요 추진사항
6월	조사수행 업체선정	• 조달청을 통한 조사수행 업체 입찰공고 • 평가 과정을 통한 최종 조사 수행업체 선정 • 선정 업체와 본 용역 관련 계약 체결
7월 2주	업무 사항 협의	• 연구진과 업체 담당팀 첫 회의 • 세부수행계획 협의·확정

일 정	구 분	주요 추진사항
7월 2주~3주	가구 면접 조사	• 표본설계·집계구 추출 - 모집단 : 2014 통계청 추계가구 + 2010인구주택총조사 • 기타 실사자료 준비 - 조사지침서, 협조 공문, 집계구요도, 답례품 및 수령확인서, 조사원증, 필기도구 등 • 최종 설문 확정·인쇄 - A, B, C형 3종류 인쇄 • C형 조사 위한 온라인 응답 시스템 구축 • 면접원 선발 - 집계구조사 경험자+가구조사 경험자 우선선발 • 면접원 교육(7월 21일) - 조사원 교육은 이론교육, 조사방법교육, 설문지교육의 3단계로 나누어 진행 - 본 조사의 목적이 설문비교연구에 있음을 알리고, 설문지별 조사방법 및 내용 차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 실시
7월 4주 ~9월 4주		• 가구방문 면접조사 진행 • 실사 관련 지도 병행 - 실사 관련 질문사항, 컴플레인 등 상황 컨트롤 (조사 관련 전용 Hot-Line마련하여 응대) • 조사원 질의 사항 답변 • 조사원별 진행상황 등 실사진행 관리 • A형 & B형 : 8월 4주 종료 • C형 : 9월 4주 종료
8월 3주 ~10월 1주	데이터 처리	• 자료 검증 - 전체 진행부수의 10%에 대하여 전화검증 실시 - 조사참여 여부 및 범죄피해여부 등 주요 문항을 중심으로 검증 실시 • 설문지 에디팅 • 설문지 코딩/편칭 • 데이터 크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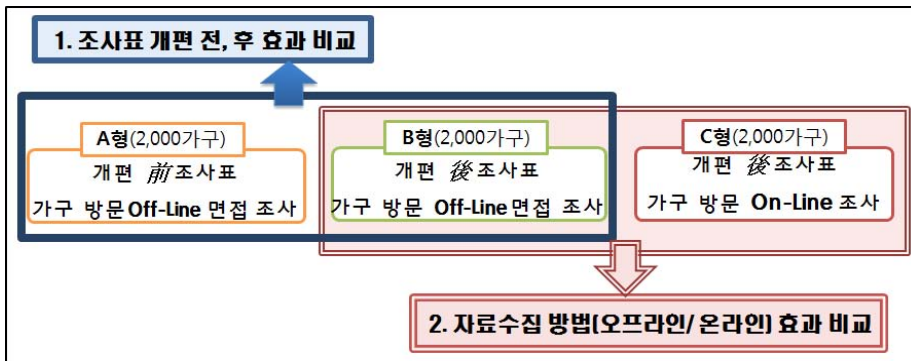
나. 실사 개요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두 개 이상의 무작위 표본에 대해 조사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사방법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조사표 차이 효과를 살펴보는 반분조사(박영실, 2013; 79)의 형태를 응용하여 세 개의 무작위 표본에 대해 모든 방법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복수의 조사방식(A형 : 개편전조사표+오프라인면접조사, B형 : 개편후조사표+오프라인면접조사, C형 : 개편후조사표+온라인조사)을 통해 개편 후 조사표의 효과와 온라인조사라는 새로운 수집방법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 3-1-10〉 설문지 및 조사방법의 유형

	설문지 유형	조사방법	표본수
A형	설문지 A형(2009년 이전 개편 전)	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2,000가구
B형	설문지 B형(2009년 이후 개편 후)	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2,000가구
C형	설문지 B형(2009년 이후 개편 후)	가구방문, 온라인조사	2,000가구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반분조사방식을 취한 설문조사는 6,000가구를 조사함에 있어서 2,000가구씩 서로 다른 세 가지 형태의 조사방법(A형,B형,C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세 개의 무작위 표본은 2가지 차원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그 첫 번째가 두 개의 무작위 표본에 대해 조사표를 제외한 모든 방법이 동일한 조사를 통해 개편 전·후 조사표 차이에 대한 효과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는 두 개의 무작위 표본에 대해 자료수집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법은 동일하도록 하여 온라인조사방식과 오프라인조사방식이 지니는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3-1-3] 조사표 및 자료수집방법의 유형과 비교 내용

즉, 본 설문조사는 복수의 설문양식 및 자료응답방식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연구 방식으로 6,000가구 전체를 샘플링하여 추출된 각 집계구별로 집계구 요도와 중심번지를 활용해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으로 15개 표본가구를 추출하고 아래의 [그림 3-1-4]에서 나타나듯이 동일한 집계구 내에서 A, B, C형을 번갈아가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의 가구지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집

계구 조사의 경우 세부 가구정보는 제시되지 않으며 해당 집계구의 중심지 번지의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초 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3-1-4] 집계구 조사방식

〈표 3-1-11〉 실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조사기준 시점에 대한민국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14세 이상의 가구원
조사지역	서울, 경기
조사기간	2014년 7월 22일 ~ 2014년 8월 29일(A, B형) 2014년 7월 29일 ~ 2014년 9월 30일(C형)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개별 면접조사(만 14세 이상 가구원 전원). 단, 부재시 유치조사 병행
표본크기	총 6,000가구(총 3개 유형 * 유형별 2,000가구)
최종조사표본	A형 : 2,000가구 + 가구원 4,220명 B형 : 2,000가구 + 가구원 4,218명 C형 : 2,000가구 + 가구원 3,847명
표본추출방법	통계청의 2010년 통계지리정보의 집계구 및 집계구 통계를 표본틀로 활용한 다단계층화 확률비례추출법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다. 조사대상

본 조사의 단위는 개인으로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의 6,000 표본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전원(404개 집계구, 1개 집계구당 15가구)이다.

〈표 3-1-12〉 조사대상자의 기준

가구	• 동일 거처의 가구 및 해당 가구원 • 일반 가구만 조사 대상(고아원, 고시원, 기숙사 등은 제외)
대표 가구원	• 가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원에게 응답 참여를 안내/독려할 수 있는 대표 가구원(예 : 가구주/배우자 등)
가구원	• 가구조사를 응답한 대표 가구원을 포함한 만14세 이상의 가구원 • 군입대, 장기해외출장자, 기숙사거주자, 재소자 등 장기부재자 및 비거주자 제외

라. 조사표 구성 및 조사항목

본 조사는 복수의 조사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조사 A, B, C유형에 따라 조사표가 다르다. 즉, 조사 A형에서는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표로 2006년에 실시한 범죄피해조사표를, 조사 B형과 C형은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표로 2013년도에 실시한 범죄피해조사표를 사용하였다.³⁾ 범죄피해조사표의 조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2006)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2013), 그리고 본 보고서 부록1-1에 첨부된 조사지침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조사 C형의 경우는 온라인 조사표로 조사표 내용은 조사 B형과 동일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표 구성의 방식이 다르다. 온라인 조사는 조사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문항의 이해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침서의 내용이 화면에 보이도록 하였고 사건조사표 결정에 있어서는 응답자 편의를 위한 로직을 개발하였다(부록 1-3 스크립트 참고).⁴⁾ 또한 온라인 조사 응답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개의 문항씩 화면에 보이도록 하였고 조사응답자가 조사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진행율을 표시하였으며 조사응답자에게 개별 아이디를 부여하여 중도에 응답을 포기 할 경우 응답이 자동 저장되어 다시 로그인 을 통해 저장된 항목 다음부터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너무 빠른 응답이나 한방향의 응답 등은 오류 메시지를 사용하여 관리하였다.

한편, 본 조사는 조사방법론 비교 연구로 조사형식과 내용에 대한 평가 관련 문항 즉,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새롭게 구

3) 개편 후 조사표의 경우 2009년에 수행한 1차 조사 이후에도 조사표의 수정 및 보완 내용이 있어서 가장 최근의 조사표인 2013년도에 수행한 범죄피해조사표를 사용하는 것이 그에 따른 평가 뿐 아니라 향후 발전적 방향을 찾아볼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음.

4)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스크립트 가운데 범죄피해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회상 자극 질문과 범죄피해 경험 수를 결정하는 식에 해당하는 부분만 첨부하였음.

성하여 모든 조사 유형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조사응답자 뿐 아니라 조사원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원의 입장에서 경험한 내용과 인식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표 3-1-13〉 조사표 구성

구 분		주요 항목	조사유형			조사대상	
			A형	B형	C형	조사 응답자	조사원
개편 전 범죄피해 조사표		가구 및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일상양식 및 일상활동, 범죄추세, 범죄의 심각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조치, 범죄피해 경험유무, 범죄 유형별 범죄피해 내용 및 상황	○			○	
개편 후 범죄피해 조사표	기초 조사표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 및 범죄예방활동,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구 및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배경문항, 작년 1년간 겪은 피해경험여부		○	○	○	
	사건 조사표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	
조사 평가표		설문응답시간 및 설문에 응한 이유	○	○	○	○	○
		설문방식 및 내용에 대한 반응 및 태도	○	○	○	○	○
		범죄피해경험 회상 후 미응답보고 건수 및 이유	○	○	○	○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에 대한 선호도	○	○	○	○	

마.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면접조사’(face to face)로 진행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 가구원이 부재중인 경우 일부 자기기입식조사와 병행하였으며 면접조사로 진행하더라도 응답자가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의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가구 선정

① 조사원별 집계구 리스트 및 조사 요도 수령

집계구별 전담 면접원을 배정하고 집계구를 이용한 조사 방법을 파악하여 집계

구 리스트 및 조사 요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조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개 집계구 내에서 15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공하는 집계구 항목은 i) 집계구 ID : 해당 집계구 리스트 ID ii) 행정구역 : 해당 집계구의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동/읍/면) iii) 해당 집계구 내에서 조사해야 할 주택유형 : 아파트, 비아파트로 구성 iv) 집계구 중심 번지 : 해당 집계구 중심 번지의 가장 가까운 건물의 번지이다. 한편, 집계구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에서  집계구를 조사할 때, 해당 집계구에서 조사할 15가구는 집계구 중심번지의 최초 건물부터 시작하여 주택유형은 아파트를 조사해야 한다.

집계구ID	시/도	시/군/구	동/읍/면	주택유형	집계구 중심번지	비고
01001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비아파트		
01002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아파트		
01003	서울	종로구	부암동	비아파트		
01004	서울	중구	필동	아파트		
01005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비아파트		

[그림 3-1-5] 집계구 조사방법

② 조사원별 담당 집계구 방문 및 가구 선정

담당 집계구를 방문하여 원칙에 따른 가구를 선정한다. 이때 가구 조사의 원칙은 최초 추출가구의 가구원 부재 시 2회 추가 재방문, 총 3회 방문 후 실패 시 가구를 대체하며 20, 30대의 젊은층 가구, 1인가구 등의 가구도 재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다.

③ 가구 대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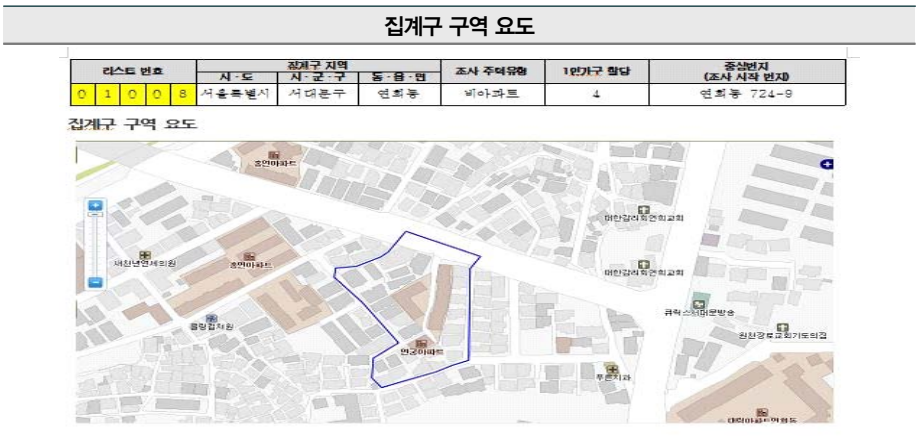
가구를 대체하는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로 조사거부시, 장기 부재시, 조사 불능시, 빈집일시, 조사부적격인 경우이다. 각 대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도 다른데 조사거부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며 이러한 방식에도 조사에 불응할 때에는 대체한다.

〈표 3-1-14〉 가구 대체 원칙

대체상황	방식
조사거부(불응)시	조사원은 조사 대상 가구를 반드시 2회(1일 1회 기준)이상 추가 재방문 통·이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웃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비밀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를 넣어 배부 및 회수(비밀 보호용 봉투 뒷면에 ID, 조사원 이름을 기입하여 배부)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음에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대체
장기 부재 시	장기출태(출장, 취업, 교육 등), 병원 입원(수술, 출산, 사고 등)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옆집이나 이웃에게 수소문하여 확인하고, 2회(1일 1회 기준) 이상 추가 재방문하여도 만나지 못할 경우 부재로 처리
조사 불능 시	정신이상 및 장애, 고령, 자연재해 등으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단, 장애나 고령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 가구 대표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응답사유에 기재한다. 조사대상 가구에 외국인만 살고 있는 경우 한국어를 몰라 조사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조사 불능 처리하고, 다른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빈집일 시	이사 등으로 공가, 폐가인 경우
조사 부적격(대상 외)	상가, 어린이집, 놀이방, 교회, 기도원, 요양소 등 건물, 기숙사, 관사 등 집단 거주, 재개발 지역으로 철거, 기타(14세 미만 거주, 가구 없음 등) 무작위로 선정된 조사방법이 온라인조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등의 온라인을 통한 응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④ 집계구 조사 요도

아래의 집계구별 구역 요도 및 집계구 주변 지역 요도를 활용하여 해당 집계구 방문 및 조사를 진행한다. 단, 배정받은 집계구의 구역 내에서만 조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집계구 주변 지역 요도



[그림 3-1-6] 집계구 구역 요도 및 집계구 주변 지역 요도

2) 설문지 배부 방안

본 조사는 방법론 비교연구조사로서, 3가지 유형의 조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안된 3개 유형의 조사방식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여 추출 집계구까지 동일하게 유지하고 동일한 집계구 내에서 A, B, C형 3종의 설문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즉, 1개 집계구당 15개 가구를 조사하므로, 1개 집계구당 각 설문유형 5개씩 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지 배부 순서를 A, B, C형을 한 번씩 번갈아가며 배부하여 한 지점에서 특정 유형이 몰아서 조사되지 않도록 하였다. 단,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며, 각 유형에 따라 배부하는 설문 유형이 다르다. 즉, 각 유형별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3-1-15〉 유형별 조사방법

유형	조사 방법	설문지
A형	면접조사	개편 전 조사표
B형	면접조사	개편 후 조사표
C형	면접+ 온라인 조사	개편 후 조사표

먼저, 조사 A형의 경우는 가구방문과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즉, 개편 전의 범죄 피해조사표와 조사 평가표를 가지고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에 진행했던 가구면접조사와 동일한 방식이다.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16〉 조사 A형의 조사진행 방식

1단계	• 대상 가구 방문하여 조사동의를 구한 후 조사 시작 • 조사 대상 가구원 수 파악(만14세 이상 가구원) • 먼저, 가구 대표 조사표 진행
2단계	• 가구 대표 조사 후, 가구원 조사 진행 • 단,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할 경우 자기기입식으로 진행
3단계	• 조사대상이지만, 부재중이어서 설문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원 수 파악하여 조사표 배부 •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가구대표가 가구원에게 설명해주도록 안내
4단계	• 면접원이 가구원 연락처 파악하여, 가구원이 설문에 답하도록 독려 및 안내 • 가구원 전원 응답 완료 확인 후, 완료된 조사표 수거위해 재방문 • 수거 현장에서 응답된 내용 검수(현장에디팅) • 확인 완료 후 응답 사례품 전달

두 번째 조사 B형의 경우는 개편 후의 범죄피해조사표(기초조사표+사건조사표=1set)와 조사평가표를 조사 A형과 마찬가지로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조사 B형은 A형과는 달리 조사표가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분리되어 있어 조사 진행 방식이 조사 A형과 다르다. 즉, 기초조사표를 응답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사건조사표 수를 정해주고 사건조사표를 완료한 후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범죄피해경험이 없어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기초조사표와 조사 평가표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하고 조사원도 해당 문항에 자신의 경험 내용을 중심으로 응답한다.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17〉 조사 B형의 조사진행 방식

1단계	• 대상 가구 방문하여 조사동의를 구한 후 조사 시작 • 조사 대상 가구원 수 파악(만14세 이상 가구원) • 먼저, 가구 대표 조사표 진행
2단계	• 가구 대표 조사 후, 가구원 조사 진행 • 단,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할 경우 자기기입식으로 진행
3단계	• 조사대상이지만, 부재중이어서 설문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원 수 파악하여 조사표 배부 •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가구대표가 가구원에게 설명해주도록 안내
4단계	• 면접원이 가구원 연락처 파악하여, 가구원이 설문에 답하도록 독려 및 안내 • 가구원 전원 응답 완료 확인 후, 완료된 조사표 수거위해 재방문 • 수거 현장에서 응답된 내용 검수(현장에디팅) • 확인 완료 후 응답 사례품 전달

→ 4단계까지는 A형과 진행방식 동일

5단계	• 면접원이 수거 현장에서 기초조사표 응답내용 확인 후 사건조사표 작성 여부 결정 • 사건조사표 작성이 필요할 경우 → 현장에서 사건조사표 배부 • 사건조사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응답자의 조사 평가표에 대한 응답
6단계	• 사건조사표 현장에서 작성 후 조사표 평가표 응답 종료 • 작성 대상자가 부재중일 경우, 설문지 유치 후 재방문하여 수거 • 수거 현장에서 응답된 내용 검수(현장에디팅) • 확인 완료 후 응답 사례품 전달

세 번째 조사 C형의 경우는 개편 후의 범죄피해조사표(기초조사표+사건조사표=1set)와 조사 평가표를 조사 A, B형과 마찬가지로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가구 구성표만 오프라인에서 작성하고, 응답은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표와 조사평가표를 온라인상에서 재현하여 온라인설문을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는데 가구의 구성을 파악하는 가구 구성표 및 주변 방법 상황 등은 면접과 조사원이 직접 작성하고, 실제 설문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응답하는 면접과 온라인 설문 방식을 병행한 것이다. 이에 응답자에게 온라인 조사를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안내하고, 해당 가구원 전원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응답을 독려하였다.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18〉 조사 C형의 조사진행 방식

1단계	• 대상 가구 방문하여 조사동의를 구한 후 조사 시작 • 조사 대상 가구원 수 파악(만14세 이상 가구원) • 먼저, 가구 대표에게 가구구성을 파악하는 조사표(C형) 질문
2단계	• 가구 구성을 파악한 후, 가구대표에게 온라인 조사 참여 방법 안내 • 온라인 참여 방법 안내문 제공 • 가구원별로 접속ID를 제공하고, 참여 독려
3단계	• 가구의 온라인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 참여 독려 활동
4단계	• 설문 참여를 위한 독려 활동을 약 1주 정도 진행 • 만약 일주일 이상 조사 대상 가구의 1명도 응답을 하지 않았고, 응답 참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대상 가구 대체 • 조사 대상 가구 재선택

본 조사의 C형에서 적용된 온라인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조사와는 다른 방식이다. 일반적인 온라인을 통한 조사는 응답자를 면대면 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응답자와의 접촉을 위해 준비하거나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고, 온라인

을 통한 조사는 로직에 의해 응답하여 종이표를 통한 조사에 비해 데이터 처리와 같은 영역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적용된 온라인 설문 방식은 기존 면접조사의 방식과 동일하게 응답자를 선정한 후 응답자가 현장에서 설문에 응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응답자가 접속하여 설문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즉, 현장에서 응답자를 만난 후에 설문 응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후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이 방식의 경우, 온라인 조사이기 보다는 가구방문온라인조사라는 명칭이 보다 정확하며 이러한 방식의 조사는 현장에서 설문 응답을 받아올 수 없었으므로 일반적인 면접조사보다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조사비용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바. 조사원 교육

조사원 교육은 7월 21일 서울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인력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조사인력이 다소 부족한 듯 하지만 본 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 경험이 많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숙련된 조사원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조사원 교육에는 자료처리를 담당하는 에디팅팀도 함께 참여하였다.

〈표 3-1-19〉 조사인력현황

조사지역	집계구수	표본수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투입조사원
서울	186	2,766	2	6	55
경기	218	3,234	2	8	60

조사원 교육 절차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단계는 조사목적과 개요 및 조사 흐름 등의 이론적 교육, 2단계는 실제 조사 진행 방법 교육으로 집계구 요도 보는 방법, 가구 선정 및 가구 설득 방법, 부재나 거절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 마지막으로 3단계는 설문지에 대한 교육으로, 설문지는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표의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본 조사는 비교연구로 설문 유형이 3가지가 있으므로, 각 유형별 진행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

육하였다. 또한, 교육 전에 실제로 설문지를 한번 작성해보게 함으로써 설문 문항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도를 높여 실제 교육 당시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7] 조사교육 진행절차

〈표 3-1-20〉 단계별 조사원 교육 내용

단계	교육 항목	세부 내용
1단계	이론 교육	조사의 목적 및 중요성 형사정책연구원 소개 및 역할 본 조사 관련 History 본 조사의 기획 배경 및 중점 고려 사항
2단계	실사 진행 방안 교육	조사방법 및 흐름,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명 집계구 관련 교육(요도 보는 법, 조사대상 가구 선정하는 법 등) 면접조사 진행 방법 및 가구 설득 방법 거부, 무응답, 유치조사 독려 및 수거 방법 조사된 내용 현장검증 방법과 주의점 설문 유형별 조사 진행방법 중점 교육
3단계	설문지 교육	각 설문지별 구성과 특징에 대해 교육함 설문 문항은 B형 설문지를 중심으로 교육 A형과 B형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교육 조사의 내용이 평소 쉽게 접하지 않는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주제이므로 설문조사 내용, 용어, 질문 방식 등에 대해 자세하게 교육 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풀어보게 함으로써 설문지 이해도를 높이도록 함

사. 조사기간

A형이나 B형과 달리 C형에 소요되는 조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A형, B형과 C형의 조사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조사 C형의 경우 다른 온라인조사와는 달리 가구방문을 우선적으로 한 후 조사 참여를 확인하고 가구원의 정보 및 주택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조사응답자에게 개별 아이디를 부여하여 조사응답자 편의대로 조사가 가능한 시간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완료된 조사표를 수거하는 조사 A형과 B형에 비해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A형과 B형의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2일~8월 29일(약 6주)였으며 C형의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9일~9월 30일(약 8주)까지였다.

한편, 조사 A형이나 B형 역시 다른 설문조사에 비해서는 실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이는 서울·경기 6,000가구 조사로 만일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조사기간이 더 짧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서울·경기 집중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완료를 위해 한정된 인력풀(이번 조사를 위해 새롭게 투입되어 조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조사원 채용은 하지 않았음. 기존의 노련한 조사경험이 있는 조사원 투입)을 사용함에 있어 해당 조사원마다 할당된 조사응답자 수가 많기 때문에 실시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아. 집계구 대체 및 가구 응답률

이번 조사에서는 총 404개의 집계구를 추출하였고, 그 중 2개 집계구가 대체되었다. 두 집계구 모두 해당 주택유형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표 3-1-21〉 집계구 대체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체사유	비고 (대체된 집계구)
서울	중구	신당1동	아파트가 없음	신당4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동	아파트가 없음	대화동

집계구를 표본틀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구 활용 조사와는 달리 추출된 집계구 내 조사 대상 가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구의 응답률을 산출할 수 없다. 다만,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된 가구를 기준으로 응답률을 산출하였다. 즉, 이는 조사구 기준의 응답율과는 다르므로 조사구를 표본틀로 한 응답률 결과와는 절대 비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각 조사유형별 응답률이 최대 20%에서 최소 16.7%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가구 응답률에서 미루어 짐작하건데 조사컨택가구에서 조사를 거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본 조사의 경우는 이전의 정규조사와는 달리 민간 리서치업체를 통한 조사로 조사원 역시 민간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응답자의 입장에서 조사의 신뢰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조사는 범죄피해

경험을 알아보는 특수한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특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설문에 응해 주리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조사를 거부한 사람의 경우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조사(C형)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사유형 A, B형에 비해 조사컨택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3-1-22 참조). 즉, 서울의 경우 조사유형 A형의 응답율은 20.0%, 조사유형 B형은 19.8%, 온라인조사방식을 사용한 C형은 18.0%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본 조사의 방식 상 조사 대상 가운데 무작위로 조사유형이 정해지는데 온라인조사로 선정된 가구에서 컴퓨터가 없어 응답이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다른 조사유형에 비해서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3-1-22〉 조사유형별 응답률 현황

유형	시도	조사대상 가구	조사컨택 가구	응답률(%)
A형	서울	922	4,619	20.0
	경기	1,078	6,110	17.6
B형	서울	922	4,648	19.8
	경기	1,078	6,283	17.2
C형	서울	922	5,135	18.0
	경기	1,078	6,468	16.7

자. 실사 및 검증 지도

1) 답례품 지급 기준

본 실사조사에서 응답가구 및 응답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기준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조사유형 A형과 B형은 기초조사표에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5천원 상당의 가정용품을 제공하였고 사건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모두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지급하였고 C형은 조사응답가구에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C형의 경우 온라인조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조사표 응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괄 지급하였다.

〈표 3-1-23〉 조사유형별 답례품 지급 기준

조사유형	구분	대상	답례품
A & B형	기초조사표	조사 응답 가구	5천원 상당의 가정용품 (일회용 가정용품 세트 등)
	사건조사표	사건조사표가 있는 가구원 모두	1만원 상품권
C형(온라인)	공통	조사 응답 가구	1만원 상품권 1매 지급

2) 평균 조사기간

본 조사에서 각 유형별 평균 조사기간은 아래와 같다. A형과 B형의 경우 조사 일수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당일 날 조사를 마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조사 등의 이유로 설문지를 맡기거나 또는 다시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약 30%정도 되었다. 즉, 평균 조사 일수는 0.68일과 0.69일로 비슷했고, 최대 소요기간 또한 9일과 10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C형의 경우, 조사 당일 현장에서 참여를 완료한 가구는 없었다. 가구원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만큼 참여방법 설명 후, 당일에 모든 가구원이 참여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균 조사 소요일 또한 1.22일로 높았으며, 5일 이상 소요된 비율이 10%이상으로 A, B형보다 확연히 긴 조사 기간을 나타냈다. 최대 소요일수 또한 16일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길었다.

〈표 3-1-24〉 유형별 평균 조사기간

	평균 조사 소요일	0일 (당일조사)	1일	2일	3일~4일	5일 이상	최대 소요일수
A형	0.68일	2,910(69.0%)	591(14.0%)	312(7.4%)	291(6.9%)	116(2.7%)	9일
B형	0.69일	3,008(71.1%)	474(11.0%)	337(8.1%)	267(6.3%)	147(3.5%)	10일
C형	1.22일	-	3,552(74.7%)	304(6.4%)	334(7.0%)	562(11.8%)	16일

3) 조사에 대한 검증방식

본 조사에 대한 검증은 전화검증으로 실시하였다. 검증 표본은 통계청의 검증 메뉴얼에 따라 전체 표본수의 10%를 검증하였다. 검증 대상은 응답자 명부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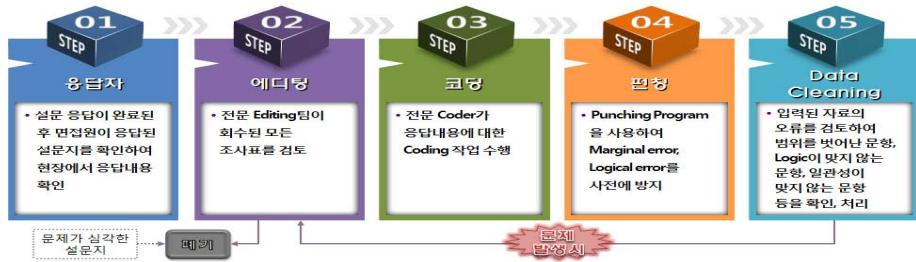
서 무작위 표집방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검증 전, 검증을 위해 선발된 전문 검증원에게 전화 검증 절차 및 매뉴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3-1-25〉 조사방법별 검증 실시 결과

유형	가구수			1번 조사 참여여부	2번 총 가구원수	3번 답례품 수령여부	4번 조사원 평가	5번 범죄피해 여부
	표본수	검증	비율	이상있음	이상있음	이상있음	이상있음	이상있음
A형	2,000	200	10%	0	0	0	0	0
B형	2,000	200	10%	0	0	0	0	0
C형	2,000	200	10%	0	0	0	0	0

4) 자료 처리

조사 결과의 자료처리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현장 에디팅으로, 설문 완료된 이후 조사를 마치기 전에 면접원이 현장에서 응답된 조사표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확인하여야 할 문항은 현장에서 응답자에게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2단계는 조사표가 수거된 이후 조사 용역업체 본사 내에서의 에디팅 단계로 본 조사를 담당하는 에디팅팀을 구성하여 수거된 조사표를 확인하였다. 에디팅 팀은 조사원과 동일하게 실사교육을 참가하고, 에디팅 원칙에 대한 추가 교육 후 투입하여 조사표 상의 응답 오류나 누락 부분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특히 범죄피해 여부와 이에 맞는 사건조사표 응답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3단계는 코딩 단계로 전문 코더가 응답내용에 대한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4단계는 편칭 단계로 조사 용역업체 본사의 편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본사의 편칭 프로그램은 입력 범위, 논리적 분기 등을 사전에 프로그래밍하여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편칭 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입력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5단계는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이터크리닝 단계로 사전에 연구진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사표의 기본 로직(logic)과 내검규칙표를 통해 설문 응답 오류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진이 확인하였다.



[그림 3-1-8] 자료처리 과정

3.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가. 조사표 개편 전·후 효과 비교 조사

1) 비교대상 선정

개편 전·후 효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할 점이 있다. 먼저,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를 개편 전에 이루어진 몇 번째 조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는 개편 후 실시한 조사 가운데 몇 번째 조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 시행한 범죄피해조사표를 개편 전 조사표로 사용하였고 2013년에 시행한 표를 개편 후 조사표로 사용하였다.⁵⁾ 왜냐하면 2006년 범죄피해조사가 개편 전 조사의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된 것이고 2013년 조사는 개편 후 조사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으로 개편 후에도 조사표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비교할 대상과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다. 즉, 개편 전·후의 범죄피해조사 결과를 비교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섯 가지 조사방식의 결과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표 3-1-26 참조). 2006년 시행한 조사 즉 옛 설문지에 옛 표집방식을 채용한 방식(A방식), 2013년에 시행한 조사에서 사용한 새 설문지에 새 표집방식을 활용한 현재의 방식(D방식) 외에도 옛 설문지에 새로운 표집을 이용한 방식(C방식)과 새 설문지에 옛 표집을 활용한 방식(B방식)이 함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5) 다만, 2006년 시행한 범죄피해조사는 특별조사주제로 ‘조직폭력배’ 관련 인식 및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는데 본 조사는 개편 전·후 조사표 비교연구로 해당 질문은 조사표에서 삭제하였음.

렇다면 각 분석대상들을 비교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26〉 분석대상 및 내용의 유형

구 분	구 설문지	새 설문지
편의적 표본	A : 구 설문지+ 구 표본	B : 신 설문지+ 구 표본
무작위 표본	C : 구 설문지+ 신 표본	D : 신 설문지+ 신 표본

먼저, A방식과 D방식 비교하는 방법으로 2006년의 범죄피해조사(A방식)와 2013년의 전국범죄피해조사(D방식)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현재 얻고 있는 피해를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조사는 그 차이가 설문지의 변경 때문인지 아니면 표집방식의 변화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 A방식과 B방식을 비교하는 것으로 2006년 범죄피해조사(A방식)와 현재 사용하는 설문지에 과거의 표집방식을 통한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표집방식은 과거의 것 그대로 고정한 채 순수한 설문도구의 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표본은 재현할 가치가 없는 편의적 표집에 의한 것으로서 이런 표본에 바탕을 두고 설문지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A방식과 C방식 비교를 통한 검증으로 2006년 범죄피해조사(A방식)와 현재의 표본에 옛 설문지를 채용한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설문지는 과거의 것으로 같은 것을 사용하고 단지 표본만 과거와 현재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표본개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거의 설문지가 지금의 것보다 이론적으로 더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 설문지 사용을 기준으로 표본의 효과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네 번째는 B방식과 C방식 비교로 새 설문지에 옛 표본을 사용한 조사(B방식)와 옛 설문지에 구 표본을 사용한 조사(C방식)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설문지와 표집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교결과의 의미를 찾기 어려우므로 검토대상이 되기 어렵다.

다섯 번째는 B방식과 D방식 비교를 통한 검증으로 현재 사용하는 조사방식(D

방식)과 새 설문지에 옛 표본을 사용한 조사(B방식)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표본방식을 과거에서 현재의 것으로 개선했을 때 피해율 추정에 나타나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문지의 효과는 검증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여섯 번째는 C방식과 D방식 비교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하는 조사방식(D방식)과 구 설문지에 신 표본을 사용한 조사(C방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조사표를 과거에서 현재의 것으로 개선했을 때 피해율 추정에 나타나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표본의 효과는 검증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만일 예산이나 조사기간의 제한이 없다면 모든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한 비교 쌍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조사방식(D방식)과 구 설문지에 신 표본을 사용한 조사(C방식)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즉 6번째 비교 쌍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는 설문지 변경의 효과가 표본개선의 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범죄피해조사 역시 제한적인 조사 여건이기는 했지만 기본원칙은 확률비례표집이었고 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표본변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표본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구 표본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개편작업의 가장 큰 부분이 조사표의 변화이며 이러한 조사표의 준거 모형인 미국의 사례에서 설문지의 변화만으로 피해율 추정치가 크게 상승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수정된 범죄피해조사의 범죄 피해 발굴 효과는 개편 전·후 조사표 변화 효과에 주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분석 내용 및 분석방법

조사의 실행이 이뤄지고 나서 자료가 구성되면 신규 설문지 사용시에 피해경험 보고율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게 된다. 표본선정이나 조사방식 등 모든 측면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오직 사용할 설문지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것은 실

험설계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 비교할 내용은 신구 피해방식별로 나타난 피해 보고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신구 설문도구에서 질문하는 조사대상 범죄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의 피해율을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절도, 폭행·상해, 성폭력 등 최종별로 피해율의 차이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사실 단지 최종별 피해율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피해율이 영향을 받느냐는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학력수준과 성별에 따라 피해율 격차가 달라진다는 특정 지역에서 그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세부적 비교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피해율이 지극히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절도, 폭행 및 상해, 성폭행 등 비교 가능한 최종별로 피해 여부 예측모형(로지스틱 모형 등) 등을 설정한 후 모형의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cf : Cantor & Lynch, 2005). 즉, 피해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설문방식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0=옛 설문지, 1= 새 설문지) 주된 독립변수를 정한 후 피해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변수들,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소득, 지역 등을 회귀식에 같이 넣으면 이런 통제변수들의 조건이 같다고 할 때 설문방식 여부에 따라 피해여부 보고여부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식 1>

$$\text{피해여부} = \text{설문방식} + \text{나이} + \text{성별} + \text{학력} + \text{소득} + \text{지역} + \text{나이} * \text{설문} + \text{성별} * \text{설문} + \text{소득} * \text{설문} + \text{학력} * \text{설문}$$

나.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온라인) 효과 비교 조사

자료수집방법 효과 비교 조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 결과와 범죄피해조사에 지금까지 적용된 적 없는 온라인조사 방식을 통해 수집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이 항에서는 먼저,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범죄피해 보고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범죄피해 유형을 추출한 방식과 그에 따른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범죄피해유형 추출방법

① 범죄유형의 분류체계 및 판별조건식

새로운 자료 수집방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범죄피해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식을 만들었다. 즉, 범죄피해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당 문항의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판별식을 만든 것이다. 범죄피해유형은 크게 가구대상 범죄유형과 개인대상 범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가구대상 범죄유형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절도 및 손괴, 주거침입관련(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으로 구분하였고 개인대상 범죄유형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구분하고 다시 폭력범죄는 성폭력, 강도, 폭행, 괴롭힘으로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손괴로 구분하였다.

먼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 가운데 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에 해당하는 판별식을 살펴보면, 범죄발생장소가 집이 아닌 경우 가운데 신체공격이나 위협과 같은 행동은 없었고 자동차 안으로 침입(시도포함)한 경우이거나 재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도포함)한 경우이면서 차량이나 차량 부품의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있을 뻔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다만, 범죄발생장소가 집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범죄발생 당시 함께 살고 있거나 피해자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온 경우에 한하였다. 주거침입관련범죄피해는 집으로의 침입이 있어야 하고 주거침입절도는 범죄발생 당시 조사응답자 본인이나 다른 가구원이 집에 없었고 다른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도 없었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있거나 있을 뻔한 경우를 의미하고 주거침입강도는 범죄발생 당시 조사응답자 본인이나 다른 가구원이 집에 있었고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이 있었으며 재산상의 피해 역시 있거나 있을 뻔한 경우를 의미한다. 주거침입손괴 역시 집으로의 침입이 있었고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은 없었고 재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그럴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한다.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의 마지막으로 단순주거침입은 집으로의 침입 혹은 침입하려고 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3-1-27〉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 판별조건식

	발생 장소 집 여부 [문6]	허락 여부 [문6-1]	집으로 침입 시도 여부 [문7]	당시집 피해자 존재 여부 [문7-2]	신체공격 여부 [문9]	신체공격/ 위협없는 피해내용 [문10]	위협관 련피해 내용 [문11]	신체공 격/위협 있는피 해내용 [문12]	재산피해 여부 [문19]	재산피해 물품 [문19-2]	물건손 상물품 [문20]
자동차 (부품) 절도 및 손괴	예	예			신체공격 /위협 없음	자동차 침입/침입 시도			피해있음/ 당할변함	차량/ 차량부품	
	아니요				신체공격 /위협 없음	자동차 침입/침입 시도			피해있음/ 당할변함	차량/ 차량부품	
	예	예			신체공격 /위협 없음	재물손상/ 손상시도			피해 없음		차량 (부품)
	아니요				신체공격 /위협 없음	재물손상/ 손상시도			피해 없음		차량 (부품)
주거침 입관련 (절도/ 강도/ 손괴)			예	없었다	신체공격 /위협 없음				피해있음/ 당할변함		
			예	있었다	신체공격 /위협 있음				피해있음/ 당할변함		
			예		신체공격 /위협 없음	재물파괴, 손상/시도					
단순주 거침입			예		신체공격 /위협 없음	침입/ 시도					

개인대상 범죄피해유형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구분하였고 폭력범죄 가운데 성폭력은 음란한 영상이나 문자를 보내거나 원치 않은 성적 접촉에서부터 강간피해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강도는 신체적인 공격이나 위협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뻔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폭행은 신체적인 공격이나 위협이 있었지만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던 경우로 제한하며 괴롭힘은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은 없었고 심한욕설이나 말로 괴롭혔거나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엿담, 감시, 스토킹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힌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인대상 범죄피해유형 가운데 재산범죄인 절도는 집 밖에서 발생한 것으

로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은 없으면서 재산상의 피해경험만 있거나 있을 뻔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기는 사기관련 피해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손괴는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은 없고 재물 손괴나 파괴 등의 피해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로 규정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에서 피해내용에 따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규칙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표 3-1-28〉 개인대상 범죄피해유형 판별조건식

		발생 장소 집 여부 [문6]	허락 여부 [문 6-1]	침입 여부 [문7]	신체 공격 여부 [문9]	신체공격/ 위협없는피 해내용 [문10]	위협관련 피해내용 [문11]	신체공격/위 협있는피해 내용 [문12]	사기 피해 여부 [문18]	재산 피해 여부 [문19]	물건 손상 물품 여부 [문20]
폭력 범죄	성폭력					성적접촉/ 음란문자 영상	성폭력위 협/성적접 촉/강간 (위협)	강간(미수)/ 강간이외성 폭력			
	강도	아니요	예		신체공격/ 위협있음		성폭력 피해없음	성폭력 피해없음		피해있음/ 당할뻔함	
	폭행				신체공격/ 위협있음		성폭력 피해없음	성폭력 피해없음		피해없음	
	괴롭힘				신체공격/ 위협없음	심한욕설/ 스토킹/ 헛소문				피해없음	
재산 범죄	절도	아니요	예		신체공격/ 위협없음					피해있음/ 당할뻔함	
	사기								있음		
	손괴	아니요	예		신체공격/ 위협없음	재물손상/ 시도				피해없음	차량제외

② 범죄피해유형 결정규칙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하나의 사건에서 다양한 범죄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사건에서 다양한 성격의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범죄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범죄피해유형을 결정할 것이다.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가구대상 범죄피해가 중복일 경우는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단순주거침입의 순으로, 개인대상 범죄피해가 중복일 경

우는 성폭력>강도, 절도, 폭행>괴롭힘>손괴 등의 순으로 결정할 것이다. 가령, 강도나 폭행, 괴롭힘의 경험이 성폭력 피해 경험과 동시에 있다면 성폭력이 기본형으로 되고 손괴와 절도나 강도의 경험이 함께 있다면 절도나 강도피해경험이 되는 것으로 성폭력의 위계수준이 가장 높다.

〈표 3-1-29〉 기본형 범죄유형 결정규칙

중복 범죄피해의 경우			기본형 범죄유형
구분	범죄피해유형1	범죄피해유형2	
가구대상 범죄	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	주거침입관련 (절도, 강도, 손괴)	주거침입관련(절도, 강도, 손괴)
	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	단순주거침입	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
	주거침입관련 (절도, 강도, 손괴)	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	주거침입관련(절도, 강도, 손괴)
	주거침입관련 (절도, 강도, 손괴)	단순주거침입	주거침입관련(절도, 강도, 손괴)
개인대상 범죄	강도	성폭력	성폭력
	폭행	성폭력	성폭력
	괴롭힘	절도 혹은 강도	절도 혹은 강도
	성폭력	괴롭힘	성폭력
	손괴	절도 혹은 강도	절도 혹은 강도

2)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비교 연구에서 비교할 주요 내용은 기존의 자료수집방법인 오프라인조사방식과 온라인조사방식에 따른 범죄피해 보고율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며 조사응답자의 인식이나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범죄피해 보고율을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에서는 실제 보고된 범죄피해 건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성별이나 학력, 지역에 따른 세부 집단별 차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료수집방식만 다르고 다른 조사 조건은 동일하게 설계되어 조사된 조사 B형과 조사 C형의 데이터를 자료수집방법이라는 변수로 연결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가공한 후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ver. 18.0)을 통해 카이스퀘어(Chi-square), t-test뿐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조사표 응답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것이다.

제2절 인지적 면접조사

조사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사표를 응답하는 주체인 응답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응답자의 문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으로 응답 오류가 나타나 결국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고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조사표 평가방식으로 관심이 높은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지면접은 일대일면접상황에서 참여자의 조사응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응답자의 응답 오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인지면접은 1980년 대 이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심리학과 조사방법론 영역과의 학제간 연구 노력으로 발전하였다(Willis, 1999 : 1). 이러한 인지적 관점의 면접조사는 조사표 설계 및 평가방법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방법론으로 10명에서 15명의 소규모 자발적인 참가자들로부터 조사응답형성과정을 들음으로써 조사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발생할 수 있는 응답오차를 응답자로부터 직접 발견하여 조사표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박영실, 박현정, 윤연옥, 2013; 박영실, 박현정, 정남수, 2013). 즉, 인지면접은 연구자가 조사 참여자의 응답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이해 및 해석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소리 내 생각하기(think-aloud)’나 ‘캐어묻기(probing)’, ‘상황대입(vignette)’등의 기법이 활용된다(Hughes, 2003; Brancato et al., 2006, 박영실 외, 2013 재인용 : 207). ‘소리 내 생각하기’는 Ericsson과 Simons(1980)에 의해 만들어진 심리학적 접근방식으로 조사응답자가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과정을 소리 내어 말하도록 하여 이러한 조사응답자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조사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Willis, 1999).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Willis, 1999 : 5). 한편, ‘캐어묻기’는 ‘소리 내어 말하기’방식의 대안적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면접원이 설문문항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추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면접자의 계획된 질문이 특정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피면접자가 아

닌 면접자가 조사를 이끌어가면서 진행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Willis, 1999 : 5; Priede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응답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서 참여자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케어묻기’ 기법을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조사의 경우 조사방법이나 조사 내용의 특성상 자기기입식조사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사 질문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이해 및 응답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인지적 관점의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응답자의 입장에서 조사표 수정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향후 조사표 수정 및 개선 방향 모색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본 조사에서 진행할 인지면접조사는 개편 전·후 범죄피해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와 해석의 수준 차이를 통해 조사표의 변화 효과를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표 문항에 대한 개선 방향 제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인지면접조사의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즉, 7월 4주부터 3주간 인지면접조사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전반적인 진행방법과 주요 항목에 따른 쟁점을 정리한 인지면접조사 지침서를 작성하고⁶⁾ 면접 참여자의 리쿠르팅과 전문모더레이터(moderator) 섭외 등의 실질적인 조사 준비 작업을 하였으며 8월 3주에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2-1〉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일정	구분	주요 추진사항
7월 4주 ~ 8월 2주	조사 준비	• 인지 면접조사 전문가와의 자문 • 인지 면접조사 지침서 확정 • 참석자 리쿠르팅 및 전문모더레이터(moderator) 섭외 • 조사 일정 확정
8월 3주	조사 진행	• 조사 진행(총 10명)

1. 조사 설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전·후 조사표의 가장 큰 변화는 범죄피해 경험에 대

6) 구체적인 인지면접조사 지침서 내용은 부록2-1를 참조하기 바람.

한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인지면접조사에서는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형식의 차이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이해 수준과 개편 후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에 대한 응답형성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배경변인이나 범죄피해 관련 이론적 변인 문항에 대한 응답오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 및 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태도 등의 주요 문항을 선별하여 예상쟁점과 면접지침을 구성하고, 면접조사 과정에서 응답자 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발견빈도는 낮더라도 조사표 설계상 주요한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한편, 본 인지면접조사의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조사표에 대한 응답을 먼저 하도록 하였다. 즉, 면접 참여자로 하여금 면접 전 조사표에 먼저 응답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 설문 문항에 응답을 하면서 경험한 응답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 볼 수 있고 조사응답자의 조사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응답오류를 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면접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하는 조사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첫 번째(A형)가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이며 두 번째(B형)가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 세 번째(C형)가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 기초 조사표에 포함된 배경 변인 및 범죄피해 관련 이론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표이다. 면접 참여자를 대상으로 3 가지의 조사표 모두를 응답하게 하는데 개편 전·후 범죄피해경험 여부 판단을 위한 회상 자극 질문으로 구성된 A형과 B형의 경우는 응답순서를 번갈아가면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항인 조사진행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면접에 참여할 사람에 대한 리쿠르팅의 경우는 자발적인 연구참여자 가운데 연구참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인지면접조사는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조사 내용에 대한 응답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자의 범죄피해경험 여부 변수가 중요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범죄피해 경험을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확인 했을 경우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질문은 하지 않았다. 다만, 사전 인터뷰를 통해 조사표에 대한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⁷⁾. 한편, 전문모더레이터 섭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지면접 조사 지침서에 대한 활용 수준이었다.

〈표 3-2-2〉 인지면접조사 설계

구 분	내용
표본 수 및 구성	성별, 연령별 분포 고려한 선별과정으로 참여자 10명
조사방법 및 시간	인지면접 (약 1시간 30분 진행 - 면접조사 이전에 조사표 응답 시간 포함)
응답자 모집 방법	구조화된 선정 설문지를 통한 모집방법
조사도구	개편 전·후 범죄피해조사표, 구조화된 가이드라인, 녹취록(스크립트), 녹화영상
조사장소	면접조사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사전문업체의 면접조사실
조사과정	면접 전 조사표 응답 → 전문 모더레이터에 의한 진행 → 실시간 녹취, 녹화 실시

2. 조사 진행 방식

본 조사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A, B, C형에 대한 응답을 먼저 하도록 하고 난 뒤 면접 참여자의 응답이 완료되면 면접자에 의한 ‘케어묻기’방식의 인지면접조사가 진행된다. 인지면접조사 진행방식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조사 과정처럼 면접 참여자에게 응답을 하도록 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 응답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케어묻기를 하는 방법 외에도 1개의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 후 바로 케어묻기를 하고 다음 항목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질문당 조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이전 조사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응답이 다음 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illis, 1999 : 6). 이에 본 조사에서는 해당 조사표에 대한 면접 참여자의 응답이 모두 완료 된 후 해당 질문에 대한 케어묻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만, 응답자가 면접 전 자신이 한 응답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 진행 과정에서 항상 해당 질문과 응답에 대한 내용

7) 인지면접조사 설계 당시에는 인지면접조사와는 별개로 진행 중인 반분조사방식을 응용한 설문조사 즉, 전국범죄피해조사 개편 전·후 조사표에 실제로 응답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사에서 응답한 조사표와는 다른 조사표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개편 전·후 모든 유형의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기억회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조사 협조에 대한 동의를 다시 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대한 집중도나 성실도가 낮아지고 조사에 대한 피로도를 가중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범죄피해조사 개편 전·후 조사표 모두 응답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지면접에서 조사응답을 유도하여 실제 응답을 한 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을 상기시키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면접 전 조사표는 앞서 언급했듯이 세 가지 유형-개편 전 범죄피해경험 유무 확인 질문표, 개편 후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표, 배경변인 및 범죄피해관련 이론적 변인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표로 구분되며 조사표 응답방식은 자기기입식이다. 인지면접조사는 면접 전 조사표 응답 역시 면접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죄피해조사의 자료수집방법 역시 조사원 면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실사과정에서 모든 가구원을 만나 면접방식으로 자료를 취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가구원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조사원이 조사표를 가구대표자를 통해 조사표를 남겨두고 조사응답자 스스로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기입식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⁸⁾ 즉, 면접 전 조사가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원 없이 응답자가 얼마나 범죄피해조사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응답결과와 인지면접과정에서 나타난 응답 내용의 차이를 통해 응답오류를 바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의 하나인 범죄피해조사에 온라인조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지면접조사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 응답자가 면접 전 세 가지의 유형의 조사표를 응답함에 있어서 조사A형과 조사B형은 조사항목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조사항목의 구성이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것 역시 인지면접조사의 주요한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면접 전 조사표에 대한 조사응답의 순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한 응답자가 복수의 조사표에 응답할 경우 이후 조사표에 대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조사에서처럼 개편 전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표(이하 A형)을 읽고 개편 후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표(이하 B형)를 읽을 경우와 B형을 읽고 A형을 읽을 경우의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효과에 대해 통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표 A,B형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여 해당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응답이 완료된 후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에 포함된 배경 및 기초항목에 대한 질문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진행되는

8) 실제로 2012 범죄피해조사의 경우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조사원면접식이 전체의 53.5%, 자기기입식이 46.2%로 나타남.

인지면접조사는 면접 전 조사표 응답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조사장소는 A/V 레코딩 시스템과 실시간녹취작업 등이 가능한 면접조사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면접조사실에서 진행되었고 연구진은 전문모더레이터와 면접 참여자간의 조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룸(monitoring room)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조사의 실질적인 진행은 전문모더레이터를 통한 것으로 원활한 면접 진행과 자연스러운 면접 조사 분위기가 가능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더레이터 섭외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피해조사 및 지침서에 대한 이해 수준이기는 했지만 해당 연구의 연구진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조사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의 질문을 하거나 참여자의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더레이터와 연구진 간의 실시간 문자 전송이 가능한 장치를 이용하였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조사표의 효과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탁종연·최수형

제4장

조사표의 효과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1절 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

범죄피해조사 변경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조사가 시작된 1993년부터 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피해율의 추세를 살펴보자. 범죄피해조사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3년(조사대상기준시점)부터 2005년(조사대상기준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피해율이 2008년(조사대상기준 시점)에는 일부 범죄에서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⁹⁾ 예를 들어 개인범죄인 폭행 및 상해의 천명 당 피해건수가 5.4에서 9.2로, 절도는 14.2에서 59.6으로, 강도는 3.9에서 4.6으로 상승하였으나, 성폭력사건은 20.5에서 13.7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모집단의 피해율이 비슷한 추세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박철현, 2013), 2008년 피해조사 방식은 더 많은 피해사건을 발굴해 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율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다소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전면 개편한 조사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설문지 자체의 효과를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9) 해당 연도는 조사시행 연도가 아닌 조사 대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임.

〈표 4-1-1〉 전국 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피해율의 추이

연도 ¹⁾		변경 전 조사체제					변경 후 조사체제		
		1993년	1996년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개인 범죄	성폭력 ²⁾	173.2	70.0	93.9	30.5	20.5	6.84(13.7) ³⁾	1.99(4.0) ³⁾	1.74(3.48) ³⁾
	폭행/상해	40.5	32.4	24.3	7.4	5.4	9.2	2.8	5.2
	절도	135.8	111.3	91.4	26.4	14.2	59.6	19.6	13.3 ⁴⁾
	강도	33.9	33.3	13.3	4.4	3.9	4.6	3.3	0.7

1) 해당연도는 조사시행시점이 아니라 조사대상시점임.

2) 개편 전 조사에서 성폭력에는 성희롱을 포함한 반면, 개편 후 조사에서는 성폭력에서 성희롱 제외하였음.

3) 남여 모두 분모로 포함하여 계산, 괄호 안 숫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면 피해율이 두 배일 것으로 가정한 것

4) 일반절도 12.25+소매치기 1.03 = 13.28

참고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범죄피해율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확인한 것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절도 7.1%, 사기 4.5%, 강도 1.1%, 폭행 및 상해 1.3%의 피해율이 나타났는데, 2005년의 경우에는 절도 4.5%, 사기 2.4%, 강도 0.75%, 폭행 및 상해 0.5%로서 약간 감소하다가, 2008년에는 절도 4.2%, 사기는 1.7%, 강도는 0.5%, 폭행 및 상해 0.6%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제2절 개편 전·후 피해조사에 나타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비교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개편 전·후 조사표를 통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개편 전 조사표를 조사한 경우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53.1%를 차지하여 절반이상이었고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전체의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1.2%), 50대(20.5%), 20대(12.7%)등의 순이었으며 최종학력의 경우는 대졸인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다. 한편, 혼인상태의 경우는 현재 배우자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혼 24.5%,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는 6.3%의 순이었으며 거주지역의 경우는 경기도가 전체의 54.2%로 절반 이상

을 차지하였다. 한편, 개편 후 조사표를 통한 경우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연령대의 경우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대졸인 경우가 46.8%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상태 역시 현재 배우자가 있다는 조사응답자가 전체의 70%이상이었고 거주 지역 역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6%로 절반이상이었다. 즉, 조사표에 따른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구소득의 경우 개편 전 조사표를 통한 조사응답자는 ‘월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월 300만원~500만원 미만’, ‘월 100만원 미만’의 순이었고 개편 후 조사표를 통한 조사응답자는 ‘월 300만원~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개편 후 조사표에 응답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4-2-1〉 조사표 유형에 따른 설문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조사표 유형			
		개편 전(과거)		개편 후(현재)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980	(46.9)	1,995	(47.3)
	여자	2,240	(53.1)	2,223	(52.7)
연령대	10대(만14세이상~19세이하)	322	(7.6)	274	(6.5)
	20대(만20세~29세)	537	(12.7)	571	(13.5)
	30대(만30세~39세)	896	(21.2)	986	(23.4)
	40대(만40세~49세)	1,077	(25.5)	1,023	(24.3)
	50대(만50세~59세)	867	(20.5)	932	(22.1)
	60대(만60세~69세)	399	(9.5)	311	(7.4)
	70대 이상	122	(2.9)	121	(2.9)
최종 학력	중졸이하	556	(13.2)	440	(10.4)
	고졸	1,591	(37.7)	1,777	(42.2)
	대졸	2,044	(48.4)	1,970	(46.8)
	대학원이상	28	(0.7)	26	(0.6)

		조사표 유형			
		개편 전(과거)		개편 후(현재)	
		빈도	%	빈도	%
혼인 상태	미혼	1,035	(24.5)	966	(22.9)
	현재 배우자 있음	2,918	(69.1)	2,973	(70.5)
	사별이나 이혼	267	(6.3)	276	(6.5)
지역	서울	1,932	(45.8)	1,915	(45.4)
	경기도	2,288	(54.2)	2,303	(54.6)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92	(21.1)	638	(32.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662	(39.4)	827	(41.4)
	500만원 이상	1,666	(39.5)	530	(26.6)

2. 전체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목적에 맞게 정리하였다. 먼저 두 자료의 분석단위를 응답자로 일치시켰다. 과거 방식 즉 2006년 범죄피해조사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에는 응답자 한명이 하나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방식 즉 2012년 조사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는 그렇지 않아 조정이 필요했다. 현재 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응답자 한 명이 각 사례를 구성하고는 있지만, 중복 피해를 입은 경우 마치 응답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처럼 사례수를 추가했던 것이다. 정확한 피해율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 방식 자료에서 중복된 응답자 15사례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애초 자료에는 응답자 4,218명 외에 중복사례 15사례 등 4,233사례가 있었으나, 이하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4,218명만이 포함되었다.¹⁰⁾

비교분석을 위해 두 번째로 실시한 작업은 비교대상 범죄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었다. 과거 설문에서는 절도, 강도, 폭행과 상해, 그리고 성폭력 등 4가지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질문했지만, 현재 방식 설문에서는 그 외에 사기, 손괴 등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비교대상은 공통된 4가지 범죄유형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범죄유형이라도 세부 범죄유형이 다른 경우 일부 조정을 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 설문에서는 강간, 성추행 외에 성희롱을 질문대상으로 하고 있

10) 삭제된 사례의 목록은 부록 4을 참고하기 바람.

으나, 현재 설문에서는 성희롱은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¹¹⁾ 과거 설문방식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비교목적상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하에서 비교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그리고 성범죄 등 4가지이다.

2012년 방식(현재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2-2 참조). 조사에 응한 총 2천 가구 4,218명 중 4가지 범죄피해를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은 단 61명이었다. 개별 범죄별로 나눠보면 자동차부품절도를 경험한 사람이 4명, 주거침입절도가 14명, 대인절도 32명 등 절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강도 0명, 대인강도 7명 등 강도피해자가 7명, 폭행 및 상해 1명, 성폭력(성추행 및 강간) 3명 등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2006년 방식(과거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빈도가 현재방식 조사결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천 가구 4,220명 중에서, 피해를 한 가지라도 경험한 사람은 152명으로 현재설문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범죄별로 나눠보면 자동차부품절도를 경험한 사람이 29명, 주거침입절도 38명, 대인절도 46명, 주거침입강도 5명, 대인강도 8명, 폭행 및 상해 12명, 성폭력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개별 범죄유형에서 더 많은 피해경험자가 확인된 것이다.

〈표 4-2-2〉 신구 조사표에 따른 피해자 빈도 비교

(단위 : 명)

피해종류	과거 설문 피해자 빈도	현재 설문 피해자 빈도
절도	109	50
자동차(부품)절도 기수	29	4
주거침입절도	38	14
대인절도	46	32
강도	13	7
주거침입강도	5	-

11) 과거 설문에서는 “강간,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성희롱을 포함한 것이 분명함. 하지만, 현재 설문에서는 응답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 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묻고 그 아래에서 무기, 폭력 방식 다음에 6번째 예시 항목으로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을 제시하였고, 30번 문항에서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하고 낯선 사람, 조금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설문에서는 성희롱 피해경험을 질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단위 : 명)

피해종류	과거 설문 피해자 빈도	현재 설문 피해자 빈도
대인강도	8	7
폭행 및 상해	12	1
성추행 및 강간	19	3
총 피해자수 (n)	152(4,220)	61(4,218)

현재 방식과 과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천 명당 피해율로 환산하여 비교하여 보았다(표 4-2-3 참조). 과거 방식에서는 절도, 강도, 폭행과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천 명당 36.0로 나타났는데 비해, 현재 방식에서는 14.5로 나타나 약 2.5배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죄종별로 보면 과거 방식에서는 절도의 피해율이 25.8로서 현재 방식에서의 11.9보다 2.2배 높았으며, 강도의 피해율은 3.1로서 현재방식의 1.7보다 1.8배, 폭행 및 상해는 2.8로서 현재설문방식의 0.2보다 무려 14배, 성추행 및 강간의 피해율도 4.5로서 현재방식의 0.7보다 6.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인강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p<.01$). 즉, 전체적으로 피해율 격차가 컸지만, 특히 폭행 및 상해와 성추행 및 강간 등 폭력범죄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표 4-2-3〉 신구 조사표에 따른 천 명당 피해율 비교

피해종류		과거 설문 천 명당 피해율(A)	현재 설문 천 명당 피해율(B)	현재설문 피해율 대비 과거설문 피해율
절도	자동차부품절도 기수	6.9	0.9	7.7 ^{**}
	주거침입절도	9.0	3.3	2.7 ^{**}
	대인절도	10.9	7.6	1.4 [*]
	소계	25.8	11.9	2.2 ^{**}
강도	주거침입강도	1.2	-	- [*]
	대인강도	1.9	1.7	1.1
	소계	3.1	1.7	1.8
폭행 및 상해		2.8	0.2	14.0 ^{**}
성추행 및 강간		4.5	0.7	6.4 ^{**}
피해율 총 합계(n)		36.0(4,220)	14.5(4,218)	2.6 ^{**}

* $p<.05$, ** $p<.01$

참고로 현재방식의 설문조사 결과를 2012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규 범죄피해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두 조사에서는 모두 같은 설문도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조사방식도 거의 일치하였으므로 비슷한 조사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이번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만을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2012년 대상조사에서 서울시의 피해율(5.3%)과 경기도의 피해율(4.4%)이 전국의 평균 피해율(4.6%)보다 다소 높았다는 점을 상기하면(김은경 외, 2013 : 108-109),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이번 조사에서의 피해율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반대였다. 2012년(조사대상시점기준) 피해조사결과에서의 피해율이 조사대상시점 2013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폭행 및 상해의 경우 2012년에는 2013년보다 26배나 피해율이 높았고, 성폭력이나 대인절도의 경우에도 2배 가까이 높았다. 다만 강도의 경우만 올해 실시한 조사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정규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율은 이번에 과거 설문도구를 이용한 조사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었다.

〈표 4-2-4〉 2012년 범죄피해조사 피해율과 현재 설문방식 피해율 비교

(단위 : %)

피해종류(n)	2012년 ¹⁾ 피해율 (13,317)	2013년 ¹⁾ 피해율 (4,218)	2013년 피해율 대비 2012년 피해율
대인절도 (자동차부품절도 포함)	13.3	8.5	1.6
주거침입절도	11.6	3.3	3.5
주거침입강도	0.3	-	-
대인강도	0.7	1.7	0.4
폭행 및 상해	5.2	0.2	26.0
성폭력	1.7	0.9	1.9

1) 해당연도는 조사시행시점이 아니라 조사대상시점임.

2013년 대상 조사와 2012년 대상 조사결과에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나타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한 해 사이에 우리나라의 범죄 자체가 급속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소위 4대악 척결을 추진하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4대악과 관계없는 대인절도 역시 많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완전히 수궁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조사방법상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는 정규범죄피해조사와는 달리 통계청이 아니라 일반 조사기관에서 시행하였다. 조사원의 숙련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같은 설문지를 썼다고 하지만, 설문지 표지에 통계청 마크가 생략되어 있는 등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시행시기도 2012년 조사에서는 5월경이었지만, 이번 조사는 7월경이어서 회상의 난이도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 상황의 변화와 조사방법론의 변화는 모두 금번 조사의 피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단 1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같은 설문도구를 사용해 얻은 결과라고 보기에 피해를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거의 같은 설문지로 1년의 시간차이를 두고 조사를 했는데, 폭행 및 상해의 피해율이 무려 26배, 주거침입절도에서는 3.5배의 피해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번에 실시한 조사가 작년에 수행한 정규 범죄피해조사에 비교하여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이용해 추세분석을 하는 등 지나친 과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율 자체의 변동이나 조사방법상의 차이가 두 가지 설문도구에서 나타난 피해율 격차를 비교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디자인을 통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직 설문지만 다른 것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율 자체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거나, 기술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두 설문도구에서 드러난 차이의 간격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피해율이 역전되어 나타나는 등의 극단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 지역별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가. 서울과 경기

과거 방식 설문과 현재 방식 설문으로 포착한 피해율의 차이가 있음은 확인하였지만, 그런 차이가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증감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표본을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피해

울차이가 보다 더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과거 설문에서 포착한 절도의 피해율이 27.5로서 현재 설문에서 얻은 피해율 11.3보다 2.4배 정도 높은 피해율이 나왔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과거 설문에서 4.8, 현재 설문에서 0.4의 피해율이 도출되어 그 차이가 12배나 되었다. 반면 서울에서는 절도에서 그 차이가 1.9배, 폭행 및 상해는 3.2배, 성폭력 4.1배등 전체 피해율의 편차가 2.0배에 그쳤다. 이런 사실은 경기도민들이 서울시민들보다 변경된 설문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5〉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조사표별 피해율 비교

지역	피해종류	과거 설문 피해율	현재 설문 피해율	현재설문 피해율 대비 과거설문 피해율
서울	절도	23.8	12.5	1.9 ^{**}
	강도	0.5	1.0	0.5
	폭행 및 상해	1.6	0.5	3.2 [*]
	성폭력	4.1	1.0	4.1 [*]
	전체 피해율(n)	30.0(1,932)	15.1(1,915)	2.0 ^{**}
경기	절도	27.5	11.3	2.4 ^{**}
	강도	5.2	2.2	2.4
	폭행 및 상해	3.9	-	- ^{**}
	성폭력	4.8	0.4	12.0 ^{**}
	전체 피해율(n)	41.1(2,288)	13.9(2,303)	3.0 ^{**}

*p<.05, **p<.01

나. 도시와 농촌

표본을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는 행정구역상 동(洞) 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는 읍면(邑面)지역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표 4-2-6참조). 두 지역 간에는 거의 피해율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 지역에서는 과거 설문에서 포착한 절도의 피해율이 26.5로서 현재 설문에서 얻은 피해율 11.7보다 2.3배 정도 높게 나왔다. 폭행 및 상해는 과거 설문에서 2.9, 현재 설문에서 0.3의 피해율이 도출되어 그 차이가 9.7배나 되었다. 강도의 경우에는 1.6배, 성폭력에서는 5.3배의 차이가 나는 등 전체적으로 동 지역은 신규 설문으로 확인한 피해율의 차이가 2.5

배가 되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절도에서 1.4배, 폭행 및 상해에서 3.0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폭행과 상해의 경우 과거 설문의 피해율은 2.7이었으나, 현재 설문에서는 아예 피해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성폭력에 있어서도 과거 설문으로 8.0의 피해율이 도출된 반면, 현재 설문에서는 피해사례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읍면지역의 피해율은 동지역과 거의 유사한 2.3배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최종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동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 변경된 설문지에 반응하는 정도는 유사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6〉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신규 조사표 피해율 비교

지역	피해종류	과거 설문 피해율	현재 설문 피해율	현재설문 피해율 대비 과거설문 피해율
동 지역	절도	26.5	11.7	2.3 ^{**}
	강도	2.6	1.6	1.6
	폭행 및 상해	2.9	0.3	9.7 ^{**}
	성폭력	4.2	0.8	5.3 ^{**}
	전체 피해율(n)	35.9(3,843)	14.3(3,848)	2.5 ^{**}
읍면 지역	절도	18.6	13.5	1.4
	강도	8.0	2.7	3.0
	폭행 및 상해	2.7	-	-
	성폭력	8.0	-	-
	전체 피해율(n)	37.1(377)	16.2(370)	2.3

^{**}p<.01

다. 지역특성별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변화 비교

<표 4-2-7>은 이상의 서술한 지역특성별 피해율 변화의 모습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가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차이보다 더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7〉 지역특성별 과거방식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과 현재방식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지역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	전체 범죄 피해
서울	1.9 ^{**}	0.5	3.2 [*]	4.1 [*]	2.0 ^{**}
경기	2.4 ^{**}	2.4	- ^{**}	12.0 ^{**}	3.0 ^{**}
동지역	2.3 ^{**}	1.6	9.7 ^{**}	5.3 ^{**}	2.5 ^{**}
읍면지역	1.4	3.0	-	-	2.3

^{*}p<.05, ^{**}p<.01

4. 응답자 특성별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가. 성별

설문지 변경의 효과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이 크다. 설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설문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표본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성표본사이에서 피해율 변화의 차이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4-2-8참조). 남성들 사이에서는 과거 설문에서 포착한 절도의 피해율이 21.2로서 현재 설문에서 얻은 피해율 11.0보다 1.9배 정도 높았다. 강도의 경우 과거설문에서 4.0, 현재 설문에서 1.0의 피해율을 보였으며, 폭행과 상해의 경우 과거 설문에서 5.6과 현재 설문에서는 피해사례가 없었고, 성폭행은 과거 설문지에서는 1.0의 피해율이 보고되었지만, 현재 설문에서는 피해사례가 없는 등 전체적으로 신규 설문으로 확인한 피해율의 차이가 2.7배였다. 반면 여성표본에서는 이 같은 차이가 다소 작게 나타났다. 절도에서 그 차이가 2.4배가 된 반면, 강도, 폭행 및 상해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성폭력에서는 과거 설문에서 7.6, 현재 설문에서 1.3 등 5.8배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피해율 차이는 2.4배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남성들이 여성들보

〈표 4-2-8〉 성별 과거방식 피해율과 현재방식 피해율의 비율

성별	피해종류	과거 설문 피해율	현재 설문 피해율	현재설문 피해율 대비 과거설문 피해율
남자	절도	21.2	11.0	1.9 [*]
	강도	4.0	1.0	4.0
	폭행 및 상해	5.6	-	- ^{**}
	성폭력	1.0	-	-
	전체 피해율(n)	31.8(1,980)	12.0(1,995)	2.7 ^{**}
여자	절도	29.9	12.6	2.4 ^{**}
	강도	2.2	2.2	1.0
	폭행 및 상해	0.4	0.4	1.0
	성폭력	7.6	1.3	5.8 ^{**}
	전체 피해율(n)	39.7(2,240)	16.6(2,233)	2.4 ^{**}

^{*}p<.05, ^{**}p<.01

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설문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피해율 격차가 남성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은 현재 설문지가 과거설문지에 비해 여성들의 성폭력 범죄피해 보고 의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연령대별

설문지 변경의 효과는 응답자의 나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본을 나이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피해율 변화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2-9 참조). 20대 이하에서는 과거 설문에서 포착한 절도의 피해율이 16.3으로서 현재 설문에서 얻은 피해율 3.6보다 4.5배나 높았다. 강도의 경우 과거설문에서 3.5, 현재 설문에서 1.2로 나타났고, 성폭행은 과거 설문지에서는 3.5의 피해율이 보고되었지만, 현재 설문에서는 피해사례가 없는 등 전체적으로 신규 설문으로 확인한 피해율의 차이가 5배나 되었다.

30대 표본에서는 이 같은 피해율 차이가 다소 감소하였다. 절도의 피해율이 과거 설문방식에서 39.1, 현재 설문방식에서 12.2로 나타나 그 차이가 3.2배로 나타났다으며, 강도에서 0.7배, 성폭력에서는 7.8배 등 전체적으로 30대의 피해율 차이는 3.1배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피해율 차이가 더 감소하였다. 절도의 피해율 차이가 1.8배, 강도 1.9배, 폭행 및 상해 1.9배, 성폭력 6.5배 등 전체적으로 2배의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율 차이는 40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전체 피해율 차이가 2.3배, 60대에서는 그 차이가 1.7배 정도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설문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현재 설문방식으로 포착된 전체 피해율이 단 4.7에 그쳤고, 신규 설문방식에 의한 차이가 무려 5배나 되었다는 점은 이들이 현재 방식의 설문지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9〉 나이대별 과거방식 피해경험 보고율과 현재방식 피해경험 보고율의 비율

연령대	피해종류	과거 설문 피해율	현재 설문 피해율	현재설문 피해율 대비 과거설문 피해율
20대 이하	절도	16.3	3.6	4.5 ^{**}
	강도	3.5	1.2	2.9
	폭행 및 상해	-	-	-
	성폭력	3.5	-	-
	전체 피해율(n)	23.3(859)	4.7(845)	5.0 ^{**}
30대	절도	39.1	12.2	3.2 ^{**}
	강도	2.2	3.0	0.7
	폭행 및 상해	1.1	-	-
	성폭력	7.8	1.0	7.8 [*]
	전체 피해율(n)	50.2(896)	16.2(986)	3.1 ^{**}
40대	절도	27.9	15.6	1.8
	강도	3.7	2.0	1.9
	폭행 및 상해	1.9	1.0	1.9
	성폭력	6.5	1.0	6.5 [*]
	전체 피해율(n)	39.9(1,077)	19.6(1,023)	2.0 ^{**}
50대	절도	31.1	16.1	1.9 [*]
	강도	2.3	1.1	2.1
	폭행 및 상해	4.6	-	- [*]
	성폭력	2.3	-	-
	전체 피해율(n)	39.2(867)	17.2(932)	2.3 ^{**}
60대 이상	절도	5.8	9.3	0.6
	강도	3.8	-	-
	폭행 및 상해	9.6	-	- [*]
	성폭력	-	2.3	-
	전체 피해율(n)	19.2(521)	11.6(432)	1.7

*p<.05, **p<.01

다. 소득별

설문지 변경의 효과가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표본을 가구 소득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의 소득과 두 설문방식간의 피해율 변화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2-10 참조).

월 가구 소득 3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과거 설문에서 포착한 절도의

피해율이 23.5로서 현재 설문에서 얻은 피해율 17.2보다 1.4배 높은 피해율이 나왔다. 강도의 경우 과거설문에서 1.1, 현재 설문에서 3.1로 나타났고, 폭행 및 상해는 과거 설문지에서는 5.6의 피해율이 보고되었지만, 현재 설문에서는 피해사례가 없는 등 전체적으로 신규 설문으로 확인한 피해율의 차이가 1.9배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위와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절도의 피해율이 과거 설문방식에서 19.9, 현재 설문방식에서 10.9로 나타나 그 차이가 1.8배로 나타났으며, 폭행 및 상해에서 2.0배, 성폭력에서는 1.0배 등 전체적으로 중간소득계층의 피해율 차이는 1.9배로 나타났다.

비교적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월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에서도 피해율 차이는 다른 집단과 거의 동일하였다. 절도의 피해율 차이가 1.5배 등 전체적으로 2배의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 종합하자면 설문방식간의 피해율 차이는 응답자들의 경제수준과는 상관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사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두 설문방식에 추출한 표본들의 소득별 분포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표 4-2-10〉 가구 소득별 과거방식 피해율과 현재방식 피해율의 비율

소득구분	피해종류	과거 설문 피해율	현재 설문 피해율	현재설문 피해율 대비 과거설문 피해율
300만원 미만	절도	23.5	17.2	1.4
	강도	1.1	3.1	0.4
	폭행 및 상해	5.6	-	- *
	성폭력	10.1	-	- **
	전체 피해율(n)	39.2(89)	20.4(638)	1.9 *
300-500만원 미만	절도	19.9	10.9	1.8 *
	강도	2.4	-	-
	폭행 및 상해	2.4	1.2	2.0
	성폭력	1.2	1.2	1.0
	전체 피해율(n)	25.9(1,662)	13.3(827)	1.9 *
500만원 이상	절도	33.0	22.6	1.5
	강도	4.8	-	- **
	폭행 및 상해	1.8	-	-
	성폭력	4.8	-	- **
	전체 피해율(n)	44.4(1,666)	22.6(530)	2.0 **

*p<.05, **p<.01

이다. 과거 설문방식 사용자 중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89명에 불과한 반면, 현재 설문방식에는 638명이나 되었고, 반대로 300~500만원 중간층의 경우 과거 설문 사용자가 1,662명이었으나, 현재 설문사용자들 사이에서는 827명에 불과하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이에 이를 통제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라. 학력별

설문지 변경의 효과는 응답자의 학력수준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이 크다. 설문지의 이해능력과 직접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본을 최종학력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중졸이하 저학력층과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고졸 그룹에서보다 피해를 변화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1 참조). 피해를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저학력 계층에서였다. 과거 설문에서 포착한 절도의 피해율이 7.2로서 현재 설문에서 얻은 피해율 9.1의 0.2배 정도 낮았지만, 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의 경우에는 과거 설문방식에서만 피해율이 각각 7.2, 3.6, 1.8로 나왔고, 현재 설문에서는 피해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율은 과거 설문에서 19.8인데 비해 현재 설문에서는 0.9로 무려 22배의 차이가 났다. 다만 이 그룹의 표본크기가 556명과 440명으로 작아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졸 그룹에서는 이런 피해율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절도에서 그 차이가 2.2배, 강도에서 1.2배, 폭행 및 상해에서 11배, 성폭력 3.6배 등 전체적으로 고졸 그룹의 피해율 차이는 2.3배로 나타났다. 비교적 고학력계층인 전문대 교육이상을 받은 그룹에서 고졸그룹보다 다소 높은 피해율 차이가 발견되었다. 절도의 피해율 차이가 3.4배, 성폭력 6.2배 등 전체적으로 4.0배의 격차가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설문지 개편이 저학력층과 고학력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다소 모순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찾기는 힘들다. 다만 이런 차이가 특히 중졸이하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은 새로 개편한 설문지가 저학력층이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주의할 점은 두 설문방식에 추출한 표본들의 학력 분포가 다소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계층이 과거 설문방식 응답자 가운데 2,072명인

데 비해, 현재 설문방식에는 948명만이 포함되었다. 반대로 과거 설문방식 응답자 중 고졸이 1,591명인데 비해, 현재 설문사용자들 사이에서는 2,825명이나 되었다.

〈표 4-2-11〉 학력수준 과거방식 피해경험 보고율과 현재방식 피해경험 보고율의 비율

학력수준	피해종류	과거 설문 피해율	현재 설문 피해율	현재설문 피해율 대비 과거설문 피해율
중졸 이하	절도	7.2	9.1	0.8
	강도	7.2	-	-
	폭행 및 상해	3.6	-	-
	성폭력	1.8	-	-
	전체 피해율(n)	19.8(556)	0.9(440)	22.0
고졸	절도	28.9	13.1	2.2 ^{**}
	강도	3.1	2.5	1.2
	폭행 및 상해	4.4	0.4	11.0 ^{**}
	성폭력	2.5	0.7	3.6
	전체 피해율(n)	39.0(1,591)	16.6(2,825)	2.3 ^{**}
전문대 이상	절도	28.5	8.4	3.4 ^{**}
	강도	1.9	-	- [*]
	폭행 및 상해	1.4	-	-
	성폭력	6.8	1.1	6.2 ^{**}
	전체 피해율(n)	38.1(2,072)	9.5(948)	4.0 ^{**}

*p<.05, **p<.01

마. 피해자 특성별 피해율 변화율 비교

이상에서 설명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설문지 변경의 효과를 정리해 보자. 성별이나 소득별로는 피해율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나이대와 학력별로는 그 차이가 비교적 컸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나이대별로는 저 연령층일수록 신규 설문지에 따라 포착된 피해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에서의 피해율 차이가 가장 컸지만,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차이도 고졸에 비해서는 다소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한 발견이었다.

〈표 4-2-12〉 응답자 특성별 과거방식 피해경험 보고율과 현재방식 피해경험 보고율의 비율

구 분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	전체 범죄 피해
성별	남	1.9 [*]	4.0	- ^{**}	-	2.7 ^{**}
	여	2.4	1.0	1.0	5.8 ^{**}	2.4 ^{**}
연령대	20대 이하	4.5 ^{**}	2.9	-	-	5.0 ^{**}
	30대	3.2 ^{**}	0.7	-	7.8 [*]	3.1 ^{**}
	40대	1.8	1.9	1.9	6.5 [*]	2.0 ^{**}
	50대	1.9 [*]	2.1	- [*]	-	2.3 ^{**}
	60대 이상	0.6	-	- [*]	-	1.7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4	0.4	- [*]	- ^{**}	1.9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8 [*]	-	2.0	1.0	1.9 [*]
	500만원 이상	1.5	- ^{**}	-	- ^{**}	2.0 ^{**}
학력 수준	중졸 이하	0.8	-	-	-	22.0
	고졸	2.2 ^{**}	1.2	11.0 ^{**}	3.6	2.3 ^{**}
	전문대 이상	3.4 ^{**}	- [*]	-	6.2 ^{**}	4.0 ^{**}

*p<.05, **p<.01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 분석방법

설문방식의 변화가 피해율에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된 독립변수는 설문방식이다. 과거 설문지를 사용했으면 1, 현재 설문지를 사용한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통제변수는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특성을 나타낸다. 만 나이는 응답자의 나이를 정수 값으로 표시하고 있다. 남자변수는 응답자의 성별이 남자일 경우 1로 여자일 경우 0의 값을 부여했다. 학력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나타낸다. 서울여부는 응답자가 서울에서 표집된 경우 1로, 경기에서 표집된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표 4-2-13〉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조사표의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효과 분석)

변수 설명	평균	변수 값의 범위
과거 설문지	0.5	0-1
만 나이	42.3	14-91
남자	0.5	0-1
학력1)	4.5	1-7
소득2)	4.8	1-9
서울여부	0.5	0-1

1) 학력변수는 1=무학, 2=초등, 3=중등, 4=고등, 5=전문대, 6=4년제, 7=대학원이상

2) 소득변수는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미만, 3=200~300만원 미만, 4=300~400만원 미만, 5=400~500만원 미만, 6=500~600만원 미만, 7=600~700만원 미만, 8=700~1,000만원 미만, 9=1,000만원 이상

나. 분석결과

<표 4-2-14>는 조사표의 변화가 피해여부 기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이다. 과거 설문지를 사용하면 현재 설문지를 했을 때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후에도 절도, 강도, 폭행 및 협박, 그리고 성범죄피해 등 피해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1.8배 정도 높아진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학력,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설문지역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지 변경의 효과가 통제변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를 추가로 만들어 식에 넣었으나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나이, 성별, 학력, 소득과 사는 지역이 같다고 할 때 현재 설문지보다 과거 설문지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들이 피해여부를 1.8배 정도 더 잘 기록하며, 설문지의 효과는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4-2-14〉 조사표와 응답자특성이 전체 범죄피해 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변 수	계수값	왈드 (Wald)	승산비 (OR)
과거 설문지	608 ***	9.927	1.836
만 나이	-0.001	0.010	0.999
남자	-0.305 **	3.969	0.737
학력	0.034	0.249	1.035
소득	0.060	0.045	1.062
서울	-0.267	3.078	0.766
상수	-4.089	71.501	-
-2 log likelihood	1659.6		
Nagelkerke R2	0.018		
n	6,214		

*p<.05, **p<.01, ***p<.001

<표 4-2-15>는 설문방식의 변화가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그리고 성폭력 등 개별범죄 피해기록에 주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과거 설문지는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같게 통제한 후에도 폭행 및 상해범죄의 피해율의 포착확률을 8배 이상, 성폭력 범죄에서는 6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강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계수의 크기도 더 작았다. 과거 설문지는 주로 폭행 및 상해와 성폭력 같은 대인 범죄의 피해포착 능력이 현재 설문지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15〉 조사표와 응답자특성이 개별 범죄피해 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변수	절도 (승산비)	강도 (승산비)	폭행 및 상해 (승산비)	성폭력 (승산비)
과거 설문지	1.384	3.458	8.274 **	6.234 *
만 나이	1.000	0.983	1.062 **	0.981
남자	0.657 **	2.183	5.715 **	0.113 ***
학력	1.052	0.734	0.966	1.553 *
소득	1.121 **	0.983	0.982	0.808
서울	0.886	0.186 **	0.501	0.747
상수	0.011	0.008	-	0.001
-2 log likelihood	1327.9	195.8	163.4	239.0
Nagelkerke R2	0.015	0.072	0.125	0.115
n	6,214			

*p<.05, **p<.01, ***p<.001

제3절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 비교

1. 미응답 비교

범죄피해조사 설문지가 하는 기능은 두 가지이다. 즉 응답자들이 피해사례를 회상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모두 설문지에 기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피해를 회상하는 것과 그 기억을 기록하는 것은 다른 과정이다.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범죄피해 경험을 모두 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불쾌하고 고통스런 기억을 회상한다고 해도, 설문지에 그렇다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자였음을 기록을 통해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세부내역을 기록하는데 보다 더 긴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새로운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지가 가진 두 개의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발굴할 수 없다. 하지만, 설문도구가 최소한 피해경험을 회상하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조사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더 많은 피해사례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1〉 설문지별 피해경험 회상 후 미응답 인정 빈도

미응답 인정 빈도	과거 설문	현재 설문	차이
절도	13	2	6.5
강도	2	-	-
폭행	3	1	3.0
성추행	12	7	1.7
성폭행	3	-	-
사기	12	9	1.3
소계(n)	37(4,220)	18(4,218)	2.1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조사표의 말미에 응답자들에게 회상은 했으나 기록하지 않은 범죄피해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즉 “혹시 범죄피해를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답하지 않은 범죄가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답하지 않은 응답자가 있겠지만, 설문지 끝부분에 제시된 이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던진 문항이다. 실제로 이 문항에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설문지 응답자 중 미응답을 인정한 사람이 37명, 현재설문지 응답자 중에는 18명이나 된 것이다(표 4-3-1 참조).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설문지와 현재 설문지의 피해 상가능력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것이다. 과거 설문지를 사용한 응답자 중 37명이 피해를 경험했으나 답하지 않은 범주가 있다고 답한 반면, 현재 설문지를 이용한 응답자 중에서 18명만이 그렇다고 하여 2.1배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격차는 세부 범죄유형별로도 일관된 것이었다. 절도의 경우 과거 설문지에서 13건의 회상 후 미응답 사례가 발견된 반면, 현재 설문지에서는 단 2건으로 6.5배의 차이가 나타났고, 폭행에서는 3건대 1건으로 두 배의 차이가, 성추행과 성폭행에서도 15건과 7건으로 배 이상의 차이가, 사기에서는 12건대 9건으로 약 0.3배의 차이가, 강도의 경우 2건대 0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설문지에서 더 많은 피해응답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구 설문지가 현 설문지보다 피해상기 능력과 피해사례 발굴 능력 모두 뛰어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2〉 두 설문도구에 기록된 피해응답사례와 미응답 건수 비교

범죄종류	과거 설문지(n=4,220)			현재 설문지(n=4,218)		
	피해 응답 건수	회상 후 미응답 건수	미응답 비율 (%) ¹⁾	피해 응답건수	회상 후 미응답 건수	미응답 비율 (%) ¹⁾
절도	109	13	10.7	50	2	3.8
강도	13	2	13.3	7	-	-
폭행	12	3	20.0	1	1	50.0
성폭력	19	15	44.1	3	7	70.0

1) 미응답비율(%)=회상후 미응답건수/(피해응답건수+회상 후 미응답건수)*100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은 회상 후 미응답 사례가 성범죄와 폭력범죄에서 더 많았다는 것이다. 과거 설문지에서 발굴한 강간 및 성추행건수는 총 19건이었는데, 기억했음에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성추행 12건과 강간 3건 등 15건으로 피해자가 떠올린 사례의 44%나 되었다(표 4-3-2 참조). 현재 설문지의 경우 찾아낸 성폭행 범죄피해건수가 3건에 불과했는데, 기억 후 미응답한 성추행 사례가 7

건이나 되어, 회상한 사건의 70%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폭행의 경우에도 과거 설문지의 경우 12건의 피해응답이 있었지만, 3건의 미응답 건수가 있어 미응답 비율은 20%에 이르렀고, 현재 설문지의 경우 1건의 피해응답과 1건의 미응답 건수로 미응답 비율이 50%나 되었다.

반면 재산범죄의 경우는 달랐다. 절도의 경우 과거 설문지에 기록된 피해사례가 자동차부품절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를 합해 109건인데 비해, 절도의 미응답 사례가 10%를 조금 넘는 13건에 불과했고, 현재 설문지에서도 기록된 사례가 50건인데 비해 미응답 사례는 2건으로 아주 일부의 경우에만 피해를 회상한 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두 설문도구 모두 성범죄와 폭행 피해사례를 기억하게 하고도 기록하게 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설문도구는 응답 사례 자체가 작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응답자들이 피해경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과 기록하도록 이끌어내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응답자의 반응 및 인식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2006년 이전의 설문지와 2012년 현재의 설문지 자체에 대한 응답자들의 주관적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이 답한 피해조사 결과가 설문지 때문이라면 설문지에 대한 그들의 전반적 느낌과 구체적인 차이점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조사표의 말미에 응답자들에게 답변의 소요시간, 전반적 응답의 난이도, 구조의 복잡성, 이해의 난이도, 응답의 편리성, 회상의 편의성, 시간적 불편함, 감정적 고통, 포기 의사, 설문에 대한 믿음도 등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답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등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4-3-3〉 설문지별 응답자들의 주관적 반응 비교

설문에 대한 느낌(n)	과거 설문 ¹⁾ (4,220)	현재 설문 1)(4,218)	차이 (과거 값-현재값)
전반적으로 응답하는데 어려웠다	4.0	4.0	-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였다	4.0	4.0	-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4.1	4.0	0.1
응답에 편리하였다	3.0	3.0	-
피해경험 회상에 도움이 되었다	3.2	3.2	-
길어서 짜증이 났다	3.9	3.9	-
경험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다	4.1	4.0	0.1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	3.9	3.9	-
설문의도가 의심스러웠다	3.9	3.9	-
답변 소요시간(분)	19.8	19.1	0.7

1)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었다, 4=그렇지 않았다, 5=전혀 그렇지 않았다.
단, 답변소요시간은 실제 분 단위로 측정된 소요시간.

두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반응은 모든 면에서 매우 비슷하였다(표 4-3-3 참조). 우선 답변소요시간이 과거 설문 19.8분과 현재설문 19.1분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두 설문도구 공히 전반적으로 응답하는데 어렵지 않았고(구 설문 4.0, 현 설문 4.0),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가 아니었으며(구 설문 4.0, 현 설문 4.0),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답했다(구 설문 4.1, 현 설문 4.0). 그러나 응답에 편리하였다는 진술에 모두 보통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구 설문 3.0, 현 설문 3.0). 피해경험 회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보통이하라고 답했다(구 설문 3.2, 현 설문 3.2). 즉, 응답자들은 두 설문이 모두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응답의 편리성이나 피해 회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응답자들이 두 설문도구로 인해 느끼는 감정적 반응 역시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길어서 짜증이 났다는 진술에 대해 공히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고(구 설문 3.9, 현 설문 3.9), 경험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구 설문 4.1, 현 설문 4.0). 또한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구 설문 3.9, 현 설문 3.9), 설문의도가 의심스러웠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구 설문 3.9, 현 설문 3.9). 즉, 두 설문으로 인해 응답자들은 피해조사 때문에 짜증이 났거나, 크게 기분이 나빠졌거나,

설문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았으며,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반응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조사도구를 개편하면서 연구자들은 새 조사도구가 더 길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응답하기 힘들 것이며 소요시간도 길어지겠지만, 피해회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2006년과 2012년에 사용한 두 설문도구에 대해 모든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3. 조사원이 관찰한 응답자의 반응

설문도구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살펴봤지만, 그 결과를 제3자의 입장에서 재확인하면 보다 더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지의 말미에 조사원이 관찰한 응답자들의 조사도구에 대한 반응을 묻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4>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4-3-4> 설문지별 조사원들이 느낀 응답자들의 반응비교

조사자들이 느낀 응답자들의 반응(n) ¹⁾	과거 설문 ¹⁾ (4,220)	현재 설문 ¹⁾ (4,218)	차이(과거 값-현재값)
설문에 협조적이었다	2.1	2.2	0.1
전반적으로 응답하는데 어려웠다	4.0	4.0	-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라고 생각했다	3.8	3.9	0.1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4.1	4.1	-
응답에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3.1	3.1	-
피해경험 회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3.2	3.2	-
길어서 짜증이 났다	3.9	4.0	0.1
경험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다	4.1	4.1	-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 했다	3.9	3.9	-
설문의도가 의심스러워했다	3.9	3.9	-
답변 소요시간 (분)	20.7	20.9	0.2

1)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었다, 4=그렇지 않았다. 5=전혀 그렇지 않았다.

단, 답변소요시간은 실제 분 단위로 측정된 소요시간.

두 설문에 대해 조사원들이 관찰한 응답자들의 반응 또한 응답자들 스스로가 답

한 것과 거의 같았다. 우선 답변소요시간은 과거 설문 20.7분과 현재 설문 20.9분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들이 기록한 소요시간보다 공히 1분씩 길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조사원들이 사용한 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원들이 보기에도 응답자들은 두 설문도구 모두 전반적으로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구 설문 4.0, 현 설문 4.0),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라고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았으며(구 설문 3.8, 현 설문 3.9),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구 설문 4.1, 현 설문 4.1). 또한 조사원들이 본 바로는 응답자들이 설문지가 응답에 편리성도 보통이고(구 설문 3.1, 현 설문 3.1), 피해경험 회상에도 도움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구 설문 3.2, 현 설문 3.2). 조사원들이 관찰한 결과, 응답자들은 두 설문 모두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편이지만, 응답의 편리성이나 피해상기 능력은 보통으로 느낀다고 답한 것이다.

응답자들이 두 설문도구로 인해 느끼는 감정적 반응 역시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길어서 짜증이 났다는 진술에 대해 공히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고(구 설문 3.9, 현 설문 4.0), 경험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구 설문 4.1, 현 설문 4.1). 또한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구 설문 3.9, 현 설문 3.9), 설문의도가 의심스러웠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구 설문 3.9, 현 설문 3.9). 다시 말해 두 설문으로 인해 응답자들은 피해조사 때문에 짜증이 났거나, 크게 기분이 나빠졌거나, 설문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았으며,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제4절 요약

이 장은 2006년 이전 범죄피해조사의 도구로 사용했던 과거의 설문지와 2012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범죄피해율을 비교하고 이러한 형식의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와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통해 개편 전·후의 각 설문지의 피해포

작능력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기존에 범죄피해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논의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006년 이전의 설문도구에서 1.8배 더 높은 전체 범죄 피해율이 포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도구의 효과는 응답자의 나이, 성별, 학력, 소득, 지역 등 다른 변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지도 않았다. 이런 설문도구의 효과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보다는 폭행 및 상해나 성폭력과 같은 대인범죄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행 및 상해에서는 무려 8.2배의 차이가 났고, 성폭력범죄는 6.2배의 차이가 드러났으나, 절도와 강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노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조사표에 대한 반응이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범죄피해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수를 보면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데 성폭력이나 폭행과 같은 범죄유형에서 미응답 건수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조사표양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폭력이나 폭행과 같은 경우는 현재 설문지에서 미응답 건수가 더 높았고 재산범죄에서는 과거 설문지에게 미응답 건수가 더 높았다. 즉, 전반적으로 성폭력이나 폭행 피해사례의 경우는 범죄피해경험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내용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또한 앞서 현재 개편된 설문도구에서 범죄피해 사례 자체가 적었다.

한편, 2006년 사용했던 설문지와 2012년 사용했던 설문지에 대해 응답자가 보여준 태도나 행동을 보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같고, 난이도, 복잡성, 편리성에 대한 평가도 같았고, 피해회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거의 똑같았다. 응답자들 뿐 아니라 조사원들이 관찰한 바로 재확인해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그 동안 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범죄피해조사표는 피해회상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설문문항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대행과 실사 담당자 역시 설문지가 난해하고 힘들어 조사원들이 조사를 수행하기 매우 힘들어 한다는 등의 조사표로 인한 실시상의 어려움을 제기한 바 있다. 즉, 기존의 학계 내의 지적이나 실사 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보면 과거 설문지가 현재의 설문지보다 쉽고 단순하며 편리하지만, 피해회상의 측면에서는 못하다는 결과가 발견되어야 했는데 아무런 차이도 없었던 것이다. 만일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피로도가 거의 동일하다면 객관적으로 더 높은 피해사례를 포착하는 도구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발굴해내는 피해율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특정한 범죄에 초점을 맞춘 다른 피해조사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피해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내는 설문도구, 즉 과거의 설문도구가 범죄피해 경험 보고에 있어서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과거 설문지에서는 피해여부를 묻기 전에 여성응답자들에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성범죄피해사례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그 문항에는 다양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사례를 예시하고 있어, 응답자들이 그런 사례가 성폭력사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성범죄 피해에 좀 더 주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지난 1년간 경험한 범죄피해를 질문하면서, 그 피해내용으로 강도, 절도, 폭행, 강간, 성희롱 등 다양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런 질문 직후에 범죄피해 경험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범죄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 현재 설문에서는 생애 범죄피해나 주변사람들의 범죄피해를 묻는 문항이 없다. 따라서 어떤 범죄가 조사대상 범죄피해에 해당될지 아무런 사전정보를 얻지 못하는 셈이 된다. 또한 새로운 설문도구에서 특정한 범죄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 질문한다고 하지만, 개별 문항마다 절도, 폭력, 협박 등 다양한 범죄피해경험을 묻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 장의 결과만으로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평가나 개편 효과에 대해 단정 지을 수 는 없다. 왜냐하면 개편 작업의 취지 가운데 하나는 행위내용, 행위자, 행위방법 등 다양한 차원의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범죄피해경험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기억을 자극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응답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해당 예시의 내용을 모두 꼼꼼하게 읽어야 하지만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피해조사 개편 작업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 장의 조사결과는 물론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인지적 면접 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

조사응답과정에 대한 분석 : 인지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최 수 형

제5장

조사응답과정에 대한 분석 : 인지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지면접조사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남자 5명, 여자 5명이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2명, 20대 1명, 30대 3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가 2명이다. 즉, 연령대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가 남녀 각 1명씩, 20대가 남자 1명, 30대가 여자 2명 남자 1명, 40대기 남자 1명, 50대가 여자 1명, 60대가 남녀 각 1명씩이다. 학력은 10대를 제외하고는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 졸업자였으며 전업주부에서부터 학생, 서비스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등 다양한 직업분포를 보이고 있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설명했듯이 인지면접조사의 참여자 선발과정에서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자 가운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번 인지면접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나 성별 분포, 그리고 학력의 분포가 고르지는 않지만 이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격년으로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범죄피해조사는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모두를 조사하는 것으로 다양한 조사응답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조사의 참여자 집단의 대표성 보다는 다양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각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인지면접조사는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조사표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범죄피해경험 여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범죄피해 경험을 사전

에 확인 했을 경우 조사표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질문은 하지 않았다. 전체 참여자 10명 가운데 범죄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명이었다. 그리고 인지면접조사에서는 3가지 조사표가 사용되는데 개편 전 조사표 A와 개편 후 조사표 B를 배포함에 있어서 학습효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순서를 번갈아 가며 배포하였다.

〈표 5-1-1〉 인지면접 대상자 기본정보

사례	성별	연령대	직업	최종학력	범죄피해경험 여부 및 유형	개편 전(A)/개편 후(B) rotation
1	여	30대	전업주부	대졸	O(사기)	A→B
2	남	60대	무직	대학원졸	X	B→A
3	남	10대	고등학생	중졸	O(절도)	A→B
4	남	30대	서비스종사자	대졸	X	B→A
5	여	50대	전업주부	대졸	X	A→B
6	여	60대	전업주부	대졸	O(사기)	B→A
7	여	10대	고등학생	중졸	X	A→B
8	남	40대	보험설계사	대졸	O(폭행, 손괴)	B→A
9	남	20대	대학생	대재	X	A→B
10	여	30대	어린이집교사	대졸	O(폭행, 절도)	B→A

제2절 인지면접조사 결과

1. 개편 전·후 조사표 비교 평가

가. 응답의 편의성

인지면접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개편 후 조사표가 개편 전 조사표보다 범죄피해경험을 응답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면접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개편 전의 조사표에서는 응답자가 범죄피해라고 판단하는 기준 안에 있는 피해 내용만을 응답하기 쉬운데 개편 후 조사표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공함으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없이 예시

를 읽음으로써 해당 행위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응답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응답의 편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구조의 특성을 조사응답자 스스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1)

사회자 : A형과 B형 중에서 어떤 설문 유형이 응답하기 쉬웠어요?

응답자 : B형이요.

사회자 : 왜 B형이 쉬웠어요?

응답자 : B형은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서... B형에 보면 속임으로 인한 재산피해라고 하면 막연하게 속임? 사기?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 그런 것만 생각이 났는데, 여기 예시에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 상품이었다 라거나 그런 경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시가 있어서 편하게 표시를 할 수 있었어요.

사회자 : 또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B형이 예시가 있었고, 또 B형이 응답하기 더 쉬운 이유가?

응답자 : 그리고 도둑을 맞거나 그런 거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설문하기가 더 편했어요.

사회자 : 자, A형은 어떠셨어요?

응답자 : A형은 문제 자체 예시만 들어서 간단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거라서 그냥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설문이 그냥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피해 사실을 알기에는 B형이 좀 더 예시가 있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사례3)

응답자 : B형이요.

사회자 : 왜 B가 응답하기에 더 쉬웠어요?

응답자 :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시해 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회상도 더 잘 되고 해서 이게 더 나왔던 거 같아요. A형보다는.

(사례5)

응답자 : B형이 눈에 확 들어오고.

사회자 : 왜 눈에 확 들어왔죠?

응답자 : 일단 색이 들어가서 컬러도 더 그렇고. A형 방식의 이런 문답지는 많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문하는 거, 이런 종이로 문답하는 건 주변에서 많이 접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B형처럼 걸리로 하는 건 잘 접해 보지 않아서, 일단 예시가 있어서 B형이 이해가 더 빨랐어요. 상황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당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데에 B형이 이해가 더 빠를 거 같아요.

(사례6)

응답자 : b가 예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보면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죠.

(사례7)

응답자 : b형이요.

사회자 : 왜 b가 더 쉬웠어요?

응답자 : 구체적으로 예시가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여기에서 예시를 보고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더라 다시 기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사례9)

응답자 : A는 뭉뚱그려서 물어보는 거라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사람 기준에서는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일인가? 그러면서 더 생각을 하고 시간도 더 소요되는 거 같았어요. 그런데 B형은 확실히 어디에서 뭐 전화로 사기를 당했냐? 아니면 당할 뻔 한 것도 계속 A보다는 B가 더 강조된 거 같고. 그러니까 체크하기에는 B가 더 편했어요.

(사례10)

응답자 : B형이요.

사회자 : 이유는?

응답자 : 더 잘 생각났던 거 같은데.

사회자 : 왜 더 잘 생각이 났죠?

응답자 : 예시에 해당사항이 있어서.

사회자 : A를 볼 때는요?

응답자 : A도 그냥 있다 없다 이 정도의 차이인데... B를 처음 봤었을 때는 이게 맞냐? 그랬었는데 이 예시에 제가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아! 그 때 그게

그거였지! 그런 생각이 났고.

한편, 사례 2와 4, 8는 개편 전 조사표에 대한 응답이 더 쉬웠다고 답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통해 A형은 질문의 내용이 간결하여 응답하기 쉬웠고 B형은 많은 예시의 제시로 인해 다 읽고 응답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례 4에서 나타나듯이 B형 설문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라는 지시문의 반복과 이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 응답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사례2)

응답자 : A형이 더 나은 거 같아요.

사회자 : 왜 A형이 더 쉬웠어요?

응답자 : 특별히 이게 어느 게 더 쉽다 어렵다 그거보다도 그냥 체크하기가 더 나은 거 같아요.

(사례4)

응답자 : A요.

사회자 : 왜 A가 더 응답하기 쉬웠어요?

응답자 : 저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설문 내용들이 B는 너무 세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B형은 예시 자체가 너무 서술적이었고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A형은 물어보는 범위에서 있다 없다로 하는 거라서 오히려 빨리 체크하기에 더 쉬웠어요.

사회자 : A건 B건 혹시 경험이 있다에 체크된 게 있으셨어요?

응답자 : 아뇨. 그런데 B는 없었는데도 이 예시 자체 내용이 다 길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되는 게 있나? 하고 눈으로 봐 지는 게 있는데. A는 흐지부지하게 봤어요. B가 더 생각을 하게 하는데 내용 자체는 더 힘들었어요. (중략)

응답자 : B가 약간 헷갈렸어요.

사회자 : 어떤 부분이?

응답자 :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처음에 제가 놓쳐 버리고 가 버리면 틀어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사례8)

응답자 : 응답하기는 A가 더 생각을 안 하고 하게 되죠.

사회자 : 왜 A가 더 쉬웠죠?

응답자 : 제가 판단할 때는 B가 약간 질문 형태가 약간 상위 버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A타입은 자기가 했다 라는 걸 즉흥적으로 있다 없다를 체크하는 건데, B같은 경우는 지문이 많아서 그걸 골라내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사람이 여러 선택지가 있으면 갈등하고 주저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아서 A가 대답하기가 더 쉬웠던 거 같아요.

나.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하는데 용이성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하는데 개편 전 조사표인 A형과 개편 후 조사표인 B형 가운데 어떤 유형이 보다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B형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응답의 편의성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시의 내용으로 인하여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범죄피해의 형태가 아닌 예시들을 접하면서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조사표에 따른 조사응답자의 반응 결과와는 달리, 사례 9에서 나타나듯이 개편 후 조사표의 범죄피해 회상질문 형식이 응답자에게 복잡하고 읽어야 할 내용이 많아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1)

사회자 : A형과 B형 가운데에 범죄피해 경험을 기억해 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설문유형은 어느 쪽이셨어요?

응답자 : B형이요.

사회자 : 아까 제가 조금 전에는 응답하기 쉬운 유형을 여쭙 봤고, 지금은 범죄피해를 기억해 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설문유형을 여쭙 봤는데 왜 B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응답자 :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B형은 예시가 각 문항마다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자세히 나와 있고, 도둑 맞은 물건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장소가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는 도구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경험이 있어서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라면 강도? 문자마 폭력? 이런 거 이외에 가족, 친구, 애인 그런 사람은 솔직히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애인에게 당하는 성폭력이나 그런 거는 폭력이라고 생각 못 하는데 예시를 들어 봐서 그 문항에

대해서 예시가 잘 들어져 있어서 기억해 내는 데에 더 쉬웠던 거 같아요.

사회자 : 그래서 B형이 더 도움이 되셨고요?

응답자 : 네.

(사례2)

응답자 : B. 왜냐하면 예시가 있으니까 내가 해당되는 거를 딱딱 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죠.

(사례3)

사회자 : A형과 B형 중에 범죄피해 경험을 기억해 내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도움이 됐어요?

응답자 : 그것도 B형이요.

사회자 : 왜 도움이 됐어요?

응답자 : 아까 말한 것처럼 B형이 예시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24번도 보면 현금, 수표,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제가 자전거 안장을 잃어버릴 뻔 했거든요. 도둑 맞을 뻔 했는데 이 예시가 있어서 제가 기억이 더 잘 났던 거 같아요.

사회자 : 보기를 보니까 더 기억이 잘 났다 라는 말씀이시죠?

응답자 : 네.

(사례5)

응답자 : B요.

사회자 : 왜 B가 범죄피해 경험을 기억해 내는 데에 b형이 더 좋았어요?

응답자 : 예시를 들어 주니까. 그리고 글씨 크기도 B가 더 크고 그래서 더 나은 거 같아요.

사회자 : 글씨 크기도 영향이 있고요?

응답자 : 그렇죠.

(사례6)

응답자 : B.

사회자 : 왜 B인가요?

응답자 : A형은 아무래도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만, B는 예시가 있으니까 보면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사례8)

응답자 : B가 아무래도 더 기억해내기 좋죠. 왜냐하면 지문의 형태가 좀 더 구체적이고, A는 그냥 언뜻 생각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대충,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B타입은 지문이 많아서 자기의 오래된 기억들을 끌어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사례9)

응답자 : A형은 너무 형식상 있었냐 없었냐 묻는 거라서, A형은 1,2번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날 거 같은 형태였고, B형은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생각이 날 수도 있게 말이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질문이 너무 반복되는 거 같았어요

사회자 : 반복돼요? 보기가? 질문이?

응답자 : 만약에 도둑맞았냐? 도둑맞았냐? 도둑맞았냐? 이렇게 하는데, 전화로 위협을 당했냐 아니면 뭘로 위협을 당했냐 이것만 나뉘진 거잖아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자세히 하겠는데, 저는 당한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었다고 했는데 또 지금까지는 제외하고 또 지금까지는 제외하고 자꾸 이렇게 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뒤로 갈수록 하기가 귀찮아졌어요. 저는 전화로도 당한 적이 없고, 직접적으로도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 같으니까.

사회자 : 어쨌든 이런 항목들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사소한 거라도 범죄피해 경험에 있는 사람이라면 떠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설문이었어요?

응답자 : 네. B형이 A형보다 훨씬 그렇죠. (중략)

응답자 : 제가 이걸 보다가 아까 예시를 보다가 느꼈는데,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빼앗기고 뭐 훔쳐가고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한편, 사례 8의 경우 조사표 A형에서는 7번 문항 즉,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피해를 입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조사표 B형에서는 폭행관련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례 10의 경우는 조사표 B형에서 범죄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지만 조사표 A형에서는 동일한 범죄피해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사례 10의 경우 아래의 면접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조사표 B형에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는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지갑, 자전거 등의 물품 등을 나열하면서 경험 여부를 질문한 문항과 ‘칼이나 총, 돌이나

병을 던짐'등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폭행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한 항목에서 모두 '있었다'란 응답을 하였으나 조사표 A형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 피해 즉, 절도나 폭행의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사표에 따른 응답에 차이에 대해 사례 10의 면접내용에서 나타나듯이 개편 전 조사표의 경우 응답자가 생각하는 범죄피해 범주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사례 모두 면접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표 B형에 대한 응답을 먼저 하고 조사표 A형을 응답한 경우로 면접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 8의 경우는 B형 조사표가 도둑이나 폭행 등 다양한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질문 방식으로 “폭행”피해에 대한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10의 경우는 그 반대로 개편 후 조사표인 B형 질문의 예시를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범죄피해경험을 기억해 내었으며 조사표 A형 질문에서는 자신이 생각한 기준의 범죄피해 수준에서 없다는 판단으로 없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선 된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은 범죄피해 회상을 하는데 분명 도움은 되나 조사응답자가 과연 해당 질문과 예시를 읽었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조사응답자의 성실도만이 문제라기보다는 범죄피해경험을 회상시켜주는 예시 내용의 한계일 수 있다. 즉, 사례8이 경험한 폭행 피해가 발생한 장소나 방법에 대한 예시가 충분하지 못해 해당 범죄피해 경험이 떠올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8)

사회자 : A 설문지 7번에 있었다 라고 체크를 하셨잖아요. 이는 지인으로부터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왜 B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 B형에도 신체적인 폭행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응답자 : 있었나요? 잠깐만요.(중략)

응답자 : 27번에 도둑, 폭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자 : 아까는 왜 놓쳤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까 A를 할 때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B형 할 때는 그걸 왜 놓치셨어요?

응답자 : 일단 놓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겠고, 그리고 또 하다가 도둑하고 폭행 이게 약간 가려졌나? 도둑이라는 것에.

사회자 : 그게 너무 강했어요?

응답자 : 네.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자 : 그럴 수도 있으실 거 같네요. 자, 그 다음이 28번 보기 한 번 보실래요?

응답자 : 아! 잠깐만요. 28번에도 있네요.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성의 없게 대답한 거 같아요. (중략) 사실 B라는 거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준비 없이 무성의하게 체크한 게 있지 않나. 그런데 A로 가면서 계속 비슷한 게 나오니까 생각을 머리 속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례10)

사회자 : B의 28번에 체크를 하셨는데, 어쨌든 둘 같은 게 와서 내 신체를 가했잖아요. A의 문제7번 볼래요? 여기는 없었다 라고 하셨죠?

응답자 : 네.

사회자 : 어떠세요?

응답자 : 경고 조치를 하고 싶은 정도의 일이지. 앞에 거는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고. 뒤에 거는 그냥 담임 선생님이나...

사회자 : 피해경험이 있다 없다를 체크하는 건데.

응답자 : 이게 예시가 없었으면 이것도 없었다 로 했었을 텐데. 여기에 돌이나 병 그런 게 있으니까 아!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경고 조치할 정도였지. 이걸 사건으로 연결되는 정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사회자 : 그래서 A형에는 안 했어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B형을 먼저 설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B를 먼저 보고 설문을 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A를 할 때 떠 오르지는 않았어요? 5번 할 때?

응답자 : 웬지 이게 피해라고 하니까 되게 많은 피해를...

사회자 : 좀 더 큰 사건으로 생각이 드셔서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응답자 : 네.

사회자 : 24번에서 중복되는 거 빼고 나면 자전거 도둑이 있었어요. 그러면 A의 5번이 되겠네요. 물건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5번에도 체크를 안 하셨잖아요.

응답자 : 네. 내가 문제를 잘 못 읽었나? B에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맞는다는 게 제가 있었던 없었던 물건이 없어지면 도둑인 거잖아요. 그런데 5번에서는 귀하의 집 밖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자 :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가 있어서 체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응답자 : 네. 그러니까 5번하고 이거하고 느낌이... 도둑맞은 거는 제가 없었고. 자
전거 잃어 버릴 때 제가 없었잖아요. 밤에 일어났거든요.

사회자 : 내가 없었기 때문에 5번에 체크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응답자 : 네.

2.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응답오류의 가능성

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전 범죄피해여부에 관한 선별 질문방식은 범죄유형에 대해 직접적인 범죄피해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나 개편 후 조사표에서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단서를 제공하여 응답자가 사건에 대해 회상하고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김은경 외, 2013 : 24). 이에 이 항에서는 과연 실제 조사응답과정에서도 개편의 취지가 그대로 조사응답자에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조사응답 과정에서 개편된 조사표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응답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의 내용적인 문제나 형식적인 문제 뿐 아니라 조사기준 시점 차이로 인한 응답오류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사응답자의 조사응답 태도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항목에 따른 내용의 문제

1) 다양한 범죄피해유형을 포함한 범죄피해회상 자극질문

아래는 실제 개편 조사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경험에 대한 회상 자극 질문이다. 즉, 개편 후 설문도구에서는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방식이 장소와 방법, 행위자에 대한 예시 제시를 함과 동시에 절도나 폭행, 협박 등 다양한 범죄피해경험을 함께 질문함으로써 조사응답자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예시 5-2-1 참조). 아래의 사례8에서처럼 개편 전 조사표에서는 폭행 관련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개편 후 조사표에서는 관련 피해경험을 보고하지 못했던 것은 해당 질문에서 ‘폭행’이란 단어를 인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 있었다 건 ② 없었다

〈예시 5-2-1〉 장소 관련 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문항27번)

(사례8)

사회자 : A 설문지 7번에 있었다 라고 체크를 하셨잖아요. 이는 지인으로부터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왜 B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 B형에도 신체적인 폭행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응답자 : 있었나요? 잠깐만요. (중략)

응답자 : 27번에 도둑, 폭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자 : 아까는 왜 놓쳤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까 A를 할 때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B형 할 때는 그걸 왜 놓치셨어요?

응답자 : 일단 놓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겠고, 그리고 또 하 나가 도둑하고 폭행 이게 약간 가려졌나? 도둑이라는 것에.

2) 장소 및 방법 관련 피해경험 회상 자극질문의 제한적인 예시)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기억을 회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소와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제한적인 예시 내용으로 피해 경험을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례 8이 개편 후 조사표에서는 해당 경험에 대한 보고를 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범죄피해 유형을 포함한 질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설사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면접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폭력피해 경험이 일어난 장소인 ‘술집’이라는 예시가 빠져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제한적인 예시로 인해 응답요류가 생겨날 수 있겠다. 이처럼 장소 관련 예시를 제시함에 있어서 범죄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예시를 재배열할 필요성과 장소의 추가가 필요해 보인다.

(사례8)

사회자 : 어디에서?(중략)

응답자 : 술 먹는 자리.

사회자 : 술집?

응답자 : 네. 술집(중략)

응답자 : 그렇죠, 싸우는 거는 술집에서 많이 싸울 텐데, 제가 볼 때는 식당,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이걸 내가 일반적으로 사는 터전이나 나와 가까운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중략) 제가 보기에는 말을 예쁘게 말고 실질적으로 술집을 맨 앞으로 빼는 거죠. 가능성이 높은 거.

한편, 사례 3, 사례 7은 10대 청소년들로 학교폭력 경험을 보고할 만한 예시항목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현재 개편 후 조사표의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이 장소나 방법면에서 해당 예시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예시 5-2-1, 예시 5-2-2 참고). 사례 3의 경우는 장소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었고 사례 7은 방법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었다. 즉, 청소년이 범죄피해를 자주 당하는 곳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고 청소년이 당하는 범죄피해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 결과 지금까지 범죄피해조사에서 10대 청소년의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나 지금의 설문도구로는 청소년의 범죄피해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	① 칼, 총과 같은 무기 ②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③ 돌이나 병을 던짐 ④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⑥ 귀하 앞에서 위협함 ⑦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①	⇒ 있었다 건 ② 없었다

〈예시 5-2-2〉 방법 관련 피해 경험 회상 자극 질문(문항28번)

(사례3)

응답자 : 익숙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대상이면 PC방이나 그런 장소를 넣는 게 훨씬 나올 거 같아요.

사회자 : 또 장소 어디를 넣을까요?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면?

응답자 : 노래방.(중략)

응답자 :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보면 장난을 가장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넣는 게 이 질문에서 답을 하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자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응답자 : 장난을 가장한 폭행이라던가.

사회자 : 폭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4번에 보면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이런 것도 있고요.

응답자 : 장난을 해서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르거나 하면 이상할 거 같고, 막 툭툭 친다는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잘 못 하겠는데요.

사회자 :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난을 가장하여 툭툭 친다?

응답자 : 네. 그런 것들을 넣는 게... 이런 질문에서 있었다 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질문에 넣는 게 좋겠어요.

(사례7)

사회자 : 때려요?

응답자 : 싸대기 때리거나.

사회자 : 뺨을 때리거나?

응답자 : 네.(중략)

사회자 : 그럼 대부분은 언어 폭력?

응답자 : 네.

사회자 : 심부름 시키거나 그런 것들?

응답자 : 네.

사회자 : 지금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체크할 만한 것들은 없다는 거죠?

응답자 : 네. (중략)

사회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에 보면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뺨을 때리거나 그런 거는 이 항목에서 연상은 안 되나요?

응답자 : 뭔가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하는 것만 생각하면 생각이 날 거 같은데, 목을 조름 이 표현이 좀 세요. 그래서 그거밖에... 목을 조른 적은 없다 라는 생각밖에 안 나요.

한편, 사례 9에서는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 있는 경험에

있어 해당 방법에 대한 예시로 1번으로 ‘총’이란 용어가 나와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제시하는 물건 예시도 꼼꼼하게 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사응답과정은 결국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방법으로 제시한 예시 내용에 행동과 물건이 혼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혼란스러움도 예상할 수 있다.

(사례9)

사회자 : 28번은 방법이죠. 질문은 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입니다. 보기 1번 칼, 총과 같은 무기. 2번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3번 돌이나 병을 던짐. 4번 몸을 붙잡거나 쥐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5번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6번 귀하 앞에서 위협함. 7번 그 외에 다른 폭행 위협. 어떠셨어요?

응답자 : 다 가능할 거 같기는 한데... 평소에 그렇게 잘 일어날 거 같지 않아서 그냥 그건 신경 안 쓰고 넘어갔거든요.

사회자 : 보기를 읽어 보기는 했어요?

응답자 : 네.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은 당연히 소지가 불가능하잖아요.

사회자 : 예를 들어 장난감 총.

응답자 : 그러면 장난감 총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해 주던가.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총은 진짜 총을 말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서 생 각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못 갖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쓰냐?

3) 성폭력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 내용

『범죄피해조사 2012』(2013 : 24))은 범죄피해조사의 가장 핵심인 ‘범죄피해경험 회상자극 질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사자 뿐 아니라 응답자 모두 범죄피해선별 질문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성폭력범죄피해 경험을 선별하기 위한 질문을 일반 폭력행위의 일부로 포함시켜 성폭력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 응답거부감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사건 피해와 같은 가벼운 성폭력 피해인 경우에는 뒤이은 선별 질문을 통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김은경 외, 2013 : 28). 아래의 사례 4에서 나타나듯이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폭력을 수반한 성폭력피해를 폭력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어색함을 보기도

했지만(예시 5-2-2 참조) 사례 4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사응답자는 일반 폭행 행위 안에 성폭력을 포함한 것에 대한 낯설음은 없었다.

(사례4)

사회자 : 그래서 제가 28번 질문하기 전에 예시 중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게 있는지 여쭙 봤었는데 그 때 5번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응답자 : 네. 지금 다시 보니까 5번이 어울리지 않네요.

사회자 : 그럼 빼요?

응답자 : 빼는 게 나올 거 같아요. 차라리. 이게 있으면 오히려 헛갈릴 거 같아요. 빼고 아예 30번에서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실제 조사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다른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 중 하나로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에서는 조사응답자에게 “만약에 당신이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 했다면 몇 번 문항에 응답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응답자가 과연 일반 폭력행위 방법에 포함된 성추행 관련 예시를 인지하고 있을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면접 참여자 대부분이 성적 접촉 경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문항 30번’(예시 5-2-3 참조) 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성관련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거부감 관련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30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시	① 낯선 사람 ② 조금 아는 사람 ③ 잘 아는 사람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예시 5-2-3〉 성추행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문항30번)

(사례6)

사회자 : 자, 다른 예시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것도 가정을 해 봅시다. 선생님께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 했다 라고 하면 몇 번 항목에 있었다 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응답자 : 30번이요.

사회자 : 28번 보기 한 번 보실래요? 예시.

응답자 : 이것도 해당은 되겠네요.

사회자 :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왜 30번을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응답자 : 앞에 이렇게 예시된 게 아무래도 핵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중점이 되는 거 같네.

(사례7)

사회자 :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줄게요.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 했다 라고 하면 몇 번 항목에 있었다 라고 응답하시겠어요? 몇 번에 응답을 하실 거 같은지?

응답자 : 여기 뎀 마지막이요.

사회자 : 28번에 예시 한 번 볼래요? 거기 뭐 있어요?

응답자 : 성추행이요.

사회자 : 그런데 왜 28번에는 지나쳐지고 30번에 체크를 할 거 같았어요?

(사례8)

사회자 : 선생님께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 했다 라고 하면 몇 번 항목에 있었다 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응답자 : 30번.

사회자 : 28번 보기를 봐 주실래요?

응답자 : 5번인데.

사회자 : 그런데 왜 30번으로 바로 갔을까요?

응답자 : 성폭행과 폭행을 구별해서 본 거 같아요.

사회자 : 그러면 28번의 5번 보기가 부적절하게 들어있는 건가요?

응답자 :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만든 분은 어휘 하나라도 꼼꼼하게 골랐겠지만 이걸 읽는 사람은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80점 90점 100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폭행이라고 하니까 성폭행하고 연계를 안 하는 거죠. 예시가 잘 못 된 게 아니라.

(사례9)

응답자 : 30번 하나만 할 거 같아요.

사회자 : 왜 30번에 체크를 할 거 같아요?

응답자 : 원치 않는 접촉 이런 거랑 밖에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하면 2번과 3번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럴 거 같아요.

사회자 : 28번 보기를 보실래요?

응답자 : 아! 5번이요?

(사례10)

응답자 : 30번이요.

사회자 : 왜 30번에 하실 거 같으세요?

응답자 : 다른 거는 절도, 폭행, 뭐 그런 건데, 성폭행은 스킨십 위주 그런 거여서.

사회자 : 28번에 보기 5번 보실래요? 거기 뭐가 있어요?

응답자 :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회자 : 왜 28번에는 안 하고 30번으로 갔을까요?

응답자 : 웬지 28번은... 이게 지하철 이라고 그래서.

사회자 : 그러면 28번은?

응답자 : 아까 제가 경험했다고 한 거, 따라와서 한 거 같은 그런 거.

사회자 : 30번에도 지하철인지 그런 건지는 사실 없었거든요.

응답자 : 그런데 이게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을 잡아서 성폭행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성추행 같은 그런 거고요. 28번은 웬지... 이것도 범죄이긴 한데...

사회자 : 이걸 좀 가벼운 거?

응답자 : 네.

사회자 : 28번에 5번은 더 강도가 세 보여요?

응답자 : 네. 강도가 높다고 해야 하나? 의도나 그런 게.

사회자 : 왜 그랬을까요?

응답자 : 이게 지하철이라는 말이 이 사람이 성추행을 하는 게 나를 타겟으로 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사회자 : 그런데 28번에 5번은 내가 타겟이 된 거예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가 궁금해요.

응답자 : 장소가 지하철 이라고 하니까 폭행이나 위협, 협박 그런 거라고 하니까... 질문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 위협, 협박 이런 걸 말하니까 이걸 어떤 그

런 큰 사건처럼 여겨지고, 30번은 가벼운 성추행 정도로 여겨져요. 직장
에서 있는 거나 직장에서 회식하다가 뭐 그런 느낌.

한편, 아래 사례 3에서는 성폭력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문항 30번의 지시 문구
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즉,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
렵습니다.”라는 문구와 해당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VS) 조사표의 해당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함에 따라 조사
응답자의 입장에서 조사 문구 내용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을 뿐 아니라 실제 성적
접촉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해당 문구로 인해 응답을 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해 할 가능성이 있다.¹²⁾

(사례3)

응답자 : 그런데 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거를 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있었다 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다
시 한 번 생각해서 없었다 라고 체크할 수도 있고. 이런 접촉은 성폭행,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놓고 이렇게 다시 성적인 접촉을 당
했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4) 비일상적인 용어 사용

해당문항에 따라 비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사응답자의 입장에서 조사
응답을 할 때 효율성이나 수월성 뿐 아니라 응답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에 조사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일상적인 용어를 해당 항목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
겠다.

① 성적인 접촉 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

성적 접촉 관련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해당 예시는 성적 접촉을 했던
사람의 유형을 제시하는 형태이다(예시 5-2-3 참조). 사례 1,3,5는 예시에서 제시하

12) 실제 2013년도 NCVS 조사표에 “Incidents involving forced or unwanted sexual acts are often difficult to talk about”이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http://www.bjs.gov/content/pub/pdf/ncvs1_2012.pdf).

는 용어의 낯설음을 이야기해주었다. 즉, 개편 후 조사표에서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시로 ① 낯선 사람 ② 조금 아는 사람 ③ 잘 아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보다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문항을 읽어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읽었다고 한다. 물론, 일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사응답오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응답의 수월성을 위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질문의 목적은 모르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과 잘 아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누군가에게 당한 피해인지를 응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 부터의 원치 않는 성적 접촉도 범죄피해 경험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질문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례1)

응답자 : 모르는 사람도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사회자 : 낯선 사람으로는 안 될까요?

응답자 : 아! 낯선 사람!

사회자 : 낯선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중복으로 적어 드릴까요?

응답자 : 낯선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쉬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에 알고, 잘 알고, 모르고, 그렇게요.

(사례3)

응답자 :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사회자 : 더 익숙한 말은 낯선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례5)

응답자 : 아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②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관련 문항

범죄피해조사표에는 범죄피해 경험과 내용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범죄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이론적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편 작업을 통해 이러한 변수의 측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지

면접도 함께 진행하였다. 아래의 경우는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관련 질문으로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물어보는 문항에서 ‘두렵다’라는 용어의 낯설음에 대한 내용이다. 사례 9처럼 ‘두렵다’라는 용어가 ‘무섭다’, ‘불안하다’에 비해 낯설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면접 참여자의 대부분은 ‘두렵다’라는 용어에 대한 어색함을 표현하였다. 즉, 일상적으로 ‘집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응답자가 문항 내용의 어색함을 가지고 온 경우이다. 피해자학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일종의 반응 현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의되어 사용되어 왔다(Ferraro, 1995; 최수형, 2009 : 341 재인용).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란 학문적 용어가 실제 조사표에서도 특정 상황이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할 때 ‘두렵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아래의 예시는 실제 조사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항 방식이다.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목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⑥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⑥	①	②	③	④	⑤

〈예시 5-2-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관련 문항(문항 5, 6번)

아래의 인지면접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두렵다’라는 용어 대신 ‘무섭다’나 ‘불안하다’ 등의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두렵다’라는 용어를 다

른 용어로 대체한다고 해도 해당 문항의 응답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조사표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1)

사회자 : 예를 들어 밤에 혼자 있을 때 5번에 1번 보기를 보면 밤에 나는 혼자 있을 때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응답자 : 무섭다 라고 얘기해요. 집에 있는데 두려워! 그런 것보다는 무섭다고 느끼죠.

사회자 : 그러면 6번은요?

응답자 : 범죄를 당하는 건 두려운 거지만, 집에 있거나 그럴 때는 무섭다.

(사례3)

사회자 : 5번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보통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라고 표현하나요?

응답자 : 무섭다가 나온 거 같아요.(중략)

사회자 : 혹시 무섭다 라고 바뀐다면 □□이의 답이 달라져요?

응답자 : 아뇨.

사회자 : 혹시 불안하다는 어떠세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안하다.

응답자 : 네. 불안하다도 괜찮을 거 같아요.

사회자 : 뭐가 제일 좋아요?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응답자 : 불안하다가 제일 나올 거 같아요.

사회자 : 왜?

응답자 : 누군가가 침입할까 봐 불안하다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거 같아요.

사회자 : 무섭다 보다 불안하다가 더 나아요?

응답자 : 네.

(사례4)

응답자 : 무섭다가 더 공감이 가요.

사회자 :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도 두렵다 보다 무섭다가 더 어울리세요?

응답자 : 네. 무섭다가 더.

사회자 : 왜 무섭다가 더 어울리죠?

응답자 : 보통 두려워! 그런 표현보다는 무서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사례5)

사회자 : 그러면 여기가 혹시 무섭다 라고 바뀌면 응답이 달라질까요?

응답자 : 무섭다 라는 말이 더 와 닿는 거 같아요.

사회자 : 그러니까, 여기가 두렵다가 아니라 무섭다로 단어가 달라지면, 혹시 점수가 달라지는지?

응답자 : 저는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무섭다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회자 : 지금 이 단어가 무섭다 라고 바뀐다면 이 점수가 바뀌는지?

응답자 : 아뇨.

(사례6)

사회자 : 낯선 곳에 가서 혼자 있게 될 때 두렵다 그렇게 하나요?

응답자 : 두렵다 라고 하죠. 저는 느낀 적도 있어요.

사회자 : 다른 표현이 떠 오른 적이 있나요?

응답자 : 무섭다.

사회자 : 그럼 무섭다가 더 쉬워요? 두렵다가 더 쉬워요?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떤 게 더 어울려요? 무섭다? 두렵다?

응답자 : 무섭다가 더 낫겠죠. 편안하게.

(사례7)

사회자 : 5번은 항목이 2개가 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골목 길을 걸을 때 두렵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공감이가는 단어인가요?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 두렵다 라는 단어를 쓰나요? 아니면 다른 단어를 쓰나요?

응답자 : 무섭다.

사회자 : 무섭다가 더 공감이가는 말이에요? 이 상황이라면?

응답자 : 네.

사회자 : 그러면 무섭다 라고 말이 바뀐다면 점수가 달라질까요?

응답자 : 저는 안 바뀔 거 같아요.

(사례8)

응답자 : 불안하다. 아까 5번도 불안하다로 말씀 드렸잖아요. 6번도 불안하다.

사회자 : 7번은 어떤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나요?

응답자 : 불안하다가 다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사례9)

사회자 :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5번 항목에 가장 공감
이 가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응답자 : 두렵다.

(사례10)

사회자 : 그럼 제가 3개의 단어를 제시했죠?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세 중에서
는 문제 5번 보기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응답자 : 불안하다.

사회자 : 왜 불안하다?

응답자 : 그냥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일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없을 거 같기도 하고.

사회자 : 불안하다가 제일 적절할 거 같아요? 그럼 불안하다가 되면 점수가 달라질
까요?

응답자 : 아뇨. 비슷할 거 같아요.

③ 배경 문항

기초조사표의 배경문항으로 “가구원 가운데 현재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
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혼란스러움이 나
타났다.

(사례4)

사회자 :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있으셨어요?

응답자 : 19번이요.

사회자 : 이거 조금 생각하셨어요?

응답자 : 네. 가구원 집에서 누가 집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 물어볼
맥락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어서 생각을 더 해 봤죠. 그런데
없어서.

사회자 : 이해는 되세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이게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영업사원이 있느냐? 그
런 질문으로 이해하셨어요?

응답자 : 아뇨. 집에서 장사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뭐 장사를 하거나.

사회자 : 네. 그런 의미로 이해는 되셨어요?

응답자 : 네. 그런데 처음에 생각난 게 응? 그런 생각에 잠깐 헛갈렸어요.

사회자 : 어떤 부분?

응답자 : 집에서 장사를 하는 건지? 집에 영업사원이 있냐는 건지?

(사례8)

응답자 :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답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영업 이라는 말이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외에도 최종학력에 대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10대 청소년인 경우로 제한적인 의견으로 보이며 소득에 대한 기입방식에 있어서 응답오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가구’라는 용어에 대한 어색함으로 해당 용어를 ‘가족구성원 전체’와 같은 일상용어로의 수정이 개선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사항목에 따른 형식의 문제

개편 후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은 응답자로 하여금 범죄피해 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적인 범죄유형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행위자, 행위방법, 장소 등을 예시로 제시하는 형태이다. 앞서 면접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예시 내용이 범죄피해 경험을 응답하는데 편리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실제 조사응답자 가운데 예시를 통해 범죄피해 경험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조사응답자가 제시하는 예시를 모두 읽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하는 예시의 수나 편집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 등의 형식적인 측면의 문제로 실제로 조사응답자가 모든 예시의 내용을 꼼꼼히 읽는 경우가 드물었고 이는 결국 응답오류로 이어졌다.

1)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에서 예시의 수

해당 문항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5개 이상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문항의 경우는 조사응답자가 예시를 읽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실제

로 조사응답자가 모든 예시의 내용을 꼼꼼히 읽는 경우가 드물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개편 후 조사표의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 개선의 취지가 그대로 전달 될 가능성은 적다. 아래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조사응답자가 해당 문항의 예시를 읽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2)

사회자 : 23번은 지금 보기가 8개인데요. 그럼 보기 숫자로 몇 개가 적정한가요?

응답자 : 1,2,3번은 살려 두고, 4,5,6번을 하나로 묶어요.

사회자 : 그래서 6개로?

응답자 : 네.

사회자 : 8개는 보기가 많으세요?(중략)

응답자 : 5개까지는 괜찮은데 5지선다를 넘어가면 짜증이 나.

(사례4)

응답자 : 보기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4번부터 7번까지는 인터넷 상에서 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데,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자꾸 쪼개진 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사례8)

사회자 : 8개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개수로서 적정했는지? 너무 많았는지? 예시가 더 많아도 되겠는지?

응답자 :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사례9)

사회자 : 그러면 이 8개 항목은 하나씩 꼼꼼하게 읽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대충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대충 보셨나요?

응답자 : 저는 1,2번 정도까지는 자세히 읽었는데,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좀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보긴 했는데, 보고... 4,5,6,7번은 다 상점 상점 상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가짜 결제 사기 뭐 그런 거 관련이구나 하면서 뭉뚱그려서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사회자 : 왜 그랬을까?

응답자 : 반복되는 단어가 많아서 지루함을 느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

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중력이라는 게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선이 분산돼요. 점점. 그래서 포인트를... 만약에 어떤 중요한 어떤 사기에 대해서 당했는지 포인트를 줘서 진하게 글자를 표시해주셨더라면, 물론 상점 이건 반복되는 거라서 대충 넘어갔더라도 이게 포인트가 된지 글자로 진하게 딱 보였으면 좋을 거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사례 2, 사례 5, 사례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범죄피해경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시 자체를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2)

사회자 : 보기가 8개였는데, 하나하나 다 읽으셨어요?

응답자 : 네. 그러니까 해당이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죠. 있으면 늦게 되요. 있으면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회상해야 되고, 이게 언제쯤 그렇게 회상을 하는데, 없으면 그냥 일사천리지.

(사례5)

응답자 : 읽어 보긴 했는데... 꼼꼼하게 자세히까지는 아니어도 읽어 보기는 했는데... 제가 한 눈에 봐도 피해 당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읽어 보기는 했어요.

사회자 : 그런데 왜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지는 않았을까요?

응답자 : 한 눈에 봐도 저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읽기는 읽었거든요.

(사례10)

응답자 : 대충 읽었어요.

사회자 : 전체적으로?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응답자 : 그냥 우체국, 전화국, 은행 홈페이지, 쇼핑몰, 그냥 해당 사항 없는 거 같아서.

사회자 : 몇 번까지는 그래도 조금 유심히 읽었어요?

응답자 : 3번 정도까지는 잘 읽어 봤어요.

사회자 : 그런데 왜 4번부터는 집중력이 흐트러졌을까요?

응답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한 기억이 없어서요.

2)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에서 예시 제시방법의 문제

아래의 예시는 개편 조사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피

응답자 : 네.

사회자 : 이거 딱 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은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열을 할까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응답자 :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사례9)

사회자 : 1번 보니까 어때요? 보이스피싱과 연결이 되나요?

응답자 : 네. 연결돼서 아! 이게 보이스피싱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괄호로 적어 주면 더 확실할 거 같아요. 그리고 밑에 것도 사기 제 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더 해야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더 포인트를 딱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한편, 예시 문항 4번부터 7번까지에 대한 의견으로 조사응답자에게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한 상점이라는 범위에 대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물건 구입 등이 많아지면서 관심도 인터넷쇼핑몰에 있기도 하지만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서 오프라인 상점을 포함하고 있음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사례4)

응답자 : 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상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은 별로 눈에 안 띄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사회자 : 그러면 예를 들어 대형 할인마트, 동네 슈퍼마켓도 있고 그런 데서 샀을 때의 상황도 떠올랐나요?

응답자 : 전혀 안 떠올라요. 대부분 거기에서 반품을 하거나 물건을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처음에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나중에 물건이 오면 보게 되니까.

사회자 : 그럼 구분을 할까요? 온오프 라인을?

응답자 : 그렇죠. 크게 2개로 나눠서 해도 충분할 거 같아요.

(사례7)

응답자 : 그냥 온라인만 생각했어요.

사회자 : 왜 온라인만 생각했죠?

응답자 : 상점 하면 온라인부터 생각이 드는데, 옆에 괄호 치고 인터넷 쇼핑몰 이

라고 써 있으니까 인터넷쪽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10)

응답자 : 그냥 상점하고 인터넷 쇼핑몰 포함이라고 써 있었는데 대충 읽어서 그런가? 온라인 이미지가 더 강했어요.

또한, 아래 사례 8처럼 조사표 문항의 글자편집의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응답과정에서 혼란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이는 응답의 중요한 키워드를 진하게 표시해 둠으로써 조사응답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응답의 중요한 키워드를 응답자가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다.

(사례8)

사회자 : 진하게도 해 났는데?

응답자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다 진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3) 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배경문항 응답 형식의 문제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살펴볼 때 배우자나 자녀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냐는 질문이 있는데(예시 5-2-4참고) 만일,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응답자가 다소 헷갈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4)

사회자 : 선생님, 3번에는 아무 곳에도 체크를 안 하셨어요.

응답자 : 자녀가 없어서 체크를 안 했어요.

사회자 : 여기 해당사항 없음 이걸 안 보이셨어요?

응답자 : 네. 눈에 안 띄었어요.

사회자 : 거기에 체크하시면 되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눈에 안 띄었나요?

응답자 : 해당사항 없음 이걸 못 봤어요.

(사례10)

사회자 : 6번은 아까 자녀 없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눈에 안 보였나요?

응답자 : 해당사항 없음 이거 안 보였어요.

사회자 : 왜 안 보였을까요? 앞에 딱 있었는데.

응답자 : 그냥 처음에 없어서 당연히.

한편, 범죄피해조사의 기초조사표에는 동네와 이웃환경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고 있다. 즉, 동네의 주위환경이나 동네 사람, 동네 경찰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고 있는데(부록 1-1 해당문항 1번~3번 참고) 해당 질문에서 응답의 기준은 ‘작년 연말’이다. 아래는 이에 대한 면접내용으로 연말의 기준에 대한 생각과 미처 연말이라는 문구를 인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사례4)

사회자 : 1번 보시면 연말 기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응답자 : 한 해로 생각했어요.

사회자 : 연말인데?

응답자 : 네. 그냥 한 해로 봤어요.

사회자 : 그냥 연말이라 말할 때, 언제가 연말이다?

응답자 :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정도.

(사례7)

사회자 : 자, 연말 기준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는 어떻게 평가했죠? 1년 전체를 생각했어요? 연말을 생각했어요?

응답자 : 전체요.

사회자 : 이 말을 못 봤나요?

응답자 : 주의 깊게 안 본 거 같아요.

다. 동일 사건 중복 보고 방지 문구에 대한 문제

개편 된 범죄피해조사의 기초조사표에는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범죄피해 회상자극질문에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을 제외하고”라는 전제를 붙여 질문하여 동일사건이 중복 산정되지 않고 정확하게 피해사건 수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김은경 외, 2009 : 93; 김은경 외 2013 : 25 재인용).¹³⁾ 개편 후 1, 2차 조사에서는 “앞서 이미 말씀해주신 사건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2013년 3차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을 제외하고”로 단순하게 정리한 것으로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는 물론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에 모두 포함함으로써 반복적인 문구로 조사응답자의 주의를 끌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조사응답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혹은 해당 문구 내용에 대한 오해로 조사응답 오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래의 면접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사회자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을 제외하고”라는 해당 문구에 대한 취지와 하나의 사건에 2개 이상의 피해유형이 포함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가령, 사례 5에서 나타나듯이 ‘지금까지’는 의미가 설문지 앞 문항에서 언급한 사건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의미의 ‘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한편, 범죄피해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은 조사원 면접방식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가구원 전원 조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몇 번의 가구 방문을 통해서도 장기 부재 중인 가구원의 경우에는 면접조사가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조사응답자가 면접방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조사표를 조사응답자가 직접 보고 이해하고 응답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응답오류를 줄이기 위한 문구 수정 뿐 아니라 조사응답자의 이해를 돕고 응답오류를 줄이기 위해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문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1)

응답자 :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을 제외하고, 뭐 꼭 굳이 이 말을 넣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사회자 : 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응답자 :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다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제외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에는 도둑맞은 거고, 23번은 이거는 재산 피해를 당한 거고, 이거는 문을 열거나 몰래 들어오려고 했

13) 미국의 범죄피해조사인 NCVS 에서도 “other than any incidents already mentioned”란 표현을 사용함(http://www.bjs.gov/content/pub/pdf/ncvs1_2012.pdf).

다거나 그렇게 다 구분이 지어져 있어서 사건을 제외하고는 굳이... 솔직히 읽으면서 제외하고 라는 거를 별로 머리에 두고 읽지는 않았거든요.
 사회자 : 다시 한 번, 저희가 사실 의도한 바는 동일한 사건은 어떤 문항이건 한 번만 체크하라는 의미였어요.

응답자 : 음~

사회자 : 예를 들면 2013년 동안 뭔가 아무튼 어떤 거라도 해당이 되는 범죄유형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나는 딱 한 번 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라면 다른 문항에서는 없었다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였는데 그게 이 질문에서 전달이 잘 되셨나요?

응답자 : 네.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사례2)

사회자 : 제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댁에 도둑이 허락 없이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 갔다 라면 몇 번 문항에 있었다 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응답자 : 25번 문항이죠. 창문을 깨고 자물쇠를 부수고 그런 거니까.

사회자 : 그럼 24번에는 체크를 안 하실 거 같으세요?

응답자 : 아니, 조건을 준다면 해야죠. 그래서 내가 물어 봤잖아요. 오래 전에 있던 일도 되냐고? 그랬더니 작년 한 해 동안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해서...

사회자 :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응답자 : 그렇다 라면 25번에 있었다가 되는 거지.

사회자 : 24번에는 체크를 안 할 거 같으세요?

응답자 : 해야죠. 있었으니까.

사회자 : 24번에는 있었다 라고 체크하실 거고?

응답자 : 그렇죠.

사회자 : 25번에도 체크하실 거고?

응답자 : 그렇죠. 있었으니까.

사회자 : 또 다른 거 체크하실 거 있으세요?

응답자 : 26번도 해야죠. 유리창을 켜트니까 재산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사회자 : 또?

응답자 : 그럼 27번도 해야 되고.

사회자 : 사실 저희의 의도는 만약에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 가정을 했던 사건이 한 번만 있었다면 24번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응답자 : 아니, 24번도 하고 25번도 하죠.

사회자 : 그래야 된다?

응답자 : 네.

(사례3)

응답자 : 아뇨. 그렇게 할 거였으면 23번과 24번을 제외하고 라고 하는 게 나올 거 같아요.

사회자 : 딱 구체적으로?

응답자 : 네.

사회자 : 지금까지 라고 하지 말고?

응답자 : 네.

사회자 : 23번과 24번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하고. 이렇게?

응답자 : 네.

사회자 : 그러면 헛갈리지 않겠어요?

응답자 : 네.

(사례5)

응답자 : 지금 보니까 30번까지 다 있네요. 읽긴 읽었는데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회자 : 읽기는 읽었지만 이 지문을 염두에 두고 응답한 건 아니냐?

응답자 : 네.

사회자 : 25번부터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을 제외하고, 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 같으세요? 왜 이런 단서를 달았을까요? 저희가?

응답자 : 2013년 말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제외하고,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냥 지금까지 사건은 제외하고, 그러면 그걸 끝나고 이제 다른 이야기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말했듯이, 앞에서는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하거나 그런 의미였는데 뒤에서는 폭행이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폭행을 당해서 지갑을 뺏겼다 그랬으면 혼란스러웠을 거 같아요(중략) 이전까지 문항에서 응답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제 말은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돼서 지루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 앞에 문항에서 그러면 바로 앞에 이것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만약 건너건너 문제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진 좀 헛갈릴 거 같아요.

라. 조사기준 시점의 차이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조사대상시점과 조사를 시행한 시점과의 차이였다. 『범죄피해조사 2012』의 경우에도 조사대상시점은 2012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조사를 시행한 시점은 2013년 5월 29일이었다. 본 비교연구 역시 조사대상시점은 2013년도 한 해 동안이지만 조사를 시행한 시점은 2014년 8월로 그 차이가 상당하다. 즉, 이러한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해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함에 있어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음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김지선 외, 2011; 김은경 외 2013). 하지만 인지면접조사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 경험이 자주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례 3과 사례 7은 실제로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로 범죄피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례 10에서처럼 범죄피해 시기에 대해 대충 기억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즉,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 이후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응답하는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피해 경험 내용과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응답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를 경험한 조사응답자는 범죄피해 당시 시기와 발생 장소,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향후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 시기를 앞당겨 조사대상시점과 조사를 시행한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례1)

사회자 :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범죄피해 경험을 여쭙는 질문들이고, 지금은 2014년 8월이잖아요. 그러면 8개월보다도 그 이전의 기억을 회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응답자 : 네. 이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자 : 기억해 낼 거 같으세요?

응답자 : 네.

(사례2)

사회자 : 지금은 2014년 8월이고, 설문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대해서 범죄피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걸 기억해 내시거나 응답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응답자 : 뭐 1년 정도는...

사회자 : 8개월도 거의 1년이잖아요.

응답자 : 8개월이라고 해도 범죄는 당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회생이 되요.

(사례3)

응답자 : 그런데 범죄 같은 거는 늦게 해도 상관 없을 거 같아요.

사회자 : 왜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응답자 : 솔직히 범죄 같은 거는... 뭔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는 이상,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할 거 같아요.

(사례7)

사회자 :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쭙 볼게요. 어쨌든 1년 전의 일을 지금 8월 시점에서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응답을 해야 되죠.

응답자 : 네.

사회자 : 내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라면 떠 올리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응답자 : 네.

(사례10)

사회자 : 두 가지 질문에 응답을 해 주실 때 저희가 지난 한 해 기준으로 여쭙 봤잖아요. 그 때의 범죄피해 경험을 기억해 내는 데에 어렵지 않으셨어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그 의미는 지금이 벌써 8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끼를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상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응답자 : 대략 괜찮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게 1월달인지 2월달인지 그렇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대략 계절로.

3. 조사방법에 대한 선호도

지금의 범죄피해조사는 가구방문 가구원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범죄피해 경험이라는 특수한 내용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하고 가구원 전원 조사이기 때문에 가구원 모두를 만나 조사해야 하지만 장기부재중 이거나 면접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기기입식의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사 여건을 반영하여 온라인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사응답자의 입장에서 범죄피해조사의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결과 면접 참여자 대부분이 종이를 통한 자기기입식이 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사례1)

응답자 : 제가 직접 하는 게 좋아요.

사회자 :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왜 더 좋으세요?

응답자 : 보면서 하는 게 더 편해요. 불러서 해 주는 건 제가 보기를 잊어 버릴 수도 있고, 글로 하면 자꾸 제가 볼 수가 있잖아요. 생각할 시간도 더 많이 있고.

사회자 : 보기카드를 보여 드려도 직접 기입하는 게 좋으세요? 면접원이 하는 것보다?

응답자 : 네. 누군가가 물어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하는 게 더 좋아요.

사회자 : 응답자 스스로 응답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직접 하는 방법 중에 이런 종지로 읽고 직접 기입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 온라인으로 읽고 나서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응답자 : 종이요.

사회자 : 왜 종지로 하는 게 더 좋으세요?

응답자 : 온라인은 아무래도 수정하는 데에 조금...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사회자 : 내가 수정할 때?

응답자 : 네.

사회자 : 클릭으로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응답자 : 종이는 한 번 보면 아! 다시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화면으로 보는 건 머리 속에 인지가 종지로 보는 것보다는 덜한 거 같아요.

(사례2)

응답자 : 나는 스스로 기입하는 게 편해요.

사회자 : 왜 스스로 기입이 더 좋으세요?

응답자 : 왜냐하면 여러 사람하고는 할 때는 물론 설명을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불러줘 그리고 체크해. 그런데 그렇지만 개인별로 할 때는 하나하나 자기가 생각해 가면서 하나하나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야. 집중도가 더 높죠. 내가 기입하는 게.

사회자 : 응답자 스스로 응답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직접 하는 방법 중에 이런 종이로 읽고 직접 기입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 온라인으로 읽고 나서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응답자 : 온라인은 내가 돋보기를 하나 더 써야 돼. 같은 내용이면.

사회자 : 같은 내용이에요.

응답자 : 작게 나오면 눈이 반사되고 그래서 나는 돋보기를 하나 더 써야 돼.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종이가 친숙해요. 젊은 애들은 컴퓨터가 더 친숙하겠지.

(사례3)

응답자 : 내가 스스로 체크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사람이 보기를 불러줘서 고르는 거면 부담스러울 거 같아요. 일대일로 대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치면 성추행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자가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일대일로 대답해야 되는데 있었다 라고 대답하기가 민망한 대답이기도 하고.

사회자 :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응답자 스스로 응답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직접 하는 방법 중에 이런 종이로 읽고 직접 기입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 온라인으로 읽고 나서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응답자 : 그 때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사회자 : 장소가 중요할까요?

응답자 : 장소도 중요할 거 같아요.

사회자 : 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응답자 : 네. 만약에 대상자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걸로 해도 저걸로 해도 상관없어도, 저 혼자만 볼 수 있고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는 컴퓨터 모니터 옆에서 봐도 보이잖아요. 저는 종이가 더 나을 거 같아요.

사회자 : 일대일로 한다 라는 전제하에서 패드 종류도 있잖아요. 패드를 자고 가서 일대일로 보여주고 온라인 상에서 체크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이도 좋은지?

응답자 : 그 때는 그냥 편안하게 노트 패드로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사회자 : 여러 명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종이도 좋다는 말씀이세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만약에 일대일로 한다는 전제라면 종이도 좋고 아무거나 상관은 없나?

응답자 : 네.

(사례4)

응답자 : 직접 기입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사회자 : 왜 직접 기입하는 게 더 좋으세요?

응답자 : 예시 자체가 너무 길어서, 뒤로 갈수록 앞에서 한 것을 잊어버릴 거 같아요.

사회자 :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응답자 : 집중 안 하고 들으면 흘러서 들을 수도 있고.

사회자 : 직접 기입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와 온라인상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응답자 : 종이가 더 집중이 잘 될 거 같아요.

사회자 : 왜 종이가 더 집중이 잘 될 거 같으세요?

응답자 :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는 종이로 하는 게 더 꼼꼼하게 읽을 수 있을 거 같고, 컴퓨터는 마우스로 넘겨야 되는 거죠?

사회자 : 네. 마우스로 콕콕 찍어야 되요. 그렇다면?

응답자 : 네. 설문 자체는 종이로 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사회자 : 집중도가 더 좋고 또 종이로 했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응답자 : 바꿀 때도 종이가 더 낫고.

(사례5)

응답자 : 저는 직접 제가 보고 스스로 하는 게 좋아요.

사회자 : 왜 그게 더 좋으세요?

응답자 : 이야기 듣고 나서 기억을 잘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볼 수 있고 다시 한 번 생각도 할 수 있고.

사회자 : 응답자 스스로 응답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직접 하는 방법 중에 이런 종이로 읽고 직접 기입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 온라인으로 읽고 나서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응답자 : 종이도 좋죠.

사회자 : 왜 종이도 더 좋으세요?

응답자 :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일단 50대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빨리 하기가 힘들 거 같아요.

(사례7)

응답자 : 직접 뭔가 해결 방안이 있는 게 아니면 스스로 하는 게 좋아요.

사회자 : 왜 스스로 하는 게 좋아요?

응답자 : 그게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사회자 : 예를 들면 면접원이 나와서 물어보면 조금 숨기고 싶은 것도 있겠어요?

응답자 : 성별이 다르거나 해결해 주실 분 아니면...(중략)

응답자 : 종이요.

사회자 : 왜 종이도 좋아요?

응답자 : 컴퓨터는 더 건성으로 대답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뭔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넘어가려고 아무거나 체크하고 그럴 거 같아요.

(사례8)

응답자 : 정확도는 읽어 주는 게 훨씬 높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회자 : 그냥 심플하게 답하시면 되요. 내가 스스로 답하는 게 좋아요? 면접원이
불러 주고 면접원이 체크하는 게 좋아요?

응답자 : 제가 체크하는 게 좋죠.

사회자 : 이유는?

응답자 : 쉬우니까. 오류가 발생하든 정확도랑 상관 없이 내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사회자 : 그런데 왜 스스로 하는 게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응답자 : 스스로 하는 게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엄청나게 정확을 기해서 해야 하는 의무가 크게 안 느껴질 수 있
기 때문에 대충 읽고 얼른 체크할 수 있잖아요.

사회자 : 스스로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
설문지로 하는 방법과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중략).

응답자 : 종이.

사회자 : 종이도 더 좋은 이유는?

응답자 : 종이도 더 편할 거 같아요.

이 외에도 사례 9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을, 사례10은 넷북이나 아이패드를 통한 조사원면접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종이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식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면접 참여자가 경험한 응답방식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사례9)

응답자 : 만약에 도둑맞거나 그런 거는 말하겠는데, 만약에 제가 성추행을 당했거나 그런 경험이라면 직접 기입은 체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밝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면 있었다 그렇게 체크할 거 같은데, 그런데 얼굴 보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없었다 라고 얘기할 거 같아요.

사회자 : 종이에 기입하는 게 더 낫겠어요?

응답자 : 이게 솔직히 좀 더 귀찮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거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 어쨌든 자기 기입을 선택하겠다?(중략)

응답자 : 온라인이 좋아요.

사회자 : 왜?

응답자 : 체크하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사례10)

응답자 : 인터뷰 하는 방식이요.

사회자 : 면접원이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저희가 전화로 할 수도 있어요. 전화조사로 할 수도 있고, 종이를 갖고 나가서 아까처럼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넷북이나 아이패드로 온라인상으로 설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화조사, 종이 설문지, 넷북이나 아이패드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응답자 : 넷북이나 아이패드.

사회자 : 그게 왜 좋으세요?

응답자 : 그냥 편한 거 같은 느낌.

사회자 : 그건 면접원이 같이 보면서 같이 체크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넷북으로 하는 경우에 혼자 하실 거 같으세요?

응답자 : 넷북은 화면이 커서 한 문제씩 나오니까 더 집중해서 읽는 거 같은.

제3절 요약

본 장에서는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한 인지적 면접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편 전·후 조사표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평가를 보면 개편 후의 조사표가 개편 전의 조사표보다 응답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하는데 더 용이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 이유로는 해당 문항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예시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편 후의 조사표가 범죄피해경험을 기억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개편 전의 조사표에 대한 응답을 할 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범죄라는 개념 안에 포함하는 해당 경험만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고 개편 후 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은 미처 자신의 경험이 범죄피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까지 해당 문항의 예시로 나타나 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조사표 설계 과정에서 개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제 조사에 응답을 하는 주체인 조사응답자 역시 개편 후 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이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개편 후 조사표의 응답형식이 너무 서술적이어서 조사응답자가 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어려워하기도 했다.

두 번째,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의 내용적인 면에서 응답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경험 회상 질문의 개별 문항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경험을 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하는 예시의 내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임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피해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도둑과 폭행 등의 범죄피해경험을 다양한 장소를 통해 회상하도록 설계 하였으나 정작 조사응답자는 도둑과 폭행 등 다양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질문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장소 관련 예시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술집과 같은 유흥지역 관련 장소가 빠져있어 응답시 관련 경험 보고가 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방법을 통한 피해경험 회상 질문의 예시는 조사응답자가 청소년인 경우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경험이 별로 없었다. 즉,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거나 하는 등의 청소년이 당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의 예시가 빠져 있었다. 물론 모든 예시에는 그 외 다른 장소나 방법이라는 기타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사응답자의 대부분 기타 항목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개편 후 조사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풍부한 예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방법을 통한 피해경험 관련 예시 내용이 행동과 물건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혼란스러움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범죄피해조사 2012』에서는 폭력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인 경우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일반 폭력방법의 하나로 예시 내용에 포함하였다. 물론 이는 성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세밀한 묘사 등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응답자가 실제 조사응답과정에서 해당 예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실제 인지면접조사결과에서 조사응답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조사표에서 일상적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할 때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 및 응답의 형식적인 면에서 응답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나치게 많은 예시를 아무런 장치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하였거나 지나치게 많은 특정 문구를 진하게 표시하는 등의 예시를 제시하는 기술적인 부분의 미흡함으로 조사응답자가 예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힘들어할 뿐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살펴본 질문과 예시의 내용에서 나타난 구성적인 문제는 미국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하는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조사응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에서 동일사건 중복 보고 방지를 위한 문구와 조사기준 시점의 차이 역시 조사응답자의 응답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조사응답자의 대부분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을 제외하고’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범죄피해조사는 조사원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기입식을 통한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조사원의 도움 없이도 응답자가 조사표를 바로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조사표 설계의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시점의 차이는 개편 후 진행되었던 범죄피해조사의 한계로 항상 지적되었던 것으로 조사대상

시점과 조사를 시행한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회상오류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본 조사결과에서도 조사응답자 본인 스스로는 범죄피해경험이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지만 범죄피해를 경험한 정확한 시기에 대한 정보조차 보고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 조사 시점 차이로 인한 응답오류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앞의 4장에서 실시한 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 발굴 효과분석에서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표가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표에 비해 낮은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을 보여 조사표 개편작업이 자칫 무의미해보일 수 있었으나 인지면접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조사응답자 역시 개편 후 설문도구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도 개편 전 설문도구를 통해서 회상자극을 받지 못했지만 개편 후 설문도구를 통해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즉, 인지적 면접조사는 1명의 조사응답자가 2가지 유형의 설문도구를 모두 경험한 후 응답자 스스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개편 전·후 조사표에 대한 평가 내용이 보다 구체적일 수 있었다. 이처럼 조사응답자의 입장에서도 2009년에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범죄피해조사표는 범죄피해 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의 설문도구가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아직까지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과 해당 예시의 내용적인 부분이나 구성 및 형식적인 부분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었다. 즉, 앞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으로 개편된 범죄피해조사가 가지는 의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6장

자료수집방법의 효과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최 수 형

제6장

자료수집방법의 효과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개편 후 전국범죄피해조사표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조사를 통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과 온라인 조사방식을 통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간의 차이 뿐 아니라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조사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제1절 조사방법에 따른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비교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조사는 앞 3장의 연구방법에서 제시하였듯이 가구방문조사로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전원 조사 방식을 취하였다.¹⁴⁾ 즉, 온라인 조사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방문이 우선적으로 행해지고 난 뒤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서 온라인을 통한 조사응답 협조를 구했다. 다만,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온라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구는 가구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이에 서울·경기 지역의 8,0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을 통해 4,218명(52.3%), 온라인을 통해 3,847명(47.7%)을 조사 완료하였다.¹⁵⁾ 물론, 가구의 수

14)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장(3장)을 참고하기 바람.

15) 오프라인 조사방식의 경우 조사원 면접이 기본 원칙이었기는 하나 실제로 가구원 전원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장 등으로 장기 부재인 경우는 자기기입식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오프라인이기는 하지만 자기기입식의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한 418명이 포함됨. 한편, 오프라인조사에서 면접

는 오프라인조사와 온라인조사 모두 2,000가구이며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실제 조사대상 수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앞서 조사응답률(표 3-1-22 참조)에서처럼 온라인 조사형식에 대한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구가 대체되면서 실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가구원의 수 등과 같은 특성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6-1-1〉 조사방법(오프라인/온라인)별 조사대상 수

방식	사례수	%
오프라인조사 방식	4,218	52.3
온라인조사 방식	3,847	47.7
합계	8,065	100.0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이나 성별이나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주택유형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와 최종학력, 가구소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온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령대가 더 낮고 학력 수준과 가구소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대로 온라인 조사유형에서 응답율이 낮게 나타난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장에서는 표준화가중치¹⁶⁾를 적용하고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할 수 있는 로지스

과 자기기입방식을 병행한 경우는 오프라인 면접조사방식에 포함하였음. 본 조사에서 종이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식의 경우에도 기초조사표 작성 후 면접원이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건조사를 위해 재방문하여 사건조사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조사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진행될 뿐 아니라 이미 다른 가구원이 조사원면접에 의해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원을 통한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이 전달 될 수 있어 오프라인의 자기기입식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방식보다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특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온라인을 통한 조사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컴퓨터 화면 상으로 조사 응답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형식면에서도 종이표를 통한 조사와는 상이하며 본 조사의 경우에는 특히 범죄피해경험 횟수를 결정짓는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조사만의 로직을 통한 것으로 오프라인조사와는 조사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형식과 방식에서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

16) 원가중치의 경우는 모수추정을 위한 가중치로 모수치를 예측할 때 사용되는 것임. 한편, 표준화가중치는 조사된 표본의 분포를 실제 모집단 분포(예 : 조사 가구원수가 4,000명이면 실제 4,000명의 성*연령*지역별 인구분포를 반영)에 맞도록 조정한 수치임. 본 조사는 가구단위 조사이므로, 실제의 전체 인구수와 조사된 가구원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게 됨. 이를 실제 인구분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 수치가 표준화 가중치임. 예를 들어, 조사에서는 20대의 분포가 전체 인구의 20%인데, 실제 인구비율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라면, 20대의 수치가 실제 분포인 15%만 반영 되도록 0.75의 가중치를 맞게 됨. 표준화 가중치는 이러한 조사결과와 실제 분포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수치임. 다시 말해, 전체를 1로 보고,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둔 것임. 따라서, 전체 합은 1이 됨. 카이검증, t-검증 등 분석을 실시할 때는 원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표본의 수치가 너무 커져서 표준오차가 지나치게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표준화가중치를 사용하고자 함.

틱 방법 등을 사용하여 집단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차이에 따른 결과의 오류를 줄이고자 한다.

〈표 6-1-2〉 조사방법별 설문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구 분		조사방법유형				
		오프라인		온라인		(df) χ^2
		빈도	%	빈도	%	
지역	서울	1,915	(45.4)	1,675	(43.5)	(df=1)
	경기도	2,303	(54.6)	2,172	(56.5)	$\chi^2=2.819$
성별	남자	1,995	(47.3)	1,857	(48.3)	(df=1)
	여자	2,223	(52.7)	1,990	(51.7)	$\chi^2=0.765$
연령대	10대(만14세이상~19세이하)	274	(6.5)	281	(7.3)	(df=6) $\chi^2=104.164$ ***
	20대(만20세~29세)	571	(13.5)	618	(16.1)	
	30대(만30세~39세)	986	(23.4)	1,030	(26.8)	
	40대(만40세~49세)	1,023	(24.3)	989	(25.7)	
	50대(만50세~59세)	932	(22.1)	735	(19.1)	
	60대(만60세~69세)	311	(7.4)	155	(4.0)	
	70대 이상	121	(2.9)	39	(1.0)	
최종 학력	중졸이하	440	(10.4)	197	(5.1)	(df=3) $\chi^2=153.529$ ***
	고졸	1,777	(42.2)	1,365	(35.5)	
	대졸	1,970	(46.8)	2,238	(58.2)	
	대학원이상	26	(0.6)	47	(1.2)	
혼인 상태	미혼	966	(22.9)	904	(23.5)	(df=2) $\chi^2=1.879$
	현재 배우자 있음	2,973	(70.5)	2,718	(70.7)	
	사별이나 이혼	276	(6.5)	225	(5.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093	(49.7)	1,966	(51.2)	(df=3) $\chi^2=6.014$
	자영업자	630	(15.0)	578	(15.1)	
	무급가족종사자	65	(1.5)	39	(1.0)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1,423	(33.8)	1,254	(32.7)	
가구 소득 ¹⁷⁾	월 300만원 미만	638	32.0	520	26.0	(df=2) $\chi^2=87.197$ ***
	월 300만원 ~ 500만원 미만	827	41.5	1,118	55.9	
	월 500만원 이상	530	26.6	362	18.1	
주택 유형 ¹⁸⁾	단독주택	390	(19.5)	405	(20.3)	(df=3) $\chi^2=2.936$
	아파트	1,098	(54.9)	1,098	(54.9)	
	연립주택/다세대주택	502	(25.1)	493	(24.7)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10	(0.5)	4	(0.2)	

***p<.001

17) 가구수입의 경우는 가구에 대한 특성임.

18) 주택유형의 경우는 가구에 대한 특성임.

2.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가. 전체 범죄피해 보고율

먼저, 가구대상 범죄피해나 개인대상 범죄피해가 있는 피해자 수를 피해횟수에 따른 분포로 살펴보면 8,065명 가운데 7,880명은 범죄피해 경험이 없었고 185명(2.3%)이 범죄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범죄피해경험이 1건인 경우가 1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2건의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36명, 3건의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2명, 4건의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명이었다.

〈표 6-1-3〉 피해횟수별 피해자 수 분포

구 분	피해횟수별 피해자 수 분포	
	표본 분포	추정치(가구원 가중치)
무피해자	7,880명(97.7%)	38,199,307명(98.0%)
1건 피해자 ¹⁹⁾	146명(1.8%)	632,770명(1.6%)
2건 피해자	36명(0.5%)	152,025명(0.4%)
3건 피해자	2명(0.0%)	6,868명(0.0%)
4건 피해자	1명(0.0%)	3,850명(0.0%)
합계	8,065명(100.0%)	38,994,820명(100.0%)

조사방법에 따른 범죄피해 횟수별 피해자 수 분포를 비교해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범죄피해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7.7%이고 범죄피해가 1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0%, 2건 이상의 범죄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0.4%를 차지하였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작년 2013년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761명으로 전체의 97.8%, 1건의 범죄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2명으로 1.6%였고 2건 이상의 범죄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명으로 전체의 0.6%를 차지하였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조사방법에 따른 범죄피해 횟수별 피해자 수의 차이는 없었다.²⁰⁾

19) 범죄피해경험이 있음에도 사건조사표 응답을 거절한 경우 범죄피해 회상 선별 질문의 응답 결과를 통해 1건의 범죄피해자임을 확인하여 1건의 피해자수에 포함함.

20) 피해자 가운데는 사건조사표 응답을 거절한 11명이 포함되어 있음. 즉, 범죄유형 구분에서는 포함

〈표 6-1-4〉 조사방법에 따른 범죄피해 횟수별 피해자 수 차이

구 분		조사방법유형				합계	
		오프라인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건 수분포	무피해자	4,119	(97.7)	3,761	(97.8)	7,880	(97.7)
	1건 피해자	84	(2.0)	62	(1.6)	146	(1.8)
	2건 이상 피해자	15	(0.4)	24	(0.6)	39	(0.5)
	합계	4,218	(100.0)	3,847	(100.0)	8,065	(100.0)

(df=2) χ^2 = 4.600

한편, 오프라인방식을 조사원면접과 자기기입식으로 구분하여 피해건수별 피해자 수를 살펴보면 조사방법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의 자기기입방식을 취한 경우 범죄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자기기입식의 경우 범죄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02명(96.2%), 1건의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명(2.9%), 2건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1.0%)이다.

〈표 6-1-5〉 세부 조사방법에 따른 피해 횟수별 피해자 수 분포 비교

구 분		조사방법유형						합계	
		오프라인 면접		오프라인 자기기입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 건수 분포	무피해자	3,717	(97.8)	402	(96.2)	3,761	(97.8)	7,880	(97.7)
	1건 피해자	72	(1.9)	12	(2.9)	62	(1.6)	146	(1.8)
	2건 이상 피해자	11	(0.3)	4	(1.0)	24	(0.6)	39	(0.5)
	합계	3,800	100.0	418	100.0	3,847	100.0	8,065	100.0

(df=4) χ^2 = 10.155*

*p<.05

되지 않아 유형별 총 비율이 피해자 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음. 피해건수도 마찬가지로 11명이 응답 거부한 피해건수가 16건으로 이는 범죄유형별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건수를 의미하지는 않음. 범죄피해경험이 있음에도 사건조사표 응답을 거절한 건수는 오프라인 15건, 온라인조사의 경우는 1건이었음.

나. 개인대상 범죄피해

개인대상 범죄피해 분포를 보면 피해자가 144명으로 그 가운데 32명이 폭력범죄피해경험을 101명이 재산범죄피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 8,065명 가운데 개인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1.8%이며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0.4%,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1.3%를 차지하였다.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조사피해건수는 179건이며 폭력범죄피해가 53건, 재산범죄피해가 106건이었다.

〈표 6-1-6〉 개인대상 범죄피해 분포

구 분	개인 대상 범죄피해 총계	개인대상 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피해자수	144명(1.8%)	32명(0.4%)	101명(1.3%)
조사피해건수	179건(2.2%)	53건(0.7%)	106건(1.3%)
추정피해건수(가구원가중치)	767,928건(2.0%)	219,684건(0.6%)	467,931건(1.2%)

조사방법에 따른 개인대상 범죄피해 건수 차이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폭력범죄피해경험은 14건으로 전체의 20.6%, 재산범죄피해경험은 54건으로 79.4%를 차지하였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경험이 41.1%, 재산범죄피해경험이 58.9%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재산범죄피해경험율이 높기는 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폭력피해경험이 많다고 보고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1-7〉 조사방법에 의한 개인대상 범죄피해 건수 차이(표준화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 계	
		오프라인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피해유형	폭력범죄피해	14	(20.6)	30	(41.1)	44	(31.2)
	재산범죄피해	54	(79.4)	43	(58.9)	97	(68.8)
합 계		68	(100.0)	73	(100.0)	141	(100.0)

(df=1) χ^2 = 6.897 **
**p<.01

1) 개인대상 범죄피해 - 폭력범죄피해

개인대상 폭력범죄피해 분포를 살펴보면 성폭력이나, 강도, 폭행, 괴롭힘의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32명이었고 32명이 53건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개인대상 폭력범죄피해유형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피해자 수의 경우 성폭력은 9명(28.1%), 강도는 6명(18.8%), 폭행 11명(34.4%), 괴롭힘은 6명(18.8%)으로 폭행을 경험한 피해자수가 가장 많았다. 피해경험 건수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폭력범죄피해 유형의 비율(가구원가중치적용)을 보면 폭행이 35.9%, 성폭력 27.7%, 괴롭힘 22.5% 강도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8〉 개인대상 폭력범죄피해 분포

구 분	폭력피해범죄총계	개인대상 폭력범죄피해			
		성폭력	강도	폭행	괴롭힘
피해자수	32명 (100.0%)	9명 (28.1%)	6명 (18.8%)	11명 (34.4%)	6명 (18.8%)
조사피해건수	53건 (100.0%)	14건 (26.4%)	8건 (15.1%)	18건 (34.0%)	13건 (24.5%)
추정피해건수 (가구원가중치)	219,684건 (100.0%)	60,932건 (27.7%)	30,588 (13.9%)	78,873 (35.9%)	49,474 (22.5%)

조사방법에 의한 개인대상 폭력범죄피해 건수를 세부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강도(33.3%), 성폭력(26.7%)과 폭행(26.7%), 괴롭힘(13.3%)의 순이었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폭행(41.4%), 성폭력(27.6%)과 괴롭힘(27.6%), 강도(3.4%)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방법에 따른 폭력범죄피해의 세부유형별 피해건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오프라인 조사대상자 집단에서는 강도피해에 대한 보고율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조사대상자 집단에서는 폭행피해에 대한 보고율이 가장 높았다.

〈표 6-1-9〉 조사방법에 의한 개인대상 폭력범죄피해 건수 차이(표준화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 계	
		오프라인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폭력범죄피해 유형	성폭력	4	(26.7)	8	(27.6)	12	(27.3)
	강도	5	(33.3)	1	(3.4)	6	(13.6)
	폭행	4	(26.7)	12	(41.4)	16	(36.4)
	괴롭힘	2	(13.3)	8	(27.6)	10	(22.7)
합 계		15	(100.0)	29	(100.0)	44	(100.0)

(df=3) $\chi^2=7.950^*$
*p<.05

2) 개인대상 범죄피해 - 재산범죄피해

개인대상 재산범죄피해 건수를 보면 101명 가운데 절도가 53명(52.5%), 사기가 47명(46.5%), 손괴가 1명(1.0%)이었으며 전체 재산피해건수 106건 가운데 절도가 57건(53.8%), 47건(44.3%), 손괴 2건(1.9%)이다.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에서 역시 절도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보이고 있었다.

〈표 6-1-10〉 개인대상 재산범죄피해 건수

구 분	재산피해범죄총계	개인대상 재산범죄피해		
		절 도	사 기	손 괴
피해자수	101명(100.0%)	53명(52.5%)	47명(46.5%)	1명(1.0%)
조사피해건수	106건(100.0%)	57건(53.8%)	47건(44.3%)	2건(1.9%)
추정피해건수(가구원가중치)	467,931건	231,001건 (49.4%)	228,171 (48.8%)	8,760 (1.9%)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사방법에 따른 개인대상 재산범죄피해 건수를 비교해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절도의 피해보고율이 온라인에서는 사기의 피해보고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1-11〉 조사방법에 의한 개인대상 재산범죄피해 건수 차이(표준화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 계	
		오프라인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재산범죄피해경험	절 도	30	(54.5)	19	(44.2)	49	(50.0)
	사 기	25	(45.5)	22	(51.2)	47	(48.0)
	손 괴	-	-	2	(4.7)	2	(2.0)
합 계		55	(100.0)	43	(100.0)	98	(100.0)

(df=2) $\chi^2 = 3.240$

다.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피해 가구는 33가구로 그 가운데 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가 8가구, 주거침입절도나 강도, 손괴와 같은 주거침입관련 범죄피해가 있는 가구는 17가구, 단순주거침입의 피해가 있는 가구는 8가구로 주거침입절도나 손괴 등의 주거침입관련 가구대상 범죄피해가 가장 많았다.²¹⁾

〈표 6-1-12〉 가구대상 범죄피해 분포

구 분	가구대상 범죄피해 총계	가구대상 범죄피해		
		자동차(부품) 절도 및 손괴	주거침입관련	단순주거침입
피해가구수	33가구(100.0%)	8가구(24.2%)	17가구(51.5%)	8가구(24.2%)
조사피해건수	37건(100.0%)	9건(24.3%)	18건(48.6%)	10건(27.0%)
추정피해건수(가구가중치)	144,435건 (100.0%)	35,109건 (24.3%)	70,282건 (48.7%)	39,044건 (27.0%)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사방법에 의한 가구대상 범죄피해 건수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통계적 수준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의 경우 주거침입관련이 전체의 71.4%, 자동차(자동차부품) 절도나 손괴는 23.8%, 단순주거침입은 4.8%의 순이었고 온라인의 경우는 단순주거침입이 절반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가 전체의 27.8%, 주거침입관련

21) 주거침입관련 범죄피해유형에는 주거침입 절도(16가구, 16건)와 주거침입 강도(0가구, 0건), 주거침입 손괴(1가구, 2건)가 포함됨.

범죄피해건수가 22.2%로 나타나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경우 온라인조사를 통한 단순주거침입의 피해경험을 보고한 건수가 오프라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3〉 조사방법에 의한 가구대상 범죄피해 건수 차이(표준화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 계	
		오프라인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 유형	자동차(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	5	(23.8)	5	(27.8)	10	(25.6)
	주거침입관련	15	(71.4)	4	(22.2)	19	(48.7)
	단순주거침입	1	(4.8)	9	(50.0)	10	(25.6)
합 계		21	(100.0)	18	(100.0)	39	(100.0)

(df=2) $\chi^2=12.612^{**}$
 $^{**}p<.01$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서 조사방법별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나 학력, 소득의 차이가 나타나 조사방법별 범죄피해경험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범죄피해경험 보고에 미치는 조사방법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 경험 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모두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항에서는 자료수집방법의 차이가 범죄피해 경험 보고에 영향을 주는지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자료수집방법인 오프라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방식이면 1, 온라인을 통한 조사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통제변수는 응답자들의 연령과 성별,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특성(서울/경기)이다. 남자변수는 응답자의 성별이 남자일 경우 1로 여자일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고 서울여부는 응답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1로, 경기에서 거주하는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표 6-1-14〉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자료수집방법의 효과 분석)

변수 설명	평균	변수 값의 범위
현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	-0081	0-1
만 나이	-0.011	14-97
남자	-0.742	0-1
최종학력 ¹⁾	0.198	1-4
소득 ²⁾	4.4	1-9
서울여부	0.4	0-1

1) 최종학력변수는 1=중졸이하, 2=고졸, 3=대졸, 4=대학원이상

2) 소득변수는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미만, 3=200~300만원 미만, 4=300~400만원 미만, 5=400~500만원 미만, 6=500~600만원 미만, 7=600~700만원 미만, 8=700~1,000만원 미만, 9=1,000만원 이상

아래의 표는 자료수집방법의 차이가 가구 대상 범죄피해여부 응답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이다. 즉, 자료수집방법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대한 여부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가구 소득 수준, 거주지역이 서울인지에 대한 여부는 가구 대상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표 6-1-15〉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자특성이 가구 대상 범죄 피해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변 수	계수값	왈드 (Wald)	승산비 (OR)
현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	0.454	1.569	1.574
만 나이	-0.024	2.008	0.976
남자	0.368	0.893	1.445
학력	0.150	0.180	1.161
소득	-.097	0.569	0.907
서울	0.107	0.092	1.112
상수	-4.254	10.701	-
-2 log likelihood	376.816		
Nagelkerke R2	0.015		
n	8,065		

다음으로 자료수집방법의 차이가 개인 대상 범죄피해여부 응답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나 소득, 연령, 거주지역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을 때 조사응답자가 남자라면 개인 대상 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할 가능성이 0.4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료수집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인 대상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보고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범죄피해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 대상 범죄피해유형과 개인 대상 범죄피해유형의 세부 범죄피해 유형을 구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1-16〉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자특성이 개인 대상 범죄 피해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변 수	계수값	왈드 (Wald)	승산비 (OR)
현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	-0.081	0.140	0.922
만 나이	-0.011	1.181	0.989
남자	-0.742**	11.495	0.476
학력	0.198	0.854	1.219
소득	-0.063	0.666	0.939
서울	0.263	1.525	1.301
상수	-3.186	15.665	-
-2 log likelihood	855.398		
Nagelkerke R2	0.026		
n	8,065		

**p<.01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자 특성이 개별 범죄피해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즉, 가구대상 범죄 가운데 자동차 관련 범죄피해의 경우는 가구소득만이 영향을 주었고 주거침입관련 범죄피해의 경우는 거주지역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거주지역이 모두 동일할 때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동차 관련 범죄피해를 보고할 가능성이 2.2배 높아지고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이 모두 동일할 때 응답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관련 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1.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대상 범죄피해 보고 가능성이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

〈표 6-1-17〉 자료수집방법과 응답자특성이 개별 범죄피해경험 보고 여부에 주는 영향

변 수	가구대상 범죄		개인대상 범죄	
	자동차 관련 (승산비)	주거침입관련 (승산비)	재산범죄 (승산비)	폭력범죄 (승산비)
현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	0.649	1.579	0.967	0.275*
만 나이	0.968	0.9866	0.988	0.971
남자	0.879	1.258	0.462**	0.872
학력	0.641	2.136	1.147	0.843
소득	2.299**	0.611	1.126	0.621*
서울	0.483	1.352**	1.531	0.987
상수	.000	.001	0.012	0.255
-2 log likelihood	96.233	307.394	583.495	222.043
Nagelkerke R2	0.168	0.052	0.025	0.081
n	8,065			

*p<.05, **p<.01

한편, 개인 대상 범죄를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표 6-1-17 참조) 재산범죄피해 경험 보고여부에 있어서는 성별만이, 폭력범죄피해 경험 보고 여부에 있어서는 자료수집방법과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조사 응답자가 남자면 여자보다 재산범죄피해를 보고할 확률이 0.4배 떨어지고 폭력범죄의 경우는 현 자료수집방법인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피해 경험 보고율은 온라인보다 0.2배 감소하고 월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0.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도나 폭행, 성폭력과 같은 폭력범죄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이나 성별, 학력, 거주지역과 같은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범죄피해 보고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제2절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 비교

1. 응답자의 반응 및 인식

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반응과 인식을 살펴본 결과 ‘설문지의 구조상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편리하였다’와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 내용이 범죄피

해경험을 회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온라인을 통한 조사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 더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²²⁾ 한편, 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 볼 수 있는 문항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설문지가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였다'와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방식에서 조사대상자의 조사표에 대한 이해와 성실한 응답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조사의 경우 제한된 컴퓨터 화면을 통한 조사로 조사대상자가 혼자 이해하고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문구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문에 응답함에 있어서 조사응답자로서 답답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6-2-1〉 조사유형에 따른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의 차이(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t 값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긍정	설문지의 구조상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편리하였다.	2.99 (n=4,218)	1.084	3.25 (n=3,847)	1.136	-10.701***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 내용이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3.17 (n=4,218)	1.079	3.49 (n=3,847)	1.035	-13.619***
부정	전반적으로 설문 응답하는데 어려웠다.	3.98 (n=4,218)	0.740	3.95 (n=3,847)	0.830	1.705
	설문지가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였다.	4.02 (n=4,218)	0.753	3.95 (n=3,847)	0.880	3.728***
	설문이 길어서 짜증이 났다.	3.89 (n=4,218)	0.814	3.85 (n=3,847)	0.896	2.157*
	피해경험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다.	4.04 (n=4,218)	0.757	4.02 (n=3,847)	0.878	0.973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4.04 (n=4,218)	0.729	4.01 (n=3,847)	0.834	1.663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	3.95 (n=4,218)	0.757	3.90 (n=3,847)	0.863	2.195*
	설문의도가 의심스러웠다.	3.93 (n=4,218)	0.738	3.91 (n=3,847)	0.802	1.000

*p<.05, ***p<.001

22) 응답척도는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까지 임.

한편, 범죄피해경험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 따라 조사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범죄피해경험이 없는 경우 ‘설문지의 구조상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편리하였다’와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 내용이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온라인에서 더 높았고 ‘설문지가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였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오프라인에서 더 높았다.

〈표 6-2-2〉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범죄피해경험이 없는 경우 : 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t 값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평균 (사례수)	표준편 차	
긍정	설문지의 구조상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편리하였다.	2.99 (n=4,128)	1.085	3.25 (n=3,772)	1.138	-10.502***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 내용이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3.17 (n=4,128)	1.080	3.49 (n=3,772)	1.035	-13.509***
부정	전반적으로 설문 응답하는데 어려웠다.	3.98 (n=4,128)	0.740	3.96 (n=3,772)	0.825	1.326
	설문지가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였다.	4.02 (n=4,128)	0.752	3.96 (n=3,772)	0.877	3.407**
	설문이 길어서 짜증이 났다.	3.89 (n=4,128)	0.812	3.86 (n=3,772)	0.891	1.774
	피해경험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다.	4.05 (n=4,128)	0.748	4.04 (n=3,772)	0.869	0.692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4.04 (n=4,128)	0.729	4.02 (n=3,772)	0.834	1.483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	3.94 (n=4,128)	0.758	3.91 (n=3,772)	0.857	1.644
	설문의도가 의심스러웠다.	3.93 (n=4,128)	0.737	3.92 (n=3,772)	0.799	0.794

p<.01, *p<.001

또한,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편리하였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온라인에서 더 많았고 ‘설문 응답하는데 어려웠다’, ‘설문지가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였다’, ‘설문이 길어서 짜증이 났

다, ‘피해경험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대상자가 조사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반적인 결과가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범죄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부정적 반응 관련 문항 수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즉,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피해 경험에 있는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긍정적 반응이 더 적어 범죄피해경험이 있고 온라인 조사 방식을 경험한 사람이 조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2-3〉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 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분				t 값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긍정	설문지의 구조상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편리하였다.	2.78 (n=90)	1.068	3.13 (n=75)	1.045	-2.111 *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 내용이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3.03 (n=90)	1.013	3.30 (n=75)	1.037	-1.665
부정	전반적으로 설문 응답하는데 어려웠다.	3.98 (n=90)	0.717	3.63 (n=75)	1.002	2.574 *
	설문지가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였다.	3.95 (n=90)	0.808	3.61 (n=75)	0.925	2.517*
	설문이 길어서 짜증이 났다.	3.77 (n=90)	0.879	3.36 (n=75)	1.013	2.776**
	피해경험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다.	3.57 (n=90)	0.963	3.25 (n=75)	0.994	2.078 *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3.99 (n=90)	0.705	3.81 (n=75)	0.802	1.497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	3.96 (n=90)	0.730	3.43 (n=75)	0.988	3.845***
	설문의도가 의심스러웠다.	3.85 (n=90)	0.754	3.65 (n=75)	0.911	1.493

*p<.05, **p<.01, ***p<.001

이러한 조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묶어 살펴보았다.²³⁾ 그 결과, ‘범죄피해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등의 긍정적 인식에 있어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라는 응답이 32.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0.6%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표 응답에 어려웠다’, ‘중도에 그만두고 싶었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다’란 응답이 40.3%, ‘그렇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표 6-2-4〉 조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반응 및 인식(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긍 정		부 정	
	사례수	%	사례수	%
그렇다	2,592	(32.1)	369	(4.6)
보통이다	3,008	(37.3)	3,246	(40.3)
그렇지 않다	2,465	(30.6)	4,450	(55.2)
합 계	8,065	(100.0)	8,065	(100.0)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방법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이 ‘보통이다’가 전체의 37.1%, ‘그렇다’가 36.8%, ‘그렇지 않다’가 26.1%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을 통한 조사방법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이다’가 37.6%, ‘그렇지 않다’가 35.4%, ‘그렇다’가 2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을 통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조사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들의 조사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온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23) ‘전반적으로 응답하는데 어려웠다’, ‘이해하는데 어려웠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 ‘응답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등의 7개의 문항은 조사표에 대한 부정적 요인변수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59이며 ‘범죄피해경험을 응답하는데 편리한 구조였다’와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2개의 문항은 조사표에 대한 긍정적 요인변수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59임.

〈표 6-2-5〉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 및 인식의 차이(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유형				합계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긍정	그렇다	1,552	(36.8)	1,040	(27.0)	2,592	(32.1)
	보통이다	1,563	(37.1)	1,445	(37.6)	3,008	(37.3)
	그렇지 않다	1,103	(26.1)	1,362	(35.4)	2,465	(30.6)
합계		4,218	(100.0)	3,847	(100.0)	8,065	(100.0)

(df=2) $\chi^2=116.158^{***}$
 $***p<.001$

한편, 오프라인 조사방식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오프라인면접을 통한 조사대상자의 경우 전체의 37.0%가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하였고 36.7%가 ‘그렇다’의 응답을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의 응답은 26.3%였으며 오프라인 자기기입을 통한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그렇다’의 응답이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의 응답이 37.2%,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24.9%였다. 즉, 조사응답자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을 경험한 조사대상자가 조사표가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편리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다른 조사방법을 경험한 조사대상자에 비해 더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6-2-6〉 세부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 및 인식의 차이(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유형						합계	
		오프라인 면접		오프라인 자기기입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긍정	그렇다	1,391	(36.7)	161	(37.9)	1,040	(27.0)	2,592	(32.1)
	보통이다	1,404	(37.0)	158	(37.2)	1,445	(37.6)	3,007	(37.3)
	그렇지 않다	997	(26.3)	106	(24.9)	1,362	(35.4)	2,465	(30.6)
합계		3,792	(100.0)	425	(100.0)	3,847	(100.0)	8,064	(100.0)

(df=4) $\chi^2=116.571^{***}$
 $***p<.001$

설문을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였다거나 응답하는데 어려웠다거나 설문이 길어서 짜증이 났다는 등의 조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경우 오프라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의 55.3%, ‘보통이다’는 의견이 42.0%, ‘그렇다’는 의견이

2.7%였으나 온라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5.0%로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다’(6.6%)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2-7〉 조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 및 인식에 대한 조사방법유형 비교(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유형				합계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부정	그렇다	113	(2.7)	255	(6.6)	368	(4.6)
	보통이다	1,772	(42.0)	1,475	(38.3)	3,247	(40.3)
	그렇지 않다	2,333	(55.3)	2,117	(55.0)	4,450	(55.2)
합계		4,218	(100.0)	3,847	(100.0)	8,065	(100.0)

(df=2) $\chi^2=75.538^{***}$
***p<.001

또한, 오프라인조사방식을 조사원면접과 자기기입식을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온라인의 경우 ‘그렇다’란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8〉 세부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 및 인식 차이(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유형						합계	
		오프라인 면접		오프라인 자기기입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정	그렇다	103	(2.7)	10	(2.4)	255	(6.6)	368	(4.6)
	보통이다	1,578	(41.6)	194	(45.6)	1,475	(38.3)	3,247	(40.3)
	그렇지 않다	2,111	(55.7)	221	(52.0)	2,117	(55.0)	4,449	(55.2)
합계		3,792	(100.0)	425	(100.0)	3,847	(100.0)	8,064	(100.0)

(df=4) $\chi^2=78.119^{***}$
***p<.001

2.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유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유를 살펴보면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라는 응답이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대상자와 온라인을 통한 조사대상자 모두 가장 많았다. 집단별

응답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라는 응답이 전체의 57.9%로 가장 많았고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40.9%)나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서’(1.0%)의 순이었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응답의 순서는 동일하지만 요인별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와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란 응답이 온라인에서 보다 오프라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조사에서 역시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의 사전 면접과 지속적인 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접촉이 있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조사원면접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고 조사원과의 대면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조사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사응답자 가운데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조사협조를 위한 조사원의 개별적인 노력 역시 조사협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2-9〉 설문에 응한 이유(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유형				합계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	2,394	(56.7)	2,228	(57.9)	4,622	(57.3)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77	(1.8)	39	(1.0)	116	(1.4)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	1,744	(41.3)	1,573	(40.9)	3,317	(41.1)
기타 ²⁴⁾	4	(0.1)	8	(0.2)	12	(0.1)
합계	4,219	(100.0)	3,848	(100.0)	8,067	(100.0)

(df=3) χ^2 = 11.521 **

**p<.01

한편,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설문에 응답한 이유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조사방법에 따른 설문에 응한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별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라

24) 기타의 의견으로 ‘시정하라고’, ‘가족의 권유’, ‘아파트에서 하라고 해서’,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라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등이 있었음.

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온라인 조사응답자 집단이 오프라인 조사응답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2-10〉 조사방법에 따른 설문에 응한 이유 차이(범죄피해 경험 없는 경우 : 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 계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경험 없음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	2,346	(56.8)	2,191	(58.1)	4,537	(57.4)
	피해사실을 알고 싶어서	60	(1.5)	23	(0.6)	83	(1.1)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	1,718	(41.6)	1,551	(41.1)	3,269	(41.4)
	기타	4	(0.1)	6	(0.2)	10	(0.1)
합 계		4,128	(100.0)	3,771	(100.0)	7,899	(100.0)

(df=3) $\chi^2=14.616^{**}$
**p<.01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 모두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라는 응답이 각 52.8%, 48.6%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는 각 29.2%, 28.4%, ‘피해사실을 알고 싶어서’는 각 18.0%, 21.6%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2-11〉 조사방법에 따른 설문에 응한 이유 차이(범죄피해 경험 있는 경우 : 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 계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경험 있음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	47	(52.8)	36	(48.6)	83	(50.9)
	피해사실을 알고 싶어서	16	(18.0)	16	(21.6)	32	(19.6)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	26	(29.2)	21	(28.4)	47	(28.8)
	기타	-	-	1	(1.4)	1	(0.6)
합 계		89	(100.0)	74	(100.0)	163	(100.0)

(df=3) $\chi^2=1.623$

3. 미응답 비교

조사응답자에게 조사내용에 대한 반응이나 인식 등을 물어보면서 동시에 범죄 피해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험에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범죄피해경험이 있음에도 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하지 않은 미응답 인정 건수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이 6건, 절도가 5건, 폭행이 2건, 강도가 1건이었다. 한편, 자료수집방법을 구분해 비교해보면 오프라인의 경우는 사기가 9건, 성폭력이 6건, 절도가 2건, 폭행이 1건이었고 온라인의 경우는 절도가 3건, 사기가 2건, 강도와 폭행이 각 1건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사기가, 온라인에서는 절도의 미응답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해당 범죄피해 응답건수를 고려해 미응답비율을 계산해보면 다른 측면의 결과가 나타난다. 즉 오프라인조사에서 미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성폭력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기, 폭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조사에서의 미응답비율은 강도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절도, 사기, 폭행의 순이다. 물론 이러한 미응답건수 및 비율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조사응답의 솔직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암수(hidden) 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답자에게 범죄피해경험이 있고 조사응답과정에서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범죄피해경험이 범죄유형별로 얼마나 있는지 기입하는 과정이 개편 전 범죄피해 조사표에서 범죄피해경험 여부 질문 형식과 동일한 형태로 조사응답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당 범죄피해유형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성폭력인지, 강도인지 절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경험 보고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서도 성관련 피해경험을 발굴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함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표 6-2-12〉 자료수집방법별 피해응답사례와 미응답 건수 비교(표준화 가중치 적용)

범죄종류	현재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피해 응답 건수	회상 후 미응답 건수	미응답 비율 (%) ¹⁾	피해 응답 건수	회상 후 미응답 건수	미응답 비율 (%) ¹⁾
절도	30	2	6.3	19	3	13.6
강도	5	0	0.0	1	1	50.0
폭행	4	1	20.0	12	1	7.7
성폭력	4	6	60.0	8	0	0.0
사기	25	9	26.4	22	2	8.3
n	4,218			3,847		

1) 미응답비율(%)=회상후 미응답건수/(피해응답건수+회상 후 미응답건수)*100

범죄피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답해도 도움 될 게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의 52.4%였고 그 다음으로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소액피해라서’의 응답이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즉, 조사원 면접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할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싫어하여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해당 건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표 6-2-13〉 범죄피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구 분		조사방법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피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3	(14.3)	3	(30.0)
	귀찮아서	1	(4.8)	1	(10.0)
	답해도 도움 될 게 없어서	11	(52.4)	2	(20.0)
	시간이 없어서	1	(4.8)	1	(10.0)
	피해를 회상하는 것이 괴로워서	2	(9.5)	-	-
	설문이 어려워서	-	-	1	(10.0)
	소액피해라서	3	(14.3)	1	(10.0)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서	-	-	1	(10.0)

*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 기준임.

한편, 세부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살펴보면 조사원면접조사의 경우 ‘답해도 도움 될 게 없어서’의 응답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소액피해라서’,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라는 응답에는 조사에 응함으로써 자신의 피해사실을 응답해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포함되어 있거나 본 조사의 경우 다른 온라인조사와는 달리 가구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온라인조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즉, 범죄피해조사에 한해서는 적어도 자신 혼자 응답을 하는 온라인 조사의 특성을 살려 범죄피해보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⁵⁾

〈표 6-2-14〉 세부 조사방법별 범죄피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구 분		조사방법					
		오프라인 면접		오프라인 자기기입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2	(12.5)	1	(20.0)	3	(30.0)
	귀찮아서	1	(6.3)	-	-	1	(10.0)
	답해도 도움 될 게 없어서	9	(56.3)	2	(40.0)	2	(20.0)
	시간이 없어서	-	-	1	(20.0)	1	(10.0)
	피해를 회상하는 것이 괴로워서	1	(6.3)	1	(20.0)	-	-
	설문이 어려워서	-	-	-	-	1	(10.0)
	소액피해라서	3	(18.8)	-	-	-	-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서	-	-	-	-	1	(10.0)

*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 기준임.

4. 범죄피해조사의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와 같은 조사에서 어떠한 자료 수집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본 결과, 온라인 조사라는 응답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이조사표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23.5%), 종이조사표를 통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22.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피해조사의 응답방식에 대한 의견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상이한 조사방법을 통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

25) 범죄피해조사는 가구조사로 다른 온라인조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함.

사원 대면면접조사가 전체의 3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가 28.6%, 온라인조사가 21.6%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17.9%),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12.0%)의 순으로 나타나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대상자와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자신이 경험한 조사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에 비해 자신이 경험한 조사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방법을 조사원면접과 자기기입식을 구분하여 온라인조사방법과 살펴보았다.

〈표 6-2-15〉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 계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	1,205	(28.6)	687	(17.9)	1,892	(23.5)
온라인 조사	913	(21.6)	1,981	(51.5)	2,894	(35.9)
노트북이나 넷북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 (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291	(6.9)	335	(8.7)	626	(7.8)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 (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1,333	(31.6)	462	(12.0)	1,795	(22.3)
테블릿PC(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264	(6.3)	200	(5.2)	464	(5.8)
전화조사	212	(5.0)	182	(4.7)	394	(4.9)
합 계	4,218	(100.0)	3,847	(100.0)	8,065	(100.0)

(df=5) χ^2 = 957.760
***p<.001

그 결과, 조사원면접을 통한 조사를 경험한 조사응답자, 오프라인 자기기입식조사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온라인을 통한 조사대상자 모두 자신이 경험한 조사방법을 보다 선호하였으며 세부조사 방법에 따른 조사방법 선호도 역시 온라인 조사방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이 경험한 조사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6〉 세부 조사방법별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계	
	오프라인 면접		오프라인 자기 기입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	1,006	(26.5)	199	(46.8)	687	(17.9)	1,892	(23.5)
온라인 조사	782	(20.6)	131	(30.8)	1,981	(51.5)	2,894	(35.9)
노트북이나 넷북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 면접조사 (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270	(7.10)	20	(4.7)	335	(8.7)	625	(7.8)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 조사(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1,293	(34.1)	40	(9.4)	462	(12.0)	1,795	(22.3)
테블릿PC(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262	(6.9)	3	(0.7)	200	(5.2)	465	(5.8)
전화조사	179	(4.7)	32	(7.5)	182	(4.7)	393	(4.9)
합계	3,792	(100.0)	425	(100.0)	3,847	(100.0)	8,064	(100.0)

(df=10) $\chi^2=1175.462^{***}$
 $***p<.001$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조사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경험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피해경험 여부와 상관 없이 자신이 경험한 조사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피해경험이 없는 경우 오프라인의 경우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라는 응답이 31.6%,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가 28.6%, ‘온라인조사’가 21.6% 등의 순이었고 온라인의 경우는 ‘온라인조사’가 51.4%,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조사’가 17.7%,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면접조사’가 12.0% 등의 순이었다.

〈표 6-2-17〉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피해 경험 없는 경우 : 표준화
가중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 계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 경험 없는 경우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	1,180	(28.6)	668	(17.7)	1,848	(23.4)
	온라인 조사	890	(21.6)	1,940	(51.4)	2,830	(35.8)
	노트북이나 빗북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 면접조사(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283	(6.9)	332	(8.8)	615	(7.8)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 (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1,304	(31.6)	454	(12.0)	1,758	(22.3)
	테블릿PC(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264	(6.4)	198	(5.2)	462	(5.8)
	전화조사	206	(5.0)	180	(4.8)	386	(4.9)
합 계		4,127	(100.0)	3,772	(100.0)	7,899	(100.0)

(df=5) $\chi^2=943.442$
***p<.001

범죄피해경험이 있어 사건조사표까지 응답을 한 경우에서도 오프라인에서는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가 31.5%,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조사’가 28.1%, ‘온라인조사’가 25.8% 등의 순이며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조사’가 53.9%,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조사’가 25.0%,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가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을 경험한 조사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자기기입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6-2-18〉 조사방식에 따른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피해 경험 있는 경우 : 표준화 기준치 적용)

구 분		조사방법				합 계	
		오프라인조사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 경험 있는 경우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	25	(28.1)	19	(25.0)	44	(26.7)
	온라인 조사	23	(25.8)	41	(53.9)	64	(38.8)
	노트북이나 넷북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 (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8	(9.0)	3	(3.9)	11	(6.7)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 (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28	(31.5)	8	(10.5)	36	(21.8)
	테블릿PC(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	-	3	(3.9)	3	(1.8)
	전화조사	5	(5.6)	2	(2.6)	7	(4.2)
합 계		89	(100.0)	76	(100.0)	165	(100.0)

(df=5) $\chi^2=22.667^{***}$
 $***p<.001$

제3절 요약

이 장에서는 동일한 범죄피해조사표를 가지고 자료수집방법의 차이에 따라 범죄피해경험 보고율과 조사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을 비교하기 위해 범죄유형을 가구대상 범죄와 개인대상 범죄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가구대상 범죄는 ①주거침입 절도나 강도, 손괴와 같은 주거침입관련 범죄, ②자동차(부품)절도나 손괴, ③단순주거침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개인대상 범죄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구분하였고 ①폭력범죄는 성폭력, 강도, 폭행, 괴롭힘으로 ②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손괴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사방법에 따른 개인대상 범죄피해 건수를 비교해 보면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 집단에서는 재산범죄피해보고율이 79.4%, 폭력범죄피해보고율이 20.6%였고 온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 집단에서는 각 58.9%, 41.1%였다. 즉, 온라인의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폭력피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한편, 개인 대상 범죄피해 건수를 세분화된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조사대상자 집단에서는 강도피해에 대한 보고율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조사대상자 집단에서는 폭행피해에 대한 보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인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였다. 한편,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절도의 피해경험의 보고가 많았고 온라인에서 사기피해에 대한 보고건수가 많았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구 대상 범죄 피해 보고 건수를 범죄유형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주거침입 손괴나 절도와 같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보고율이 높았고 온라인에서는 단순주거침입에 대한 보고율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처럼 범죄유형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피해경험보고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두 번째, 본 장에서는 자료수집방법의 차이가 범죄피해경험 보고에 영향을 주는 지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범죄피해경험 보고여부를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응답자의 연령이나 성별,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역이 모두 동일할 경우 가구대상 범죄피해 경험 보고에 있어서는 자료수집방법의 효과가 없었고 개인대상 범죄피해 경험 여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개인대상 범죄피해 경험 여부에 있어서 조사응답자가 남자일 경우 여자에 비해 피해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0.7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다 세분화된 범죄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폭력이나 강도, 폭행과 같은 폭력범죄피해 경험 보고에서 자료수집방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모두 동일할 때 현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조사)에서는 온라인조사방식에서 보다 폭력범죄피해 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0.2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폭력범죄피해의 경우는 오프라인조사방식보다는 온라인조사방식을 통한 조사가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을 높이는데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조사에 대한 반응과 인식이 조사방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방법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과 인식은 ‘보통이다’가 전체의 37.1%, ‘그렇다’가 36.8%, ‘그렇지 않다’가 26.1%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을 통한 조사방법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이다’가 37.6%, ‘그렇지 않다’가 35.4%, ‘그렇다’가 2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를 경험한 응답자집단은 온라인을 통한 조사를 경험한 응답자집단에 비해 조사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 한편, 조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인식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역시 온라인조사 방식을 통한 조사응답자의 부정적 인식이 그렇지 않은 조사응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설문에 응한 이유를 살펴보면,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라는 응답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란 응답 역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조사협조를 위한 조사원의 노력 역시 조사응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범죄피해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보고하지 않은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결과 오프라인조사에서 미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성폭력이었다고 그 다음으로 사기, 폭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조사에서의 미응답비율은 강도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절도, 사기, 폭행의 순이었다. 물론 이러한 미응답 건수 및 비율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조사응답의 솔직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암수(hidden) 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답자에게 범죄피해경험이 있고 조사응답과정에서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범죄피해경험이 범죄유형별로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이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표에서 범죄피해경험 여부 질문 형식과 동일한 형태로 조사응답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당 범죄피해유형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성폭력인지, 강도인지 절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조사방법에 따라 범죄유형별 미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 오프라인의 조사에서는 기존의 우려처럼 성폭력 관련 피해경험을 쉽게 보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 번째, 범죄피해조사의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이다. 즉, 범죄피해조사방식의 선호도가 오프라인 조사를 경험한 조사응답자와 온라인조사를 경험한 조사응답자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신이 경험한 조사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응답자에 비해 자신이 경험한 조사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처럼 지금의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방식은 온라인을 통한 조사방식에 비해 폭력범죄피해 경험 보고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성폭력 피해경험의 경우는 미응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조사방식을 경험한 조사응답자의 경우 조사원면접을 통한 오프라인조사방식을 경험한 조사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은 떨어지고 부정적인 반응은 높은 반면 조사방식 선호도에 있어서는 자신이 경험한 조사방식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온라인을 통한 조사를 경험한 조사응답자의 경우 조사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이 복잡하여 어려웠지만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한 조사응답 방식의 편리성을 경험하였고 온라인을 통한 조사는 종이표를 통한 조사에 비해 자신의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의 측면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7장

결론

최수형

제7장

결론

본 연구는 범죄피해조사 개편 전·후의 설문도구 및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발전을 위해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반분조사형식을 응용한 설문조사와 인지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에 있어서 조사표와 조사방법의 영향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조사표와 조사방법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지적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과정을 이해하여 조사표 설계에 있어서 응답자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조사표 구성 및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 조사표 효과 분석 결과

2006년 이전 범죄피해조사의 도구로 사용하던 과거의 설문지와 2012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범죄피해율을 비교함으로써 각 설문지의 피해경험 포착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존에 범죄피해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논의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과 지역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006년 이전의 설문도구에서 1.8배 더 높은 피해율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피해율의 차이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보다 폭행 및 상해나 성폭력과 같은 대인범죄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개편 후 설문지의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이 개편 전 설문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까? 설문도구를 비교하면 과거 설문지가 오히려 범죄피해경험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장치를 많이 갖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개편 전 조사표에서는 조사응답자의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여성 응답자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성희롱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피해 사례를 기록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의 범죄피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본인의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할 준비단계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개편 후 조사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특정한 범죄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 질문함에 있어서 개별 문항마다 절도, 폭력, 협박 등 다양한 범죄피해경험을 묻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개편 전·후 조사표 효과 분석을 통해 그동안 간과했던 개편 전의 범죄피해조사표가 범죄피해 경험을 보고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강점과 개편 후의 범죄피해조사표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표 효과 분석 결과만으로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평가나 개편 효과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다. 즉, 범죄피해조사 개편 작업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인지적 면접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조사응답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조사표에 따른 범죄피해보고율의 차이나 조사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설문지 개편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경험을 발굴하고자 함에 있어서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는 조사응답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된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보고형태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개편 작업의 시작이었다. 즉,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범죄피해보고율이 개편 전의 조사표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개편 전 조사표에서 응답한

모든 범죄피해경험이 본래 범죄피해조사에서 포착하고자 한 범죄피해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즉, 개편 전 설문도구는 조사응답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범죄의 기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응답오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조사표를 통한 범죄피해 보고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사응답자가 개편 후 조사표의 핵심인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예시를 꼼꼼하게 읽었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즉, 조사표 효과분석의 결과만으로는 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작업 결과에 대한 효과를 단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조사표 개편의 취지는 일반인이 법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과는 상관없이 행위나 행위자, 행위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항을 보고 그러한 관련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함으로써 피해 경험을 기억해 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조사응답자에게는 조사 응답 시 그저 읽어야 할 내용이 많아 부담의 요인이 작용하여 제대로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사표 효과분석의 결과로 무조건 높은 범죄피해보고율을 보이는 조사표가 더 낫다는 식의 평가는 할 수 없다. 특히,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가 과거의 개편 전 조사에 비해 낮은 범죄피해보고율을 보였다고 해서 조사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고 대규모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청에 의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의 발전적인 시도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피해를 경험하고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해 응답할 수 없는 경험을 자극하기 위한 질문 방식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도구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질문 방식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에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인지적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편 전·후 조사표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평가를 보면 개편 후의 조사표가 개편 전의 조사표보다 응답의 편의성 뿐 만아니라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하는 데 더 용이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앞서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표 효과 분석에서 개편 전 조사표와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것이다. 이는 설문조사의 경우 자신이 경험한 1가지의 조사표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유형의 조사표를 경험한 조사응답자와의 반

응을 비교할 때 응답자의 응답성향이 반영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조사응답자가 해당 조사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응답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인식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특히 1가지 형태의 조사표에 대한 반응을 응답하도록 하는 본 설문조사방식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 한편, 인지면접조사는 조사응답자로 하여금 개편 전·후 조사표를 모두 응답하게 한 후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비교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보다 명확하여 평가내용이 분명해 질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인지면접조사결과 참여자의 대부분이 개편 후 조사표의 질문과 예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혼란스러워 했다. 즉,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 방식과 개별 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의 내용적인 면과 구성 및 형식적인 면에서 응답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에서 개별 문항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경험을 묻고 있고 범죄피해경험 회상 질문에서 제시하는 예시의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예시가 지나치게 많거나 혹은 너무 많은 문구를 진하게 표시하는 등의 기술적인 부분의 미흡함 등이 응답오류의 원인이었다. 이 외에도 동일사건 중복 보고 방지를 위한 문구와 조사기준 시점의 차이 역시 조사응답자의 응답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효과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범죄피해조사표를 가지고 자료수집방법의 차이에 따라 범죄피해경험 보고율과 조사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수집방법의 차이가 범죄피해경험 보고에 영향을 주는 지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범죄피해경험 보고여부를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이나 강도, 폭행과 같은 폭력범죄 피해 경험 보고에서 자료수집방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모두 동일할 때 현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조사)에서는 온라인조사방식에서 보다 폭력범죄피해 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0.2배 떨어졌다. 이처럼 폭력범죄피해의 경우는 오프라인조사 방식보다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통한 조

사가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을 높이는데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측면에서 온라인조사를 경험한 조사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면은 약하고 부정적인 면은 강하게 나타나 범죄피해조사에 온라인 조사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사응답의 이해도 및 편의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 발굴 효과분석에서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표가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표에 비해 낮은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을 보여 조사표 개편작업이 자칫 무의미해보일 수 있었으나 인지면접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조사응답자 역시 개편 후 설문도구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개편 전 설문도구를 통해서 회상자극을 받지 못했지만 개편 후의 설문도구를 통해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다만,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아직까지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질문의 방식과 해당 예시의 내용적인 부분이나 구성,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개편 작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개편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조사표 효과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더 높은 범죄피해보고율을 보인 개편 전 조사표를 재검토하는 등의 끊임없는 개선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이며 종단적 연구자료라는 특성상 안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회 조사에서 수정과 개선 작업을 하기 보다는 일정기간동안 관련 연구자료를 충분히 축적하고 해당 개선사항에 대한 효과분석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특정 시기에 전체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으로 범죄피해조사가 가지는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다음 항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지적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향후 개선사항

1. 조사표 수정 및 개선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표는 조사응답자 스스로 법적인 개념의 범죄피해상황을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부담과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 수준에 따라 범죄피해 보고율이 달라질 수 있고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에 의한 피해와 비전형적인 피해 등과 같이 일반인이 미처 범죄피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피해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표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행위자, 행위 내용 및 방법 중심의 문항을 사용하여 범죄피해경험의 기억을 되살리게 해 주는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개편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피해경험 보고율이 개편 전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조사표가 현재의 조사표에 비해 더 높은 피해경험 보고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과거의 조사표가 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하는데 더욱 효율적이며 개편 후 조사표의 변화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설문도구가 범죄피해 보고에 보다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에서처럼 조사응답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범죄피해유형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범죄피해를 보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실, 개편 후 조사표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점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 범죄피해경험 회상을 위한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질문들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표의 효과분석을 위해 조사표 이외의 모든 조사방법은 동일하게 진행함으로써 분석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응답자가 해당 질문과 예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전제가 필요했다. 물론 조사에 대한 반응이나 인식 관련 응답을 통해 이에 대해 간접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1가지 조사표에 대한 응답 결과로 일반인의 조사에 대한 반응의 기준 자체가 응답자마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결과에서처럼 두 가지 유형의 조사표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없었던 것일 수 있다. 즉, 2가

지 조사양식에 대한 경험을 통해 조사에 대한 반응과 태도, 관련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조사응답자와의 일대일 면접상황에서 진행된 인지적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과연 조사응답자가 실제 조사 과정에서 범죄피해경험 회상 질문에서 제시하는 예시의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면접 참여자의 대부분이 질문과 예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혼란스러워 했다. 즉, 이러한 인지면접결과를 통해 실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응했던 조사응답자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물론, 인지적 면접조사의 경우는 조사응답자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응답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실제 범죄피해조사가 조사원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규 범죄피해조사의 경우 자기기입식을 통한 조사가 일정 부분 차지할 수 밖에 없고 온라인 조사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조사대상자 스스로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개편 전 설문도구에서 현재의 설문도구로의 전환은 범죄피해경험 회상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작 조사에 응답하는 조사대상자가 해당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물론,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원면접방식을 통해 조사에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원을 통해 질문과 예시 내용을 전달받기는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역시 조사응답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즉, 조사표 개편의 취지는 일반인이 법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과는 상관없이 행위나 행위자, 행위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항을 보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함으로써 피해 경험을 기억해 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정작 조사응답자에게는 조사 응답 시 그저 듣거나 읽어야 하는 내용이 많아 부담이 되어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하는데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피해조사표에서 핵심인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은 조사응답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질문형태와 예시내용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조사표 수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범죄피해 회상 자극질문에 대한 설명 문구의 필요성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항에 대한 설명 문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범죄피해조사 뿐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역시 지침서에서조차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²⁶⁾ 실제 조사과정에서 면접원이 조사응답자에게 범죄피해 회상 자극을 위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모든 조사항목에 대한 취지나 의도를 조사응답자에게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칫 해당 설명으로 인해 또 다른 응답오류의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과 같은 특수한 영역의 조사항목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²⁷⁾ 즉, ‘아래의 문항은 범죄피해경험을 기억해 내기 위한 회상 준비 단계로 해당 질문과 예시의 내용이 각 하나의 범죄피해경험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질문과 예시를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는 등의 장치를 둔다면 성실한 조사응답에 대한 동기 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 경험에 있는 사람의 경우 기초조사표 이후 사건조사표로 넘어감에 따라 해당 질문을 이미 기초조사표에서 했다고 생각하여 조사의 피로감을 더 느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 범죄피해 회상 자극질문 예시의 내용 및 형식 보완

인지면접조사 결과, 범죄피해경험이나 응답에 있어서 개편 후 조사표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응답과정에서는 범죄피해경험 회상 질문의 개별 문항에서 절도나 폭행, 협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경험을 동시에 질문함으로써 혼란을 느끼거나 또한 해당 예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아 응답오류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단순히 다양한 수준의 예시들만을 나열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시 범위 안에서 폭넓게 다룰 수 있는 동일한 항목으로 최소

26) 조사지침서에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위한 위한 범죄피해 회상 선별 질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조사원이 조사응답자의 경험에 대한 응답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

27)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VS)에서는 범죄피해 회상 선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I’m going to read some examples that will give you an idea of the kinds of crimes this study covers”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출처 : http://www.bjs.gov/content/pub/pdf/ncvs1_2012.pdf).

5개가 넘어가지 않도록 추려야 할 것이며 예시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형식적인 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개편 전·후 조사표 효과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개편 전 조사표에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이 높게 나타나 범죄피해보고방식에 있어서 개편 전 조사표가 가진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성관련 범죄피해경험 관련 질문의 경우 개편 전 조사표에서처럼 성관련 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설문 방식을 추가하거나 해당 질문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연구 결과만으로 성관련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설문방식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자료수집방식 보완

일반적인 온라인을 통한 설문은 응답자를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개별 아이디만 부여한 뒤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응답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응답자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준비나 진행과정이 생략되고, 조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데이터 처리 등과 같은 자료검증단계에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적용된 온라인 설문 방식은 기존 면접조사의 방식과 동일하게 응답자구를 선정한 후 가구방문이 이루어진 후 해당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설문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구방문온라인조사라는 명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장에서 응답자를 만난 후에 설문 응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후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이 방식의 경우, 현장에서 설문 응답을 받아들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면접조사보다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조사비용 또한 증가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온라인조사의 장점으로 꼽히는 경제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는 없었다. 또한, 온라인 방식을 통해 조사응답을 한 조사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조사응답자에 비해 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태도는 더 낮았고 부정적인 반응과 태도는 더 많아 조사 응답을 함에 있어서 복잡하다거나 이해가 어렵다거나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온라인을 통한 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를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유형의 미응답율도 낮았다. 즉, 범죄피해 조사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온라인조사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온라인조사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특정 범죄피해유형에 있어서는 피해보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종이표로 구성된 범죄 피해조사표를 온라인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 조사응답의 이해도, 편의성, 그리고 수월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서’란 응답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원은 조사협조 여부를 결정지를 만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조사는 조사원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원의 역할과 책임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조사원에 대한 실사 관련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응답자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유도하고 응답자가 응답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사응답자를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3. 조사기준 기간의 통일

범죄피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지난 한 해(작년)’동안의 범죄피해경험을 살펴보는 것으로 조사대상시점은 조사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년도가 되는 것이다. 즉, 조사시행 시점이 늦어질수록 조사대상시점에 대한 기억 자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범죄피해가 조사시행 년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의 응답자의 회상오류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인지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지난 한 해동안의 범죄피해경험을 기억함에 있어서 한 해가 시작하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사가 이루어져도 범죄는 특수한 경험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별 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지만 실제 범죄피해경험을 기억함에 있어서 정확한 시기에 대한 보고조차 어려워 보였다. 즉, 조사응답자가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시점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김은경 외, 2009; 김지선 외 2011; 김은경 외 2013)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응답자의 회상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사 시기를 앞당겨 실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접근의 범죄피해조사 진행의 필요성

국가승인통계로서 2년마다 행해지는 대규모 양적 조사를 통한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지니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범죄피해자 관련 이론의 발전이나 관련 정책이나 방안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매년 범죄피해 보고율이 낮아져 범죄피해자의 응답 자체가 많지 않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범죄피해조사에서 포함하고 있는 범죄피해유형은 다양한 범죄피해의 일부분일 뿐이고 모집단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 또한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범죄피해율이 높지 않다고 하여 범죄피해조사가 가지는 유용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단순히 표본의 크기만을 올리기 위해 예산의 증액만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양적인 표본 조사결과를 뒷받침하고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별도의 범죄피해조사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올해에는 범죄피해조사라는 연구가 두 가지의 세부과제로 진행되었다. 그 하나가 본 연구인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변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가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하여 범죄피해자의 생활과 사회적 지원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도 정기적인 범죄피해조사와는 별도로 범죄피해조사를 중심으로 한 조사 설계나 조사표 구성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의 연구, 혹은 노인이나 청소년, 여성과 같이 특정 집단의 범죄피해조사나 상점절도(shoplifting)과 같은 상점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 등 다양한 측면의 범죄피해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접근의 연구가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의 배경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된 범죄피해조사 전담 연구팀이 만들어져 정규 범죄피해조사의 구성 및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범죄피해조사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이 연구는 범죄피해조사 자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실시한 최초의 대규모 설문조사로 서울·경기지역 6천 가구(12,285명)라는 표본의 크기 뿐 아니라 무작위 확률 표본 방식을 사용하였고 조사표와 조사방법의 효과 분석을 위해 반분조사 방식을 응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인지적 면접조사를 통해 그동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설문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기준 시점에 대한민국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14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조사 여건의 현실적인 상황과 해당 조사의 제한된 실사기간, 그리고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율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통계상으로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감소추세이고 실제로 범죄피해건수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본 조사는 정규조사인 전국범죄피해율을 추정하거나 이전 범죄피해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사의 범죄피해경험 응답율이 지금까지의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경험 응답율에 비해 낮다는 점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이 기존의 통계청에서 실시한 범죄피해조사와의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즉, 올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조사가 아니고 통계청을 통한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표본추출틀이 집계구 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 실사 역시 민간사회조사 업체에 고용된 조사원이 통계청 마크가 생략된 조사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가구 응답율로 이어져 실제로 조사권택가구 가운데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사실 조사를 거부한 사례의 상당부분이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피해경험을 회상하는 것이 아주 힘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의 설문에 응하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²⁸⁾

세 번째 문제는 소규모 표본을 통해 실시된 인지적 면접조사 결과를 조사응답자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인지면접조사는 사전에 준비된 공간에서 행해진 것으로 실제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든 조사방법론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보완할 수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에 앞으로 인지적 면접조사의 반복적인 측정 등의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박영실 외, 2013 : 52).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분명하다. 내년에 시행될 제4차 범죄피해조사부터는 민간조사업체를 통한 실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본 조사의 경험은 내년도에 진행될 정규조사의 표본 추출이나 실사 과정의 원칙과 지침을 새롭게 정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표 효과분석과 인지적 면접조사의 분석 결과는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현실화하여 개편 전·후 조사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한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인 온라인조사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방안 제시가 가능하였다. 이에 앞으로 범죄피해경험 보고응답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한 설문도구 및 자료수집방법의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관련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와 같은 접근 방식의 조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관련 연구의 축적과 지속적인 검토 작업으로 범죄피해조사가 정확성, 타당성, 유용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8) 물론 실사의 기본 원칙은 응답자의 단순 거부인 경우 응답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조사협조를 받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조사여건상 본 조사는 가구원 전원 조사이기 때문에 한 가구원이 응답을 거부했을 때 가구 전체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관련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음. 즉, 한정된 기간 동안 조사표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문횟수를 정하여 해당 횟수 안에 조사협조를 받지 못하면 해당 가구의 특성과 가장 비슷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은경·최수형·박정선(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홍영오(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영실(2013), “사회조사이슈_왜 인지적 접근법을 통한 조사표 설계가 필요한가?”, 『KIPA조사포럼』, 13(7) : 75-84.
- 박영실·박현정(2012), “제2장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설계-인지면접 테스트 결과”, 『2012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Ⅳ권』, 통계개발원, 4 : 97-139.
- 박영실·박현정·윤연옥(2013), “조사표 평가 방법에 관한 최근 동향”, 『조사연구』, 통계개발원, 14(2) : 201-227.
- 박영실·박현정·정남수(2013),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설계를 위한 인지면접 사례 연구”, 『통계연구(2013)』, 통계청, 18(1) : 34-55.
- 박영실·박현정·정지훈(2013), “제4장 반분조사 자료를 이용한 조사표 효과분석”, 『201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18(1) : 140-172.
- 박철현(2012), “KIC 범죄피해조사 조사설계 수정의 효과”, 『범죄와 비행』 12 : 5-25.
- 이경수·송현주·손영우·황명진·박영실(2013), “통계 조사 방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 : 선택지의 개수와 순서에 따른 응답의 변화”, 『통계연구(2013)』, 통계개발원.
- 최수형(2009),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 339~36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통계청(2013),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2. 국외문헌

- Cantor, David, James P. Lynch.(2005), “Explor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design on the analytical uses of the NCVS data.”,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1(3) : 4273-4276.
- Galesic, M., Tourangeau, R., Couper, M. P., & Conrad, F. G.(2008), “Eye-Tracking data new insights on response order effects and other cognitive shortcuts in survey respon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72(5) : 892-913.
- Groves, Robert M.(2006), “Nonresponse rates and nonresponse bias in household survey.” *Public Opinion Quarterly*. 70(5) : 646-675.
- Kinderman, Charles, James Lynch, David Cantor.(1998), “Effects of the Redesign on Victimization Estimat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Krosnick, J. A., & Presser, S.(2010). “Question and questionnaire design”, *Handbook of survey research*, 2 : 263-314.
- Priede, C. Jokinen, A. and Ruuskanen, E. and Farrall, S.(2014) “Which probes are most useful when undertaking cognitive int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7(5) : 559-568.
- Willis, G. B., R. Caspar, and J. Lessler.(2008), “Cognitive Interviewing : A “How To” Guide. 1999.” *Short course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 Website-
- Taylor Nelson Sofres and the British Market Research Bureau.(2014), The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http : //www.crimesurvey.co.uk/index.html](http://www.crimesurvey.co.uk/index.html)

Abstract



Korean Crime Victim Survey(IV) : Comparative Study on Crime Victim Survey Methodology

Choi, Soo Hyeong · Tak, Jong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survey tool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used in the National Criminal Victim Survey before and after its reformation and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each respondent forms his/her responses. Through the verific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seeks to achieve methodological advancement of the Survey. Under such purpose, the researcher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a split-half form adapted for the survey, as well as cognitive interview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ll members (14 or older) of 6,000 sample households in Seoul and Gyeonggi regions, applying three different types of methods to three groups each consisting of 2,000 households, respectively. Specifically, Survey Type A collected data through household visit survey using the crime victim questionnaire before reformation; Survey Type B collected data through household visit survey using the reformed crime victim questionnaire; and Survey Type C collected data through household visit online survey using the reformed crime victim questionnaire. By conducting surveys using different survey types and maintaining other aspects identical,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questionnaires by comparing the results of Survey Type A and Survey Type B,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data collection metho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Survey Type B and Survey Type C. As for the cognitive interview, this interview method has gained fresh attention in relation to questionnaire design or evaluation. This method looks into the process in which the respondent forms his/her responses, which

allows the researcher to reduce response errors. This Study used this method for interviews with 10 subjects. The key findings from the surveys and interviews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questionnaires, to see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ability to capturing the victims' experiences between the previous questionnaire for crime victim survey before 2006 and the current questionnaire used as of 2012.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evious survey tool before 2006 produced a victim rate 1.8 times higher than the current questionnaire. However, such rate alone does not definitely show us the result of effectiveness analysis. That is, we also need to look into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reformation, as well as the possible response errors. The respondents were fully aware of the benefits of the reformed survey tool, with some of them reporting that the reformed questionnaire had actually reminded them of their experience as crime victims, while they did not experience stimulated recall with the previous questionnaire.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formation, the reformed questionnaire has yet to account for a number of issues in terms of the illustrations given, the format, as well as the method of presenting the questions for recall stimulation. Despite such shortcomings, if we accept the legitimacy of the reformation, we need to improve the questionnaire further through continuous efforts which will include finding a way to achieving the original goal of the reformation, and reviewing the original questionnaire where it resulted in higher victim report rate. Since the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volves national statistics and longitudinal research data, it needs to be conducted in a stable fashion. Therefore, rather than amending and improving the questionnaire for every Survey, it would be better to build the research database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while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s, and improve the overall questionnaire at a certain point.

Second, as for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data collection methods, household

visit survey produced relatively higher victim report rate than online survey. However, respondents who experienced online survey showed less positive and more negative responses when asked about their reaction and perception of the survey compared with the respondents who did not : this suggests the need to introduce a means to ensure understanding and convenience of survey responses when using the online survey method.

Thus, this Study looked into the effect of the questionnaire and data collection method on the crime victim report rate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and also explored how the differences in the questionnaire and survey method result in differences in the reaction and attitude of the respondents towards the survey. And the Study re-confirmed the need to understand the process where the respondents form their responses, as well as the need to consider the respondents' perspective when designing the questionnaire, and revise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accordingly. It should be pointed out, however, that this Study only involved household members residing in Seoul or Gyeonggi regions, or only 10 respondents in case of cognitive interview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cognitive interview provided concrete proof for the expected effects of the revised questionnaire, verifying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the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reformation. In addition,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propose more meaningful ways to apply the new data collection method of online survey. Subsequent studies need to put more efforts in developing survey tool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that ensur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crime victim report and response, while continuing with the researches that lay the foundation for methodological development of crime victim survey. The researches hole that this Study will be the first of many studies taking the same approach, so as to create stable time-series data based on accuracy, validity, usefulness and reliability through continued accumulation and review of the researches.

부 록

[부록 1-1] 2014년 범죄피해조사 비교 연구조사 지침서²⁹⁾



29) 본 지침서는 2013년도에 시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에서 사용한 지침서양식 및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구와 개인이 일생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 포함)을 파악하고 범죄피해조사표 평가를 목적으로 함
-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조사실시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장 제11조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조사연혁

- 1991 : 서울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시험조사)
- 1994 : 제1차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민간기관)
- 1997~2006 : 제2차~제5차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민간기관)
- 2009 : 2008년 기준『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통계청)
 - 승인 통계 지정(제40301호, 2009.08.19.)
- 2011 : 2010년 기준『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통계청)
- 2013 : 2012년 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통계청)
 - 조사명칭 변경
- 2014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설문비교 연구 실시

4. 조사기간

- 본조사 기간 : 2014. 7. 22. ~ 9. 05.

5. 조사주기

- 본조사의 주기 : 2년
- 올해 연구는 비교연구조사로서, 본조사와는 별개로 실시되는 조사임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 모집단 정의
 - 조사기준 시점에 대한민국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14세 이상의 가구원
- 표집틀 : 집계구
 - 기초단위구를 결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획정한 경계로 외부에 공개된 자료
 - 읍면동의 1/23 정도(평균)의 크기로 읍면동 단위보다 세밀한 집계구 단위의 통계 조회 가능
 - 제공하는 통계항목
 - ① 인구 : 성, 연령, 교육정도, 종교, 혼인상태
 - ② 가구 : 방/거실/식당수, 난방시설, 점유형태, 세대구성, 가구수, 가구원수
 - ③ 주택 : 건축년도, 연건평, 주택유형
 - ④ 사업체 : 세제산업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통계 네비게이터 집계구 검색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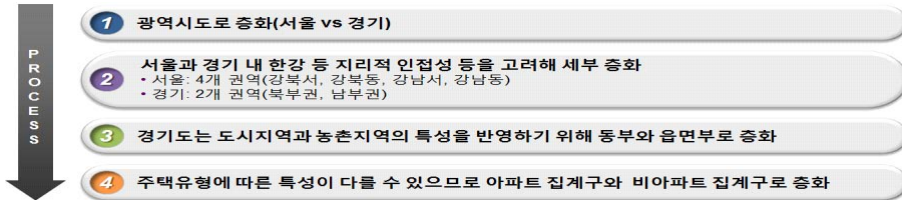


집계구(소지역) 통계보고서 예시



● 층화 기준

- 기준 : 지역 + 동부/읍면부 + 주택유형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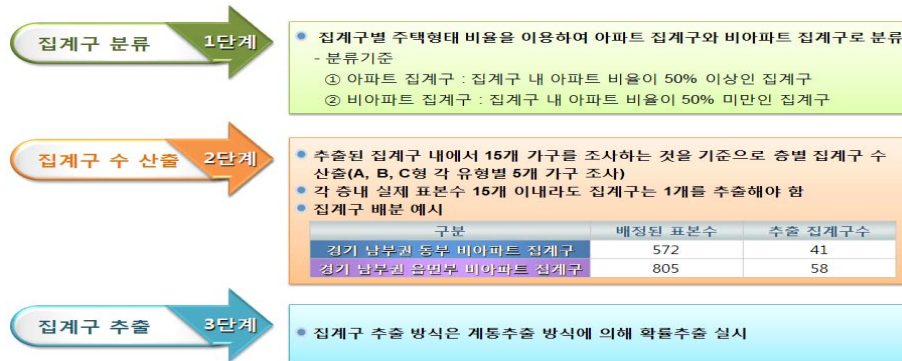


- 최종 층 구분

구분	1차 층화	2차 층화	층의 개수
서울	4개 권역	아파트, 비아파트 집계구	8
경기	2개 권역 - 동부	아파트, 비아파트 집계구	4
	2개 권역 - 읍면부	아파트, 비아파트 집계구	4

- 표본 규모 : 서울/경기 지역의 6,000가구

- 표본 집계구 추출



- 단, 다음의 경우 추출된 집계구 교체

- 20가구 미만의 집계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재개발,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집계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한 층 내 집계구 중 해당 집계구와 가장 유사/인접한 집계구로 대체 가능

7.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서울, 경기도의 6,000 표본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404개 집계구, 1개 집계구당 15가구)

가구	• 동일 거처의 가구 및 해당 가구원 • 일반 가구만 조사 대상(고아원, 고시원, 기숙사 등은 제외)
대표 가구원	• 가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원에게 응답 참여를 안내/독려할 수 있는 대표 가구원(예 : 가구주/배우자 등)
가구원	• 가구조사를 응답한 대표 가구원을 포함한 만14세 이상의 가구원 • 군입대, 장기해외출장자, 기숙사거주자, 재소자 등 장기부재자 및 비거주자 제외)

8. 조사항목

- 조사표 구성 : 기초조사표(가구응답자와 가구원 구분), 사건조사표
- 기초조사표 항목
 -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 및 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 작년 1년간 겪은 피해경험
- 사건조사표 항목
 -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9. 조사방법

-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후, 면접조사방법
 - ※ 응답자 희망시 응답자 기입방식 병행

II. 현장조사

- 1. 조사원의 기본자세
- 2. 조사 준비물
- 3. 현장조사 요령



II. 현장조사

1. 조사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원의 마음가짐

- 조사 직원은 형사정책연구원과 미디어리서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 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조사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반드시 수퍼바이저와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한다.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조

제8조 (현장조사 직원 기본자세) 현장조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른 조사업무 처리
2.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3.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
4.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답자 정보의 비밀엄수
5. 그 밖에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 유지

다. 조사원의 의무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 조사

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 담당 수퍼바이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수퍼바이저에게 알려야 한다.



통계법(개정법률 제11553호 2012.12.18.공포) 관련 조문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2. 조사 준비물

- 조사원은 다음의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시작 전, 조사관련 용품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조사관련 용품

1	조사표	6	답례품 수령확인서
2	조사지침서	7	조사원증
3	협조 공문	8	필기도구
4	집계구역도	9	가방
5	답례품	10	(심층조사)조사표

3. 현장조사 요령

가. 조사대상 가구 선정

1) 조사원별 집계구 리스트 및 조사 요도 수령

- 집계구별 전담면접원 배정 및 집계구를 이용한 조사 방법 파악
- 집계구 리스트 및 조사 요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조사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
- 1개 집계구 내에서 15가구 조사
- 제공하는 집계구 항목

- ① 집계구 ID : 해당 집계구 리스트 ID
- ② 행정구역 : 해당 집계구의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동/읍/면)
- ③ 해당 집계구 내에서 조사해야 할 주택유형 : 아파트, 비아파트로 구성
- ④ 집계구 중심 번지 : 해당 집계구 중심 번지의 가장 가까운 건물의 번지

● 집계구 조사방법

- 아래 집계구를 조사할 때, 해당 집계구에서 조사할 15가구는 집계구 중심번지의 최초 건물부터 시작하여 주택유형은 아파트를 조사해야 함

집계구 ID	시/도	시/군/구	동/읍/면	주택유형	집계구 중심번지	비고
01001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비아파트		
01002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아파트		
01003	서울	종로구	부암동	비아파트		
01004	서울	중구	필동	아파트		
01005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비아파트		

● 집계구 조사 요도

- 아래의 집계구별 구역 요도 및 집계구 주변 지역 요도를 활용하여 해당 집계구 방문 및 조사
- 배정받은 집계구의 구역 내에서만 조사해야 함

집계구 주변 지역 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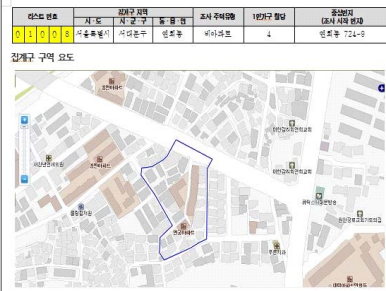
집계구 주변 지역 요도



집계구 구역 요도

관서별 번호	시·도	시·군·구	동·읍·면	조사 구역명	1번가구 할당	주소지명 (조사 지역 범위)
010101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비야파트	4	연희동 724-9

집계구 구역 요도



2) 조사원별 담당 집계구 방문 및 가구 선정

- 담당 집계구를 방문하여 원칙에 따른 가구 선정
- 표본 가구 추출

STEP 1	• 추출된 집계구 중심의 번지의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초 가구 선정
STEP 2	• 최초 방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가구 선정
STEP 3	• 추출된 집계구가 아파트 집계구이면 아파트 가구만 조사, 비아파트 집계구이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조사 (※비아파트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등)
STEP 4	• 추출된 집계구 내 가구수에 따라 집계구당 15개 가구를 조사 • A,B,C 유형을 1/3씩 조사 • 집계구별로 설문율 A,B,C 유형을 번갈아가며 배분하여, 설문 배부 순서로 인한 편향 방지

● 가구 조사 원칙

- 최초 추출가구의 가구원 부재시 2회 추가 재방문. 총 3회 방문 후 실패 시 가구 대체
- 20.30대의 젊은층 가구, 1인가구 등의 가구도 재방문 등을 통해 조사해야 함

3) 가구 대체 요령

- 조사거부(불응)

- 사유 : 사생활 노출 기피, 가정 사정·불화(실직, 부부이혼 등), 바쁘거나 귀찮아서, 정부 불신 등
-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를 반드시 2회(1일 1회 기준)이상 추가 재방문
- 통이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웃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 비밀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를 넣어 배부 및 회수(비밀보호용 봉투 뒷면에 ID, 조사원 이름을 기입하여 배부)
-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음에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대체

● 장기 부재

- 사유 : 장기출타(출장, 취업, 교육 등), 병원입원(수술, 출산, 사고 등)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옆집이나 이웃에게 수소문하여 확인하고, 2회(1일 1회 기준)이상 추가 재방문하여도 만나지 못할 경우 부재로 처리

● 조사 불능

- 사유 : 정신이상 및 장애, 고령, 자연재해 등으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장애나 고령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 가구대표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응답사유에 기재한다.
- 조사대상 가구에 외국인만 살고 있는 경우 한국어를 몰라 조사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조사 불능 처리하고, 다른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빈집

- 사유 : 이사 등으로 공가, 폐가인 경우

● 조사 부적격(대상외)

- 사유 : 상가, 어린이집, 놀이방, 교회, 기도원, 요양소 등 건물, 기숙사, 관사 등 집단 거주, 재개발 지역으로 철거, 기타(14세 미만 거주, 가구 없음 등)

나. 설문지 배부 방안

- 본 조사는 설문비교연구조사로서, 3가지 유형의 조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해야 함
- 한 집계구당 A, B, C형을 골고루 조사해야 함. 즉, 1개 집계구 15개 가구 기준으로, 1개 집계구당 5개씩 조사함

- A, B, C형을 한 번씩 번갈아가며 조사 진행하여 한 지점에서 특정 유형이 몰아서 조사되지 않도록 함
-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며, 각 유형에 따라 배부하는 설문지가 다름
- 각 유형별 조사 방법은 아래와 같음

유형	조사 방법	설문지
A형	면접조사	A형
B형	면접조사	B형
C형	온라인 조사	B형

- (A형+B형) 가구방문 + 면접조사 진행 절차
 -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 진행
 - 기존에 진행해오던 가구면접조사와 동일한 방식임
 - 본 비교연구에서는 A형과 B형이 해당함
 - A형에서는 A형 설문지로 가구 면접조사를, B형에서는 B형 설문지로 가구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임
 - 구체적인 진행 절차

1단계	• 대상 가구 방문하여 조사동의를 구한 후 조사 시작 • 조사 대상 가구원 수 파악(만14세 이상 가구원) • 먼저, 가구 대표 조사표(A형 설문지 또는 B형 설문지) 작성 • 설문 작성 과정을 면접원이 모니터링하며 지원
2단계	• 가구 대표 조사 후, 가구원 조사 • 가구원의 설문 작성 과정 면접원이 모니터링
3단계	• 조사대상이지만, 부재중이어서 설문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원 수 파악하여 조사 표 배부 •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가구대표가 가구원에게 설명해주도록 안내
4단계	• 면접원이 가구원 연락처 파악하여, 가구원이 설문에 답하도록 독려 및 안내 • 가구원 전원 응답 완료 확인 후, 완료된 조사표 수거위해 재방문 • 수거 현장에서 응답된 내용 검수(현장에디팅)

- (C형) 가구방문 + 온라인 조사 진행 절차
 - 가구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 진행
 - 가구의 구성을 파악하는 가구 구성표는 면접으로 작성하고, 실제 설문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응답하는 것임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안내하고, 해당 가구원 전원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응답 독려

1단계	• 대상 가구 방문하여 조사동의를 구한 후 조사 시작 • 조사 대상 가구원 수 파악(만14세 이상 가구원) • 먼저, 가구 대표 조사표(C형) 작성. 설문 작성 과정을 면접원이 모니터링하며 지원
2단계	• 가구대표에게 온라인 조사 참여 방법 안내 • 온라인 참여 방법 안내문 제공
3단계	• 가구의 온라인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 참여 독려 활동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다.
-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2) 가구를 방문할 때

-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항상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누구에게나 공손히 대한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고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줌
- 방문시간은 언제라도 좋으나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 대문을 두세 번 두드리거나 벨이 있을 때는 약간 동안만 눌러야 한다.
 - 특히, 아파트는 복도나 문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가구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 (※현관문은 상황을 봐 가면서 약간 열어 두는 것이 좋음)
- 대문이나 현관문이 열려있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다.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 먼저 방문목적과 자신에 대해 소개한다.
- 이 조사는 국가 산하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신력 있는 조사이며, 응답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을 시작한다. 성폭행, 성적접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 같은 어조로 물음으로써 응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
- 응답자가 그 자리에서 당장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다른 가구원의 사건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고,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요청한 뒤 조사표를 회수할 재방문일시를 약속한다.
- 약속시간은 엄수하도록 하며, 면접을 끝내기 전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기입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한다.
- 조사표를 완성한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서명을 받은 후 가구를 떠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다.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4) 응답자 설득방법

- 표정과 시선
 - 응답자에게 질문을 할 때 또는 답변을 들을 때 응답자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노력한다.
 - ※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응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진지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대화의 요령

- 조사에 대한 불신, 응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등 응답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하도록 한 후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다
- 조사원과 응답자 사이에 제3자인 가족, 친구, 이웃사람 앞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응답자와 둘이서만 조사를 진행한다
- 응답자가 조사에 응해 주기로 했다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

● 응답의 확인

- 응답자의 응답이 분명히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의미전달이 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응답을 받아들인 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재 질문한다.
- 응답자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하여 정확한 응답이 나오도록 재 질문한다.

● 케어묻기

- 응답자가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는 엉뚱한 응답을 할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질문을 더하여 완전하고 충분한 대답을 얻는다.
- 대화의 추임새로 면접 동안에 응답자가 얘기를 할 때에 “예, 그렇겠군요?”, “그럴 땐 힘드셨어요” 등의 문자를 써서 공감 표시를 한다.
-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하여 얘기를 해 주고, 대답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한 번 더 명확한 답을 하도록 질문을 한다.

● 조사 마무리하기

- 조사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한 것은 없는지 조사표를 면밀히 검토 후 종료한다.
- 조사가 끝났더라도 끝까지 친절한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되며, 조사에 응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답례품을 반드시 전달한다.
- 혹시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 자기기입식 조사표 회수 시에는 회수 시간을 정하여 약속한 날짜에 꼭 방문을 하여 회수하고, 방문 전 응답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마무리 여부를

확인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일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란?

☞ 전국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이미 신고 되어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는 범죄들도 있으나 이 외에도 사소한 범죄 또는 미신고로 묻혀버린 범죄유형들도 상당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숨은 범죄의 발생률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국민 생활안전실태조사는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와 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 어디서 조사합니까?

☞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금 시간이 없어서...

☞ 지금 바쁘셔서 면접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 다시 방문하면 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 응답자가 시간이 없다고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합니다.

● 이러한 조사는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 ☞ 통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정책 수립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통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정책수립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러한 조사가 없다면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 결국 조사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이 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통계법 제32조)

● 개인 사생활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 조사된 내용은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응답자 이외에는 이름을 작성하지 않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 ☞ 응답자의 가구가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Ⅲ. 조사표 작성 요령

- 1. 기본 점검사항
-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 3. 사건조사표
- 4. A형 조사표 작성 요령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기본 점검사항

가. 전체 조사표 구성

- 본 비교연구의 설문지는 A,B,C 총 3종이다.
- 한 집계구당 A,B,C 각 5개씩, 총 15개 가구를 조사하게 된다.
- 모든 설문지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설문 평가문항(응답자가 응답)및 조사원 확인사항(조사원이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대표 응답용 설문지와 가구원 응답용 설문지로 나뉘어져 있다.

○ A형

- A형 설문은 2009년 범죄피해조사가 개편되기 전의 설문지로서, 기초조사표부터 사건조사표 및 조사원 확인사항의 모든 문항이 1종의 설문지에 합쳐져 있다. 따라서 설문지는 1종.
- 가구대표 설문지와 가구원 설문지 모두 기초조사표는 흰색, 사건조사표는 노란색, 조사원 확인사항은 하늘색 색지로 구분된다.

○ B형

- B형 설문은 2009년 범죄피해조사 설문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의 설문지로서,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설문지가 구분되어 있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자용(녹색)’과 ‘가구원용(연두색)’으로 구분된다.
- 가구원용은 가구와 관련된 문항이 삭제된 형태의 조사표로 가구원 개인에 관한 문항만 조사한다.(13번, 17번~20번, 22번)
- 사건조사표(청색)는 가구대표 응답자 및 가구원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C형

- C형 설문은 가구대표에게 응답받는 가구 구성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된다.
- 응답자가 종이조사표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므로 종이조사표에는 가구 구성표만 작성하도록 한다.

○ 공통

- 모든 응답자는 ‘기초조사표’에 응답한다. ‘기초조사표’의 응답을 확인한 후,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조사표’를 추가로 응답해야 한다.
- 사건조사표의 수는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원이 직접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의 수를 확인해줘야 한다(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설문 문항에서 설명 예정)
- 사건조사표를 응답한 응답자에 한해(범죄피해가 있는 응답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심층조사 설문지를 배부해야 함. 심층조사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에게 설문지 배부하면 됨. 설문수거는 자동회송봉투를 이용(응답자가 설문 응답 후에 우체통에 넣으면 형사정책연구원으로 도착하는 방식). 조사참여에 대한 사례로 문화상품권 \10,000권 증정하며 조사참여자에게 설문조사 사례비 영수증에 서명을 부탁해야 한다.

나. 조사표 내용 구성

1) 기초조사표 주요 내용

- | | |
|-------------------------------|-----------------|
| H. 가구 구성 | I. 동네와 이웃 환경 |
| II. 일생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 III. 배경 문항 |
| IV.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V.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
| VI. 조사원 확인 사항 | |

2) 사건조사표 주요 내용

- | | |
|-----------------|--------------------|
|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 II. 범행수법 |
| III. 신체 피해 | IV. 피해자의 대응 |
| V. 재산 피해 | VI. 정신적 피해 |
| VII. 가해자의 특성 | VIII.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

3) 조사표 작성 개요

- 기초조사표는 2013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경험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기로 구성된 것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여부와 무관하게 대상가구의 가구대표응답자 및 만14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 만14세 기준(양력 2000년 1월 이전, 음력 1999. 12월 이전)

-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의 23번~30번 문항에 나열된 범죄유형에 대해 피해경험이 한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조사대상으로 피해경험과 범행수법, 피해정도(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 가해자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가. 기초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숙지

- ✓ ‘기초조사표’의 23번~30번 문항은 범죄피해경험 회상을 자극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본 조사의 핵심 부분이므로 조사시작 전 반드시 조사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특히, 조사 결과 얻은 정보는 ‘기초조사표’ 마지막 부분의 조사원 확인 사항에 반드시 기재한 후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 스크리닝 질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

- ✓ 항상 응답자에게 조사대상기간을 재확인시켜 작년(2013년) 한 해 동안(2013. 1.1.~12.31.) 경험한 범죄피해만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 ✓ 회상을 자극하는 스크리닝 질문은 8회에 걸쳐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시들은 응답자의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회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예시를 듣거나 읽으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8회에 걸친 스크리닝 질문들은 특정 범죄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 개인이 2013년 한 해 동안 경험한 피해사건 총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선 질문에서 피해경험이 회상된 사건이라면, 동일한 사건이 뒤이은 스크리닝 문항에서 다시 피해건수로 잡히지 않도록(“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 예시를 모두 듣고 난 후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23번, 26번 문항 제외)

-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응답을 모두 마치면, 23번~30번 문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원이 직접 ‘VI. 조사원 확인 사항’을 작성한다.

○ V. 조사원 확인 사항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 ✓ ‘확인 사항’은 스크리닝 문항(23번~30번)별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본 확인 사항은 아래의 [3단계]를 거쳐, 각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원은 반드시 응답자에게 확인해 가면서 전체 피해경험 총 수를 정리하여 기입한다.

[1단계] : 피해 경험 수의 결정방법

- ①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수를 옮겨 적습니다.
- ② ‘1.점검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 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24번 물건 관련’에만 한 건으로 표시합니다.
-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피해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 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2단계] :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 ① 문항별 피해경험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3단계] :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 조사표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상습피해가 0일 때 사건조사표 수는 피해경험 수와 같다.
 - 상습피해(5건 이상)와 개별피해가 있을 경우, 사건조사표 수는 ‘피해경험 수 - 상습피해 수 +1’이다.
- ✓ 사건조사표 수 결정방법에 따라 ‘1. 점검항목’ 작성이 끝난 뒤, 개별 응답자가 보고한 범죄피해경험 사건 수만큼, 각 사건별로 ‘사건조사표’ 작성을 바로 진행한다.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응답자의 기억을 자극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 만일, 응답자가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기초조사표’의 작성으로 조사를 종료하고, 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나.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용) 표지 작성 요령

가구원 ID										집계구 유형	가구 조사일		조사표 수거일	
시도		집계구			가구			가구원	월		일	월	일	
	-			-			-	0	1					

☐ 1)아파트집계구
☐ 2)비아파트집계구

◆조사표 표지	• 시도, 집계구, 가구는 사전에 공지된 집계구 자료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가구원번호는 가구 대표 응답자의 경우 '01'로 기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가구원의 경우 H 가구 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한다.
◆집계구 유형	• 조사를 진행하는 가구의 집계구 유형(아파트 및 비아파트 여부)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가구 조사일	• 조사를 진행한 날짜를 기입한다.
◆조사표 수거 예정일	• 응답자의 조사표 수거 예정일을 가구대표 또는 가구원과 사전에 확인하여 작성한다.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디어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등은 조사목적으로만 수집 및 이용되며 외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집항목	수집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구원별 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	본인 확인, 조사협조요청, 조사 관련 질의 및 검증	보존 기간은 4개월까지로 한다.
동의 여부		본인 서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동의	• 본인 확인, 조사 협조 요청, 조사 관련 질의 및 검증을 위한 응답자 성명 및 연락처 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받는다.
〈유의사항〉	• 응답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소				주택 형태	조사 방법
시·도	시·군·구	동·읍·면	상세 주소		
				☐ 1) 단독주택(다가구포함) ☐ 2) 아파트 ☐ 3) 연립주택/빌라/다세대주택 ☐ 4) 기타	☐ 1) 조사원 면접식 ☐ 2) 자기 기입식

◆주소	• 응답자의 시도, 시군구, 동읍면, 상세 주소를 작성한다.
◆주택 형태	• 조사를 진행하는 가구의 주택 형태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조사 방법	• 조사원이 해당 조사표 작성 시 주로 사용한 조사 방법에 표기하도록 한다.

가구대표 응답자 사건조사표 수	가구 전체 조사표 수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총 () 부	총 () 부	총 () 부	총 () 부

◆가구대표 응답자사건 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이 작성한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수를 더한 조사표 수를 기입한다.(가구 대표 응답자 청색 조사표)
◆가구 전체 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이 작성한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수를 더한 조사표 수를 기입한다.(녹색+연두색+청색 조사표)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이 작성한 기초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녹색+연두색 조사표)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이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청색 조사표)

다. 기초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H

가구 구성

H 2014년 7월(8월) 현재 귀택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가구 대표 응답자 와의 관계	성별	실제 생년·월	혼인 상태	직업 관련 등	종사상 지위	장애인 만 응답	외국인 만 응답	연락처 (휴대 전화)	※조사원 기입
			① 남 ② 여					장애인 복지 카드 ① 있음 ② 없음	출신 국가		사유 코드
1		① 가구대표		(양/음) 년 월							
2				(양/음) 년 월							
3				(양/음) 년 월							
4				(양/음) 년 월							
5				(양/음) 년 월							
6				(양/음) 년 월							
7				(양/음) 년 월							
8				(양/음) 년 월							

〈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 〉	〈 직업 관련 등 보기 〉	〈 종사상 지위 보기 〉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⑪ 조부모 ⑫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 노무 종사자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 혼인 상태 >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③ 사별이나 이혼

◆ 가구 구성

- 조사기준일(2014. 7월(8월)) 현재 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 가구 : 가구는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 가구대표응답자
 - 조사기준일(2014. 7월(8월)) 현재 조사 대상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사람(가구원)중에서 해당 가구의 생활상황을 대표하여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
-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음
- 가구원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2014. 7월(8월))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가구원.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취사와 취침을 함께 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단, 영외거주 군인은 제외)
- 취업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국내)이나 해외에 상주하는 가족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 요양소, 기도원에 수용된 자
- 군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제외

◆가구원 번호

- 1번은 가구대표 응답자이며, 2번부터는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 가구원번호는 기초조사표 및 사건조사표 표지에 활용된다.

◆이름

- 응답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가구대표 응답자와
관계

- 해당 가구원별로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를 보기항목에서 선택
 ◻ 가구대표응답자일 경우에는 ① 가구대표 응답자에 해당
 ◻ ⑭ 기타에는 ①~⑬ 이외의 관계가 있으면 기재

◆성 별

- 해당 성별에 표시하여 조사한다.

◆실제 생년·월	- 연령별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정확히 조사한다. ☞ 가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생년·월과 양력 / 음력을 구분하여 기입
◆혼인상태	- 조사기준일(2014. 7월(8월))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등 법적 상태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혼인상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 - 배우자 있음 :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실혼 포함) - 사별이나 이혼 :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 포함)
◆직업 관련 등	- 가구대표응답자와 가구원의 직업을 “직업 관련 등 보기”항목에서 선택하여 기입한다.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부서관리자 등·소규모기업의 경영자 등 - 교수, 교사, 학원강사, 예술인, 작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특정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직업(각 분야 학자 및 연구(보조)원, 전문가 및 준전문가 등) ② 사무종사자 - 각종 일반 사무원·금융기관, 여행, 숙박업,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등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 여행·음식·조리·미용 등 각종 대인서비스·영업직·매장판매직·방문통신판매원 -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등·모델 및 홍보 종사자 등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운전원 등 ⑥ 단순 노무 종사자 - 건물관리 및 경비, 건물 청소, 배달·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 운반원 등 단순노무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종사상 지위

-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를 해당 보기항목에서 선택하여 조사한다.
 - ①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 ②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
 -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번역가, 작가, 예술인, 통역사 등의 자유직업인도 포함
 - ③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일하는 경우
 - ④ 해당 없음
 -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

-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하여 표시하되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한다.
 - ※ 장애가 없는 사람은 체크하지 않는다.

◆연락처(휴대전화)

- 응답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출신국가

- 조사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출신국가를 조사한다.
- 대한민국 국적취득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출신 국가가 대한민국인 경우는 조사하지 않는다.

<아시아권>

1. 중국	2. 한국계중국인	3. 일본	4.우즈베키스탄
5. 몽골	6. 베트남	7. 필리핀	8. 타이
9. 타이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북미권>

18. 미국	19. 캐나다		
--------	---------	--	--

<유럽권>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	--------	---------	--

<기타>

23. 기타			
--------	--	--	--

I 동네와 이웃 환경

1 작년(2013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작년(2013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작년(2013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 ◆동네 주위 환경
 - ◆동네 사람들
 - ◆경찰 활동
-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사람들 간의 관계, 물리적/사회적 환경, 그리고 경찰활동 등에 관한 질문이다.
 - 동네란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경찰활동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 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를 말한다.
-
- 〈유의사항〉
- 2013년 연말 살았던 동네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가능하면 '그런(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보통이다'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설명에 주의한다.

4	작년(2013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감소할 것 같습니다?				
문 항	매우 감소 할 것	약간 감소 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증가할 것	매우 증가 할 것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 ◆범죄의 증가여부
- 범죄가 앞으로 증가할 것 같은지, 감소할 것 같은지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수준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여 조사한다.
 - 조사시점(2014. 7월(8월)) 이후의 범죄발생 증감률을 판단할 때, 작년(2013년) 한해와 비교하여 답하도록 한다.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 ◆상황별 두려움
- 일상생활 중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구 분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⑥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⑥	①	②	③	④	⑤

◆이타적 두려움

- 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본인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것인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배우자(애인)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 '⑥ 해당자 없음'으로 조사한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범죄피해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범죄유형별 두려움

-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유형별로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범죄 취약성
인식

-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이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방어능력 및 피해결과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9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포함)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목	있었다	없었거나 모른다
1) 신체 피해	①	②
2) 재산 피해	①	②

◆지인의
범죄피해

- 응답자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포함)이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나 재산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10

귀하는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일주일 평균 며칠 정도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을 이용했습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5일 이상 | ② 일주일에 3 ~ 4일 |
| ③ 일주일에 1 ~ 2일 | ④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대중교통수단
이용 빈도

- 응답자가 평소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일주일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1

귀하는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 | | | |
|----------|---------------|---------------|
| ① 거의 매일 | ② 일주일에 2 ~ 3일 | ③ 일주일에 하루 |
| ④ 보름에 하루 | ⑤ 한 달에 하루 |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늦은 귀가 빈도

- 응답자에게 직장이나 학교 일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하여 밤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늦게 귀가한 경우가 한 달 평균 어느 정도였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12 귀하는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만취상태의
귀가 빈도

• 응답자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간 경우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만취상태란 술이 많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13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와 가구원이 모두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 ① 거의 비우지 않았음 ②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④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⑤ 12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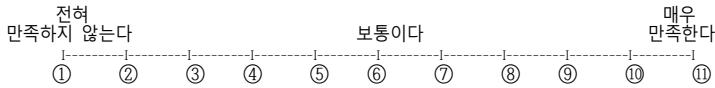
◆집이 비어있는
시간

• 응답자와 응답자 가족이 전부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하루를 기준으로 보통 몇 시간이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중에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집이 비어있는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 항목에 표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14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범죄대상으로서
매력성

• 응답자가 평소 외출 시 고급스런 복장이나 액세서리 또는 유명 브랜드제품(의복, 신발, 가방, 장신구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상생활용품)을 사용하여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범죄관련정보에
노출정도

• 응답자가 평소 범죄관련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범죄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또는 범죄사건에 대한 대화의 빈도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유의사항〉

• 남자의 경우 액세서리에 시계, 안경, 신발 등을 포함시킨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 ~ 3일 정도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 ◆ 범죄예방 안전 조치 여부
- 응답자가 범죄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갖추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III 배경 문항

1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 년 ____ 개월	

- ◆ 거주기간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동안 거주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유의사항〉
-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봅니다.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조사한다.

18 최근 5년 이내(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회 ② 없다	

- ◆ 이사 경험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최근 5년 동안 몇 번이나 이사를 했는지 물어 조사한다.
-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
 - 최근 5년 이내(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사 경험을 물어보는 것으로 기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19 가구원 가운데 현재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19-1 번으로 ② 없다 → 응답 후 20 번으로	
19-1 현재 집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호나 간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영업자 유무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상호나 간판 표시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영업을 할 경우, 상호나 간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

20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주택 소유형태	• 가구대표 응답자의 주택소유(점유) 형태를 물어보고 조사한다.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유의사항〉	✓ 자기집 -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 전세 - 남의 집을 임차하여 집주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임차기간동안 이자 없이 맡기고 이사 갈 때 되돌려 받는 형태 ✓ 보증부 월세 - 집주인에게 임차기간 동안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 ✓ 월세 - 집주인에게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 ✓ 기타 - 무상주택(조사대상가구의 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이 아니고 타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의 소유 주택으로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는 경우)과 사택(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나 회사 소유의 주택으로 소속 직원에게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정도의 실비를 받고 임대한 경우)이 해당

2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최종학력	•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물어보고 조사한다.
〈유의사항〉	• 재학은 현재 학력 상태로 조사하고, 중퇴나 퇴학은 중퇴나 퇴학 당시의 학력을 조사하고, 졸업은 최종 학력을 조사한다. • (예시 :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휴학 등을 포함한다.)

22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① 월평균 100만 원 미만 ② 월평균 100 ~ 200만 원 미만 ③ 월평균 200 ~ 300만 원 미만 ④ 월평균 300 ~ 400만 원 미만 ⑤ 월평균 400 ~ 500만 원 미만 ⑥ 월평균 500 ~ 600만 원 미만 ⑦ 월평균 600 ~ 700만 원 미만 ⑧ 월평균 700 ~ 1,000만 원 미만 ⑨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	--

◆ 월평균 소득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가구 전체의 월평균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 소득구간에 체크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더한 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Ⅳ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스크리닝 질문
〈공통유의사항〉

-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에서는 반드시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응답자의 응답을 조사원이 기입한다.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23번(속임관련) 및 26번(손상관련)을 제외하고, 스크리닝 질문(24, 25, 27 ~ 30번)을 듣고 난 후 만일 '②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피해경험의 회상을 자극하기 위한 여덟 개의 스크리닝 문항들을 하나씩 질문하면서, 이미 언급한 사건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뒤이은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된다는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각 스크리닝 문항응답에서 '①있었다'고 할 경우, 앞서 이미 언급한 사건과는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범죄피해 횟수로 카운트해야 한다.

23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③ 누군가 돈을 값을 의식나 능력이 없으면서 값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⑧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 속임 관련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조사원이 예시를 읽어주고, 어떻게 속임(사기)을 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예시에 있는 피해 사건의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피해사건들을 회상하게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기입한다.

24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까? (* 도둑맞을 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시

- ① 현금, 수표, 상품권 등
- ②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 ③ 지갑, 핸드백, 가방
- ④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⑤ 자전거 혹은 그 부품
- ⑥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 ⑩ 그 외 다른 물건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 물건 관련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돈이나 물건을 도둑 맞거나 빼앗긴 적 또는 도둑 맞을 뻔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면 미수까지 포함하여 도난피해 경험이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 ☞ 도난경험에는 응답자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거나 응답자가 누군가와 대면 상황에서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 조사원이 예시를 보면서 어떤 물품을 도난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예시된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한번이라도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사건(미수사건 포함)을 회상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물어보고 조사한다.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 침입 관련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주거 침입을 당한 적이 있었는지 혹은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를 경험했거나 당할 뻔 했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 사항〉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 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 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 사건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할 경우 또는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 응답자가 주거침입을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사건발생 당시 응답자가 그 집의 소유주나 세입자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중 그 발생장소가 본인의 거주 장소가 아니라면(가령, 부모님 댁 방문 시 사건경험이나 휴가철 숙소에서의 경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응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사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포함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손상 관련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누군가 응답자의 재산이나 물품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 누군가에 의한 물품손상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이 때 손상을 당한 뺀 경우(미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응답자가 물품손상피해를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응답자의 소유물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아닐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장소 관련	• 작년(2013) 한 해 동안, 재산피해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 이 문항은 다양한 장소의 예시들을 보면서 앞서 언급한 사건 이외의 재산 및 신체피해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물품도난 뿐만 아니라 위협이나 폭행 피해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까지 포함하여)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만일, 응답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① 있었다'라고 응답했다면,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전화나 문서 등을 통한 위협이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을 경고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하여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제외시킨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

- ① 칼, 총과 같은 무기
- ②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 ③ 돌이나 병을 던짐
- ④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 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 ⑥ 귀하 앞에서 위협함
- ⑦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방법 관련

- 작년(2013) 한 해 동안, 위협이나 협박, 폭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이 문항은 앞의 27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실제 피해경험은 있으나 위협, 협박, 폭행을 당했거나 혹은 당할 뻔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해서 응답을 못한 경우, 다양한 도구나 방법들에 대한 예시를 들으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문항이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번 25번 26번 27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실제 사건 발생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가 물건을 가지고만 있었다더라도 응답하도록 한다.
- 응답자에게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라는 내용을 읽어 줄 필요는 없지만, 만일 응답자가 위협을 당한 적이 '①있었다'라고 응답했다면 가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서 등을 통한 위협이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을 경고 받은 것이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제외시키고 응답하도록 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 ② 친구, 애인 또는 이웃
- ③ 가족이나 친척
- ④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지인 관련

- 작년(2013) 한 해 동안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물품도난, 폭행, 위협, 성폭력 등 이미 언급된 범죄유형들과 괴롭힘이 모두 포함된다.
- 여기에서 의미하는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심리적 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와 같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은 보통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을 강조한다.
-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교육(훈육)목적의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 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27 28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 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① 낯선 사람
- ② 조금 아는 사람
- ③ 잘 아는 사람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성추행 관련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 이 문항의 경우 28 29 번 문항에서 성폭력 경험에 대해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해자 유형별로 다시 한 번 질문함으로써 피해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관련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이 문항의 경우 응답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 응답자에게 “누구나 강요된 혹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키스,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행위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 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27 28 29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V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 사건조사표에 답하는 응답자는 사건조사표 응답을 완료한 후, 본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Q1) 지금까지 설문에 답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분)

◆설문 응답 시간 | 사건 조사표 전까지의 문항 응답에 걸리는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AQ2) 설문에 응하신 이유는? ()

- ①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서
- ②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 ③ 조사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
- ④ 기타 ()

◆설문 동의 이유 | 본 설문에 동의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조사에 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선택하게 한다.

AQ3) 귀하의 조사방법은 다음 중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조사원 면접
- ② 응답자 기입
- ③ 조사원 면접과 응답자 기입 병행
- ④ 온라인 조사

◆조사 방법 | 본 설문 작성 시 주로 사용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AQ4) 귀하가 이번 설문을 하면서 받으신 느낌은 어땠습니까?

감정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었다	④ 그렇지 않았다	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전반적으로 설문 응답하는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2) 설문지가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설문지의 구조상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편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 내용이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설문이 길어서 짜증이 났다	①	②	③	④	⑤
6) 피해경험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8)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설문의도가 의심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본 설문에 대한 느낌 | 응답자가 설문을 응답하는 동안 받았던 느낌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으로, 9가지 문항 각각에 대해 자신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한다.

AQ5) 귀하께서 설문에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범죄피해를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서 답하지 않은 범죄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AQ6으로

② 없다 → AQ8로

◆미응답 범죄 피해 경험 여부 | 범죄 피해 경험이 있으나, 앞에서의 범죄피해 스크리닝 문항에서 응답되지 않은 피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AQ6) 답하지 않은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는 어떤 범죄였습니까?

※ 해당사항 모두 체크()

항목	횟수
1) 절도(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은 경험)	회
2) 강도(물건이나 돈을 빼앗긴 경험)	회
3) 폭행(남에게 맞거나 위협을 당한 경험)	회
4) 성추행(원치 않은 성적인 접촉경험)	회
5) 성폭행	회
6) 사기(남에게 속아 재산 피해 경험)	회
7) 기타(직접 기입)	회

◆미응답 범죄피해 경험 유형 | 범죄 피해 경험이 있으나, 응답되지 않은 경험의 범죄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체크하고, 기타 범죄 유형이 있을 경우 어떤 범죄였는지 확인한다.

AQ7) 답하지 않은 범죄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

- ①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② 귀찮아서
③ 답해도 도움 될 게 없어서 ④ 시간이 없어서
⑤ 피해를 회상하는 것이 괴로워서 ⑥ 설문이 어려워서
⑦ 범죄인지 확실치 않아서 ⑧ 설문에 응답해야 하는지 몰라서
⑨ 기타()

◆범죄 미응답 이유 | 범죄 피해 경험이 있으나, 앞서 스크리닝 문항에서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AQ8)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귀하가 응답한 범죄피해와 같은 성격의 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

- ①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
② 온라인 조사

- ③ 노트북이나 넷북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 ④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 ⑤ 테블릿PC(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을 이용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
- ⑥ 전화조사

◆적정 조사 방식 유형

응답자가 느끼기에 본 설문(범죄피해)과 같은 성격의 조사에 적합한 조사 방식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V

조사원 확인 사항

1. 점검 항목

관련 문항	◆ 피해 경험 여부		㉔ 상습피해 수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피해를 당했으나 구별 못 함)	㉕ 사건조사표 수 (상습피해는 1건만 작성)
23번 속임 관련	㉑ 없었다	㉑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4번 물건 관련	㉑ 없었다	㉑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5번 침입 관련	㉑ 없었다	㉑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6번 손상 관련	㉑ 없었다	㉑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7번 장소 관련	㉑ 없었다	㉑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8번 방법 관련	㉑ 없었다	㉑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9번 지인 관련	㉑ 없었다	㉑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30번 성추행 관련	㉑ 없었다	㉑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총 피해 경험 수	㉑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총 사건조사표 수	_____ 부

◆ 조사원
체크사항

- 조사원은 기초조사표의 응답이 모두 끝난 경우, 피해경험 확인사항을 점검하여 작성한다.
- 본 확인 사항은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 23번~30번에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본 확인 사항은 아래의 3 단계를 거쳐, 각 개인이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1단계] 피해 경험 수의 결정방법
 - ① 범죄피해경험 관련문항의 피해 경험수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점검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 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24번 물건 항목에만 한 건으로 표시합니다.
 -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피해경험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 [2단계]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 ① 문항별 피해경험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 피해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조사원
체크사항

[3단계]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 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 조사표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만일 **23**번~**30**번 문항의 내용 중 피해경험이 없을 경우 나머지 조사원 기입사항과 응답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해당 조사표를 완성한다.
- 이어서 기초조사표의 첫 부분의 가구구성원 중 만14세 이상 대상자의 다음 가구원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대상자가 모두 종료되면 완료 조사표를 정리한다.
- ✓ 확인 사항에서 단 한번이라도 피해경험이 있다면 그 수만큼 적고 「사건조사표」를 바로 진행한다.
- ✓ 특정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사건조사표」에서 특정 범죄피해 관련 설문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조사표」에서 모든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라고 하더라도 「사건조사표」에서 재산피해 관련 설문문항만을 선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 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모든 「사건조사표」 문항에 응답자가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법 수준

항 목	예	아니요	잘 모르겠음
1)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①	②	③
2)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①	②	③
3)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①	②	③
4) 출입카드를 사용 한다	①	②	③
5)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6) 경비원이 있다	①	②	③
7)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①	②	③
8)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①	②	③
9)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0)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이 있다	①	②	③
11)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공단지역(공장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2)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대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①	②	③

◆가구 및 주변의
방법수준

주변의 방법수준을 파악하여 체크한다. 잘 알지 못할 경우 응답자에게 문의하여 완성한다.

3. 주택의 유형

-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 ⑤ 기타(오피스텔 등) ()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 1) 단지 규모 : 총 동
 2) 층수 : 총 층
 3) 형태 : ①계단식 ②복도식

◆주택 유형

	•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첫째,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둘째,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셋째,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함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는 비거주용 건물, 또는 기타로 분류한다.
①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종류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②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
③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④ 다세대 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에 사람이 살되, 그 주거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주택 - 영업 겸용 건물의 경우 주거면적이 영업용 면적보다 작으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임
⑥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를 겸한 복합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인 경우	• 단지규모는 총 몇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입함. • 응답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체 층수와 살고 있는 해당 층수를 기입(라인별로 층수가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층수를 기재) - (예시) 아파트 1개동에 13층, 15층이 있는 아파트의 3층에 살고 있는 경우 : (전체 15층 중 3층) •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선택하여 기입함.

4.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BQ1) 조사방법 ()

- ① 조사원 면접 ☞ BQ1-1) 응답자가 설문을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분)
- ② 응답자 기입
- ③ 조사원 면접과 응답자 기입 병행

BQ2) 응답자가 설문을 작성하면서 보인 태도와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감정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었다	④ 그렇지 않았다	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설문에 협조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전반적으로 설문 응답하는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3) 설문지가 응답하는데 복잡한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설문지의 구조상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는 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 내용이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설문이 길어서 짜증을 냈다	①	②	③	④	⑤
7) 피해경험이 떠올라 기분나빠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9)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 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설문지도를 의심스러워했다	①	②	③	④	⑤

BQ3) 응답자가 설문 응답을 어려워하며 질문을 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BQ4) 응답자가 질문을 했다면 총 몇 번 했나요? (회)

□ 질문을 하지 않았다

BQ5) 응답자가 질문을 했다면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문항 어떤 것이었나요?

문항 번호 : ()

BQ6) 응답자의 질문에 대해 귀하는 답변할 수 있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

3 사건조사표

가. 사건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각 범죄피해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원이 면접하여 조사한다. 단, 가구원 중 밤늦게 귀가, 출장 드으로 방문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곤란한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 「기초조사표」에서 회상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응답한 범죄피해경험의 총 횟수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개수가 달라진다. 가령,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3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다면 각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각 사건의 경험은 사건 발생시간과 장소, 가해자유형, 범행수법이 상이하여 「사건조사표」를 작성할 때 응답자가 사건을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 「사건조사표」는 사건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사건조사표’는 크게 9가지의 주요 설문내용으로 구분된다. 점검항목 /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 범행수법 / 신체 피해 / 피해자의 대응 / 재산 피해 / 정신적 피해 / 가해자의 특성 /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으로 구성되었다.
- 사건조사표 질문 문항은 별도의 지시문이 없다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단, 지시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문에 따라 질문 번호로 이동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문을 따른다.
- 응답자가 경험한 특정 범죄피해 관련 문항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조사표」의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일 경우 재산피해 관련 질문 문항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 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 3) 「사건조사표」를 작성한 후에는 타 가구원의 「기초조사표」 작성을 진행한다.

나. 사건조사표 표지 작성 요령

가구원 ID										가구 조사일		조사표 수거일	
시도	집계구			가구	가구원					월	일	월	일
	-			-			-						

- ◆조사표 표지
 - 시도, 집계구, 가구는 사전에 공지된 집계구 자료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가구원번호는 가구 대표 응답자의 경우 '01'로 기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가구원의 경우 H 가구 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한다.
- ◆가구 조사일
 - 조사를 진행한 날짜를 기입한다.
- ◆조사표 수거일
 - 응답자의 조사표 수거 예정일을 가구대표 또는 가구원과 사전에 확인하여 작성한다.
-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 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구원 정보			조사 방법	사건 번호	
이름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매	번
			☐ 1) 조사원 면접식 ☐ 2) 자기 기입식		

◆가구원 정보	• 조사 가구원의 이름,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입한다.
◆조사방법	• 조사가원이 해당 조사표 작성 시 주로 사용한 조사 방법에 표기 하도록 한다.
◆사건 번호	• 기초조사표의 총 사건조사표 수 중 몇 번째 사건을 작성하는지 작성한다.

다. 사건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12쪽, 가구원 10쪽) 점검 항목 관련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기초조사표 점검 항목	1) 관련 문항 ()번의 사건조사표 ()건 중 ()번째 사건 2) 상습피해인 경우 피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회 ※ 관련 문항 23번 속임피해인 경우는 18번부터 작성하십시오.
◆점검 항목	• 기초조사표 조사원 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에 작성한 범죄피해경험의 관련 문항 번호와 작성할 총 사건조사표 수, 그 중 몇 번째 사건인지를 작성한다. • 만일 관련 사건피해가 2회 이상일 경우, 해당 사건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사건 순서는 발생시간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정도의 순서일 수도 있다. 응답자의 기준에 따라 범죄피해사건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각 사건을 별도의 「사건조사표」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 만일, 조사원 점검항목에서 속임 관련 피해가 3회 있었고 각기 구분할 수 있는 사건들일 경우,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총 수는 3개이고, 본 피해사건이 총 3개 가운데 몇 번째인지 기입하면 된다. • 만일 관련문항의 피해사건이 상습피해(가령, 학교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에 해당될 경우, 기초조사표 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을 보고 그 피해횟수를 기록한다.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 상습 피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1건만 작성한다.
〈유의사항〉	• 점검항목은 기초조사표의 VI. 조사원 확인 사항의 1.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만일, 관련 문항이 23번일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은 18번 문항(재산피해)부터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1	이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오기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까?
	1)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2)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동일 주소지 여부	• 본 사건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 집(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현재는 조사기준일(2014. 7월(8월)) 시점으로 응답하게 한다.

2	그 사건은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2013년 월

◆사건 발생 시기	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정확한 월을 적고 필요하다면 달력을 보여주거나 당시의 큰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응답자에게 응답을 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응답자가 정확한 월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면 휴일이나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때,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을 얘기하면서 응답자로 하여금 사건을 경험한 월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 성적 괴롭힘과 같이 사건 발생장소는 다르다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상습피해인 경우, 가장 심한 피해발생 시점을 기록하도록 한다.

3 그 사건은 대략 몇 시경에 발생했습니까?

① 새벽(03 ~ 06시)

② 아침(06 ~ 09시)

③ 오전(09 ~ 12시)

④ 한낮(12 ~ 15시)

⑤ 오후(15 ~ 18시)

⑥ 저녁(18 ~ 21시)

⑦ 밤(21 ~ 00시)

⑧ 심야(00 ~ 03시)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⑩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사건 발생 시간	-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 낮인지 밤인지는 확실히 기억은 나지만 그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이나 '⑩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가령, 응답자가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다고 할 경우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	---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① 현재 사는 시·군·구
 ② 다른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조사원 기입용 코드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8** 번으로

◆사건 발생지역	-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다른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물어보고 조사한다. - 만일, 사건발생지역이 다른 시군구인데, 시군구는 모르고 읍면동만 알고 있을 경우 빈 여백에 읍면동을 기재한 후, 행정구역분류코드를 찾아 시군구를 기재한다. - 만일, 피해지역을 잘 모를 경우, '③ 모르겠음'을 선택하고 8 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 조사원 기입용 코드는 조사표 회수 후, 응답자가 기입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분류코드를 찾아 아래 칸에 기입하도록 한다. - 행정구역코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우측 상단의 통계분류·특수&기타분류·행정구역분류를 조회하여 행정구역 코드에 기입한다.
〈유의사항〉	만일, 사건이 시작된 곳과 실제 피해가 발생된 곳이 다르다면 피해를 당한 지역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5 그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5-1 발생 장소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① 집	① 우리 집 ② 가해자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거주자우선주차도로 포함)	① 아파트 단지 주변 ②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③ 단독주택 마을 주변
③ 학교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뒷산· 학교 담장 주변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④ 주차장	① 상업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차장 ② 공공기관(관공서, 은행 등) 주차장 ③ 아파트·연립주택 단지 주차장 ④ 도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전용 건물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⑤ 인구 밀집 상업지	①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②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④ 극장, 공연장 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현금자동지급기) ⑥ 의료기관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⑥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①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② 기업, 회사 사무실 ③ 종교기관 ④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⑦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① 유원지, 공원, 등산로,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학교 운동장 제외) ② 도로 상에서(주택과 인접한 도로 제외) ③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④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⑧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 (구체적으로 :)
5-3 그 곳은 귀하의 직장(또는 영업 장소)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사건 발생 장소

-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다.
- 7개 대분류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난 후 구체적 장소를 체크한다.
- 만일 제시된 7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⑧ 그 외의 장소'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도록 한다.
- **5-3** 번에서 본 사건발생장소가 응답자의 직장이나 영업장소인지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7개 대분류 장소를 응답자에게 알려줄 때 '거주자우선주차도로'의 경우에는 '②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 포함됨을 알려준다.
- 그 외의 장소로 기입하였으나 7개 대분류 장소에 포함될 경우 그 외의 장소를 삭제하고 각 해당내용으로 수정한다.

II

범행수법

6 그 사건은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집에 들어 올 뻔한 것도 포함)

① 예 → 응답 후 **6-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8** 번으로

6-1 가해자는 귀하의 집에 살았거나 귀하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8**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7** 번으로

7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귀하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습니까?

① 들어왔다 → 응답 후 **7-1** 번으로
 ②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 응답 후 **7-2** 번으로

7-1 어떻게 들어왔었습니까?

- ①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 ②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 ③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 ④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 ⑤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 ⑥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 ⑦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7-2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 귀하나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응답 후 **7-3** 번으로
 ②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7-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① 나
 ② 나와 가구원들 ☐ → 응답 후 **8** 번으로
 ③ 나 이외의 가구원들 → 응답 후 **10** 번으로

◆ 주거침입 여부

- 6번과 7번은 모두 본 사건이 주거침입과 연관된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 먼저 본 사건이 응답자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다.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 경우, 8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뒤이어 6-1번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일 동의하에 들어온 경우라면, 8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응답자의 동의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 포함)에 들어왔는지를 묻는다. 만일 가해자가 실제로 들어왔다고 응답했다면, 7-1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해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기 항목에서 선택한다. 보기에 해당하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7그 외의 경우'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한다.
- 만일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을 경우엔 7-2번으로 넘어간다.
- 7-2번은 가해자가 사건 당시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거나, 시도는 했지만 들어오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로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나 응답자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응답자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 7-3번에서 선택한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아무도 없었다면, 10번으로 넘어간다.

8

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응답 후 8-1번으로
- ② 아니나
③ 모르겠다 } → 응답 후 9번으로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총(가스총, 모의 총기 포함) | ②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 |
| ③ 유리병, 돌, 몽둥이 등 | ④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
| ⑤ 마취제, 독극물 | ⑥ 전기충격기 |
| ⑦ 스프레이 | ⑧ 그 외의 물건으로(구체적으로 :) |

8-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었다 ③ 모르겠다

◆ 흉기 사용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사용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에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8-1번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고, 8-2에서 그 무기나 위험한 물건이 미리 준비된 것인지 체크한다.
 - 만일,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잘 모를 경우, 9번으로 넘어간다.
-
- 〈유의사항〉
-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다
 - 본 사건 당시 가해자가 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더라도 '①그렇다'로 응답한다.
 - 가해자가 들고 있었거나 사용한 무기의 유형은 모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9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가했습니까?
① 신체 공격을 했다	→ 응답 후 12 번으로
② 실제로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박)했다	→ 응답 후 11 번으로
③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 위협·폭행이
나
성폭행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을 가하였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본 사건에서 가해자로부터 실제 어떠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경험하였다면, **12** 번으로 넘어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실제 신체적인 공격은 안했지만, 말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했다면 **11** 번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본 사건에서 아무런 신체적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이 없었던 경우라면, 뒤이어 **10** 번으로 진행한다.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함 ③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힘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⑧ 재물을 파괴·손상하려 했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했음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엿담, 감시, 스토킹을 했음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19 번으로	

◆ 신체공격이나
위협이 전혀 없는
사건내용

- 아무런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이 없는 사건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유형들로서 (1) 피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령, 절도, 강도, 기물파손 등), (2)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범죄(가령, 주거침입, 모욕, 협박(위협), 지속적 괴롭힘 또는 스토킹) 및 (3) 원치않은 성접촉(성추행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유형이 주로 해당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⑫ 그외의 일'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응답 후에는 **19** 번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본 사건에서 응답자가 경험한 피해내용 모두를 표시하도록 한다.
-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폭행 이외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과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 때로는 물리적 폭행이나 강한 협박이 없이도 단순한 힘(물리력)에 의해서 또는 물리적 행사없이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이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강간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② 죽이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③ 살해나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을 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④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을 하려고 말로써 위협
- ⑤ 무력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 ⑥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 ⑦ 칼 등의 흉기를 보여줌으로써 위협
- ⑧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감
- ⑨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 공격을 시도함
- ⑩ 흉기 이외의 물건으로 신체 공격을 시도함
- ⑪ 나에게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감
- ⑫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쌌
- ⑬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을 시도함
- ⑭ 그 외의 위협(협박)(구체적으로 :)

▶▶ 응답 후 **13** 번으로◆ 신체공격시도
및 위협 있는
사건내용

-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을 당할 뻔하거나 위협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말 포함)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체피해를 주겠다는 위협(협박)이나 공격시도행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이외 성폭력) 등이 주로 해당된다. 하지만 강간이나 강간미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해자의 신체공격을 시도하려 할 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항목에서 모두 선택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⑭ 그 외의 위협'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응답 후에는 **13** 번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본 사건에서 경험한 피해내용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 강간이나 강간미수사건의 경우엔 **12** 에서 응답하도록 한다.
-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폭행 이외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과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 때로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단순한 힘(물리력)에 의해서 또는 물리적 행사 없이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이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강간을 했다
- ② 강간하려 했다
- ③ 강간(미수) 이외의 성폭력을 했다
- ④ 총을 발사했다
- ⑤ 칼 등의 흉기로 찔렀다
- ⑥ 칼 등의 흉기로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 ⑦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했다
- ⑧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 ⑨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
- ⑩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12-1

실제 폭행이나 성폭력을 하기 전에 가해자가 귀하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신체공격 있는
사건내용

-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주었거나 주려고 시도한 행위가 해당된다.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강간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 가해자가 신체적 공격을 할 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항목에서 모두 선택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10 그 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항목에서 선택 후, 12-1 번 문항에서 신체공격을 가하기 전에 가해자가 신체위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응답받는다.
- 응답 후에는 13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III

신체 피해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신체 피해는 없었음 → 응답 후 15 번으로
- | | |
|------------------------------------|------------------------------|
| 2 강간 | 3 강간미수 |
| 4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 5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
| 6 총기(모의 총기 포함)에 의한 부상 | 7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
| 8 장기 손상 | 9 기절함(의식 불명) |
| 10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
거나 긁힘 | 11 그 외의 피해(구체적으로 :) |

◆신체피해내용

-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는지, 경험하였다면 어떤 유형의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경험한 신체적 피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 '1 신체 피해는 없었음'에 응답하면 2~11 은 응답하지 않고 15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11 그 외의 피해'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 2 종합병원 · 병원 응급센터
- 3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 4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 5 집에서
- 6 학교 · 직장 등의 의무실 등
- 7 그 외의 곳(구체적으로 :)

◆신체피해의 치료
여부

- 13 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했다면, 그 당시 입은 신체적 피해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하였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보기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경우에는 7 그 외의 곳'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14-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4-2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4-3 번으로	
14-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습니까?
① 예 ⇒ 일 ② 아니요	

◆입원 및
치료여부

- **14-1**번 문항에서는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여 기입한다. 치료를 받았다면 **14-2** 번 문항에서 입원여부를 별도로 질문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14-3**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조사한다.
- **14-2**번 문항에서는 병원치료를 위해 입원 여부를 묻고, 입원을 했다면 며칠 했는지 질문하여 기입한다.
- 100일 이상이면 다시 한번 확인한다.

14-3	그 사건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약 구입, 물리치료 등 포함)
(만 원)	

◆의료비 지출

〈유의사항〉

- **14-3**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보고 기입한다.
-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불한 의료비의 총 금액은 병원치료비 외에도 진단서 비용, 물리치료비 등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 3천원인 경우 '0.3'으로 작성한다.

14-4	그 사건으로 입은 신체 피해(상해)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 활동이나 가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일 ② 없었다	

◆신체피해로
인한 일상활동
손실

〈유의사항〉

- **14-4**번 문항은 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로 인하여 응답자의 일상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시간 손실이 대략 며칠이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로 학교나 학원(혹은 직장)을 못 간다거나 평상시 할 수 있었던 가사 일을 못한다거나 등의 일상 적인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24시간 미만은 1일로 계산하며 100일 이상은 재확인한다.

14-5	그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신체 피해(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 (전체의 %)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여부

- **14-5**번 문항은 응답자가 가해자로부터 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Ⅳ 피해자의 대응

15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귀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음주 여부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가볍게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를 하였다고 표시한다.

〈유의사항〉

•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의 음주상태 판단기준 역시 응답자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가급적 최대한 그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떠올리도록 해야 한다.

16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하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만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응답 후 **16-1** 번으로
 ② 없었다 ☐ → 응답 후 **17** 번으로
 ③ 모르겠다

16-1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귀하와 같이 있던 사람 중 상해를 입거나, 상해 위험을 받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명 ② 없었다

◆ 동반피해 여부

- 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사건 발생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16-1**번 문항을 조사하고,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거나 모르겠으면, **17**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16-1**번 문항은 사건이 발생당시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 사건에서 응답자와 더불어 다치거나 위협을 받았거나 강도를 당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있다면 '①있었다'를 선택하고, 몇 명인지 숫자를 적는다.

17 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17-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9** 번으로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무기 등(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 |] 응답 후 17-2 번으로 |
| ②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 |
| ③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 응답 후 17-3 번으로 |
| ④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 |
| ⑤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함 | |
| ⑥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 |
| ⑦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 |
| ⑧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 |
| ⑨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 |

17-2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① 나 ② 가해자 ③ 함께 있던 다른 사람 ④ 모르겠음

17-3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사건에서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17-4**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7-5** 번으로

17-4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한 것입니까?

- 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④ 신체 피해(상해) 없음 ⑤ 모르겠음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②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음
 ③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④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컸음
 ⑤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음
 ⑥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⑦ 모르겠음
 ⑧ 그 외의 영향 (구체적으로 :)

▶▶ 응답 후 **19** 번으로

◆ 피해자
방어행동

• 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어행동이냐 대응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했다면,

17-1 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인

19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피해자의 구체적 대응방법	• 17-1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본 사건당시 응답자 및 함께 있던 사람이 했던 방어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9 그 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 만일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의 대응행동 가운데 '1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2 주먹이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였다면, 17-2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조사한다. 그 외의 대응행동(3~9)이 있었던 경우는 17-3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 1 또는 2번에 응답하고 3~9번에도 응답할 경우 17-2 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 선제공격자	• 17-2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무기를 사용하거나 신체적 공격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신체피해 여부	• 17-3 번 문항은 실제로 대응과정에서 응답자 혹은 함께 있던 사람이 신체피해(상해)를 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 본 사건에서 신체피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7-4 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만일 피해(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7-5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방어행동과 신체피해와의 관계	• 17-4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 자신 또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 그것이 상해피해를 입기 전에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물어보고자 한다.
◆ 방어행동의 효과	• 17-5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대응행동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사건이 진행될 당시 방어행동나 대응행동에는 가령,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했거나 가해자와 신체적으로 격투를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예는 17-1 번 문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V

재 산 피 해

18 귀하가 속임(사기)을 당해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⑧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구체적으로 :)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방송·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 ②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 ③ 전화(허위)광고
- ④ 보이스 피싱
- ⑤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 ⑥ 인터넷 쇼핑사이트
- ⑦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 ⑧ 그럴듯한 말솜씨
- ⑨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 ⑩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 ⑪ 그 외의 수단()

▶▶ 응답 후 **19-6** 번으로

◆사기피해
경험

- **18** 번 문항은 응답자가 누군가에게 속아 금전적인 손해(사기피해)를 겪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①있었다'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당할 뻔한 적(미수)은 해당되지 않는다.
- 만일, 본 사건이 사기피해에 해당된다면, **18-1** 번과 **18-2** 번 문항을 계속 진행하고, 본 사건이 사기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19**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18-1**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겪은 구체적인 피해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이외에 다른 주요피해가 있을 경우 '⑧그 외의 사기(속임수)'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 **18-2** 번 문항은 본 사건의 주요 사기수법(수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건에서 겪은 사기수법들만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제시한 내용이외에 다른 방법일 경우 '⑪그 외의 수단'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유의사항〉

- 기초조사표 **23** 번 관련 문항에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본 문항부터 작성하도록 한다.
- 사기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넷을 통한 피해도 포함된다.

◆ 재산피해 여부	• 19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재산피해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피해경험이 '①있었다'면 19-1 번 문항으로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경험은 없었지만 '②당할 뻔했다'거나 피해경험이 '③없었다'면 20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재산피해 인지 시점	• 19-1 번 문항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가진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재산피해 물품	• 19-2 번 문항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가진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피해를 당한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한다. • 피해물품 가운데 '①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나 '②차량(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이 있다면, 19-3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응답받는다. 만일 피해물품이 이외의 유형(③~⑩)이라면, 19-4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①, ②번 문항에 응답하고, ③~⑩번 문항에도 응답할 경우 19-3 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 차량 직접인도 여부	• 19-3 번 문항은 피해물품이 자전거(부속품 포함)나 차량(오토바이 포함)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응답자가 직접 법인에게 그 물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건넨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 직접접촉에 의한 재산피해	• 19-4 번 문항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본 사건 당시에서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경우 접촉 시도 했으나 미수된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 19-5 번 문항에서는 응답자가 19-4 번 문항에서 '①그렇다'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19-2 번 문항의 보기에서 골라, 해당번호를 모두 기입한다.
◆ 재산피해 정도	• 19-6 번은 재산피해(사기피해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물품이나 재산의 현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①번을 선택한 후 구체적인 금액을 적고, 잘 모를 경우 ②번을 선택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현금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 - 사기,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물품의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현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 피해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이며, 1만원 미만은 소숫점을 사용하여 조사한다. (예 : 3천원 → '0.3'으로 조사)
◆ 재산 피해물품 회수여부	• 19-7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재산피해(사기피해 포함)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 피해물품이나 돈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유의사항〉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한다.
◆ 본 사건의 동반 피해자 존재 여부	• 19-8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사기피해 포함), 같은 사건으로 응답자 이외에도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몇 명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에 응답자 이외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①있었다'를 선택하고, 몇 명인지 숫자를 적는다.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차량(및 부품)
- ② 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
- ③ 정원(나무, 관목, 울타리)
- ④ 가구·가전 등 가정용품
- ⑤ 의류
- ⑥ 그 외의 물건(구체적으로 :)
- ⑦ 없었음

→ 응답 후 **20-1** 번으로

→ **응답 후** **20-2** 번으로

→ 응답 후 **21** 번으로

20-1

보험회사에 신고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20-2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재구입 가격(수리 불가능한 경우)은 얼마입니까?

- ① _____ 만 원 ② 모르겠다

20-3

귀하는 가해자로부터 손상(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전체의 _____ %)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20-4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했습니까?

- ① 그렇다 ⇒ 수리하거나 새로 사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일
② 아니다

◆파손(손괴) 피해	• 20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물품에 파손(손괴)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이다. • 만일, 본 사건으로 인해 물품파손피해가 있었다면, 보기항목에서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선택한다. 보기항목에 없을 경우에는 '6 그 외의 물건'을 선택 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 본 사건에서 아무런 물품의 파손이나 손괴가 없어 '7 없음'에 응답하면 21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본 사건에서 파손(손상)된 물품이 '1 자동차(및 부품)'인 경우에는 20-1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피해내용을 보험사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외 다른 항목(2~6)인 경우에는 20-2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응답한다. • '1 자동차(및 부품)'에 응답하고 2~6번 문항에도 응답할 경우 20-1 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파손(손상)된 물품의 현금가치 〈유의사항〉	• 20-2 번 문항은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①번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적고, 잘 모를 경우 ②번을 선택한다 •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 - 물품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나 교체 등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입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파손(손괴)에 피해 배상	• 20-3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물품의 파손(손괴)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상된 피해물품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파손(손괴)피해물품의 수리나 대체 여부및시간손실	• 20-4 번 문항은 수리 및 대체(새로 구입)여부와 여기에 걸린 시간을 파악한다.

VI

정신적 피해

21 그 사건으로 아래 유형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유형	있었다	없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2) 고립감(외로움, 간헐 느낌)	①	②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①	②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①	②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7) 자살 충동	①	②
8) 자살 시도	①	②
9) 그 외의 고통 (구체적으로 :)	①	②

21-1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일 ② 없었다

21-2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있었다 ⇒	1) 상담과 진료 기간	2) 상담과 진료 비용
② 없었다	일	만 원

◆ 정신적 피해

• **21** 번 문항은 본 사건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보기 문항에 응답한다. 만일 보기 문항이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경우 '9) 그 외에 고통'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 심리상담이나
신경정신과
경험

• **21-1** 번 문항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의 중지, 일상생활의 중단 등을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만일 있었다면, 그 시간손실이 대략 며칠쯤으로 추산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 **21-2**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심리상담소나 신경정신과 등에 간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만일 있었다면, 그 상담 및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실제 소요된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는지 기입하도록 한다. 만약,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도 상담 및 치료 중에 있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대략적 치료비까지 합하여 기입한다.

〈유의사항〉

-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건 이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소나 신경정신과에 간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즉,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간 경험은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한다.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낮아 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 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 졌다
1)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4)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①	②	③	④	⑤

◆사건 전후의
감정변화

〈유의사항〉

- 22 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이전과 비교하여 활동, 감정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려는 문항으로 5가지 문항 각각에 대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한다.
- 가급적 해당 사건조사표의 내용을 중심(기준)으로, 본 피해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현재 어떠한지 응답하도록 유의한다.

VII

가해자의 특성

23

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무언가를(예를 들어, 가해자 수,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 알았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23-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24 번으로

23-1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②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③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④ 경찰이 알려줘서
⑤ 그 외의 경우(구체적으로 :)

23-2 그 사건의 가해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개인(들) → 응답 후 23-3 번으로
② 기업이나 상업
③ 공공기관] → 응답 후 24 번으로

23-3 그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명

23-4 그 사건의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녀 모두 ④ 모르겠다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2세 미만(아동) ② 10대 중반 ③ 10대 후반 ④ 20대 ⑤ 30대
⑥ 40대 ⑦ 50대 ⑧ 60대 이상 ⑨ 모르겠다

23-6 그 사건 당시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음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 포함)' 또는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3-7-1 관계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 (가족 포함)	① 남편·아내 ② (조)부모 ③ (손)자녀 ④ 형제·자매 ⑤ 전남편·전처 ⑥ 기타 친인척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⑦ 친구 ⑧ 애인(전 애인 포함) ⑨ 학교 선후배 ⑩ 직장 동료 ⑪ 직장 상사 ⑫ 거래하던 사람 ⑬ 잘 아는 이웃 ⑭ 얼굴만 아는 사람
③ 전혀 모르는 사람	

◆가해자 인지여부	• 23 번 문항은 응답자에게 본 사건의 가해자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만일 안다면, 23-1 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가해자 인지방법 및 특성에 대한 질문에 계속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모른다면, '②아니오'를 선택하고, 다음 24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가해자 인지방법	• 23-1 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인지방법을 묻는 것이다.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⑤ 그 외의 경우'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가해자 유형	• 23-2 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경우, 본 사건의 가해자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가해자가 '① 개인(들)'이라면 23-3 번 문항으로 계속 진행하여 응답하고, 가해자가 '② 기업이나 상점', 혹은 '③ 공공기관'인 경우 24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유의사항〉	✓ 기업이나 상점 -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단위의 기업이나 상인이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점포인 상점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유통회사인 줄 모르고 사기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 -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구청(시청, 군청,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파출소), 소방서, 법원, 철도청,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가령, 우체국의 예금형령 사건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해자 수	• 23-3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에게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모두 몇 명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실질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 발생 당시 있었던 사람의 수를 모두 기입하도록 한다.
◆가해자 성별	• 23-4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성별을 알아보는 것이다.
◆가해자 연령	• 23-5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연령대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
◆가해자의 음주 상태 여부	• 23-6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사건 당시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응답했다면 가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거나 하는 등의 상황적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가해자와의 관계	• 23-7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그 사건 가해자와 응답자와의 관계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먼저 23-7-1 번 문항에서 관계분류를 선택하고 난 후, 23-7-2 번 문항에서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만일,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포함)'이거나 '친인척이외 아는 사람'에 누구인지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

VIII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24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 ① 신고 했다 → 응답 후 **24-1** 번으로
 ② 신고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9** 번으로

24-1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1순위	2) 2순위
-----------------------------	-----------------------------

- ①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②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③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④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⑤ 범치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⑥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

24-2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조치를 했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24-3**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24-4** 번으로

24-3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②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③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④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24-4 경찰은 귀하가 신고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 ① 제공했다 → 응답 후 **24-5** 번으로
 ② 제공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6** 번으로

24-5 귀하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 ①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②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③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④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24-6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만족했습니까?

- ① 매우 만족했다 ② 약간 만족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했다 ⑤ 매우 불만족했다

24-7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습니까?

- ① 모두 검거했다 ② 일부를 검거했다
 ③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④ 모르겠다

◆ 경찰신고 처리	• 24 번 문항은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4-1 번부터 24-8 번까지 응답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4-9 번으로 넘어간다
◆ 경찰신고이유	• 24-1 번 문항은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 5 가지의 보기에서 골라, 가장 주된 이유와 차 순위의 이유를 각각 기입한다. 만일,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⑥ 그 외의 이유'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 응답자가 사건 당시 신고했던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 응답자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장소나 시간, 가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준다. • 조사는원은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 경찰조치여부	• 24-2 번 문항은 응답자가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다.
◆ 경찰조치내용	• 24-3 번 문항은 응답자가 경찰신고 후, 경찰이 취한 조치내용을 묻는 것이다.
◆ 경찰사건처리 절차정보제공	• 24-4 번 문항은 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응답자에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응답자가 경찰에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한다면, 24-5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응답받으며,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했을 경우 24-6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 사건처리설명 이해정도	• 24-5 번 문항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응답자가 경찰의 설명과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경찰조치 만족도	• 24-6 번 문항에서 경찰신고 후, 응답자가 본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 범인검거여부	• 24-7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범인)가 실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유의사항〉	• 경찰은 지역 내 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항경찰, 순찰 공무원 등 특정 지역에서 체포 권한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즉, 사설보안직원, 건물 경비원 등은 제외된다. • 응답자가 '① 신고했다'고 답했을 경우 그 신고 과정이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공식적인 신고절차가 아니었다면 '② 신고하지 않았다'에 표시해야 한다.

4 A형 조사표 작성 요령

가. 전체 A형 조사표 구성

- A형 조사표는 ‘가구대표 응답자용’과 ‘가구원용’으로 구분되며, 사건 조사표는 조사표 내 노란색으로 구분된다.

나. A형 조사표 내용 구성

1) 조사표 주요 내용

일상생활 및 주변 환경
 사회 범죄 현상에 대한 의견
 배경 문항
 범죄피해 경험 여부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피해 경험 범죄 세부 사항(사건 조사표)
 조사원 기재사항

2) 조사표 작성 개요 및 주의사항

- 질문지에 흰색으로 된 응답자 개인 관련 및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은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야 한다.
- 작년(2013) 1년 동안 범죄 피해 경험 유무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맞게 노란색 사건조사표 부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사건조사표(노란색)가 작성 될 수 있도록 한다.
- 사건조사표(노란색)는 작년 1년 동안 당한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 유무 질문(1번~8번)에서 피해경험이 한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조사대상으로 피해경험과 범행수법, 피해정도(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 가해자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3) 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흰색)

▶ 먼저 귀하의 일상생활 및 주변환경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

4. 귀하가 외출을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 | | |
|--|---|
| ☐ 1)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 ☐ 2) 좌석버스 |
| ☐ 3) 시외버스 | ☐ 4) 통근버스, 통학버스 |
| ☐ 5) 전철, 지하철 | ☐ 6) 기차 |
| ☐ 7) 택시 | ☐ 8) 승용차, 그레이스, 봉고 등 |
| ☐ 9) 자전거 | ☐ 10) 걸어 다닌다 |
| ☐ 11)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외출 시 주요
교통수단

• 응답자가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확인한 후 작성한다.

▶ 다음은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

1. 귀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소식이나 내용을 주로 무엇을 통해 얻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표시하십시오)

- | | | |
|--------------------------------|---|---------------------------------|
| ☐ 1) 가족 | ☐ 2) 친구 | ☐ 3) 이웃 |
| ☐ 4) 신문 | ☐ 5) 텔레비전 | ☐ 6) 라디오 |
| ☐ 7) 잡지 | ☐ 8)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범죄사건
정보채널

• 응답자가 범죄에 대한 소식을 주로 어느 채널을 통해 접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3. 귀하는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표시하십시오)

- | | |
|--------------------------------------|--|
| ☐ 1) 살인 | ☐ 2) 강도 |
| ☐ 3) 강간, 성폭력 | ☐ 4) 폭행, 상해 |
| ☐ 5) 유괴, 인신매매 | ☐ 6) 절도, 소매치기 |
| ☐ 7) 사기 | ☐ 8) 횡령, 배임 |
| ☐ 9) 매점매석 | ☐ 10) 부정부패, 뇌물 |
| ☐ 11) 청소년 비행 | ☐ 12)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가장 문제되는
범죄 유형

• 응답자가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기 문항에 제시된 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부록에 수록된 색인 목록을 참고하여 응답자에게 설명해 준다.

9.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유형	① 아주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아주 높다
1)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2) 집안에 강도가 들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3) 집밖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을 당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4) 집밖에서 강도를 당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5) 가족이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 가능성(성폭행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6)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 가능성(성폭행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 아래는 여자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7)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8) 가족이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범죄 유형별
발생가능성

• 각각의 범죄 유형 별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7)과 8)은 여자 응답자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은 귀하께서 작년 1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동안 당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

1. 작년(2013년)에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부속품(카스테레오, 타이어, 엔진 부품, 자동차용품 등)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 ___ 0) 비해당(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___ 1) 없다 (☞ 2번 문항으로)
___ 2) 있다 (☞ 1-1번 문항으로)

1-1. 있다면, 몇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번

(☞ ☆ 노란색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 절도>에 대답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부품
절도 피해경
험 여부

• 응답자가 작년(2013년)에 자동차 부품 절도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있다'에 응답한 응답자에게 1-1. 피해 경험 횟수를 질문한 후, 노란색 부분에 <자동차 부품 절도> 부분에 응답하도록 한다.

※ 범죄피해 경험 여부(1번~8번)에서 지난 1년 동안 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응답자는 AQ-1)부터 응답하고, 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경우 해당 피해 경험에 대한 사건조사표(노란색) 설문이 종료된 후, AQ-1) 작성을 시작하도록 한다.

4) 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노란색)

- 질문지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앞(흰색으로 된 부분)에서 작년에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에게만 응답되어야 한다.(앞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표시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응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의해 여러 번 피해를 입은 응답자의 경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응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 유형을 여러 번 경험한 응답자는 가장 심각한 사건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및 성희롱>

귀하는 앞에서 작년(2013년)에 강간이나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느 것이었습니까? (당한 적이 있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그렇다	②아니다
1)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욕을 들었다	①_____	②_____
2) 누군가로부터 음란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_____	②_____
3)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만졌다	①_____	②_____
4) 몸을 강제로 밀착시키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	①_____	②_____
5)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①_____	②_____
6)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①_____	②_____
7) 강제로 성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①_____	②_____
8)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	①_____	②_____

-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 여부** | 응답자가 1)번부터 8)번까지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험한 사건에 모두 체크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위에 제시한 여러 사건 가운데 8)번이 가장 심각하고, 1)번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2013년) 동안 이러한 사건을 여러 번 당한 분께서는 여러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___ 01) 귀하의 집	___ 02) 가해자의 집
___ 03) 친구나 친척의 집	___ 04) 직장이나 학교
___ 05) 여관 등의 숙박업소	___ 06) 술집 등의 유흥업소
___ 07) 버스나 지하철 안	___ 08) 지하철, 터미널, 철도역 구내
___ 09) 백화점이나 시장	___ 10) 지하도
___ 11) 주차장	___ 12) 뒷골목이나 길거리
___ 13) 공중화장실	___ 14) 공원이나 야외의 한적한 곳
___ 1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사건 발생 장소**

- 응답자가 경험한 해당 사건이 발생된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알기위한 것이다. 1.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 여부에서 여러 번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가장 심각한 사건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IV. 내용검토 및 정리 제출

- 1. 기본 점검사항
-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IV. 내용검토 및 정리 제출

1. 기본 점검사항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 띄워야 할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한 가지 보기만 선택하는 것인데, 복수 응답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 표시내용이 수정된 경우, 마지막 수정된 값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숫자를 기입하는 문항의 경우, 단위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어떤 숫자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보기 중 ‘기타’에 표시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입된 내용이 다른 보기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포함될 경우, 해당 보기에 수정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가. 「기초 조사표」 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시·도, 집계구 번호, 가구, 가구원 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 번호는 ‘가구대표 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재한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응답자 본인에게 받았는지 확인한다.
 - 시·도, 시·군·구, 동·읍·면, 상세 주소, 주택 형태, 조사 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 전체 조사표의 총 부수가 「기초 조사표」와 「사건 조사표」 부수의 합과 같은지 확인하고, 적힌 부수대로 조사표가 회수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대상 누락 확인
 - 가구대표 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가구구성에 기재된 만14세 이상 가구원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한다.

- H. 가구 구성에 기재된 만14세 이상의 가구원 수와 회수된 가구원의 기초조사표 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동일하지 않다면 H.가구 구성의 ‘조사원이 기입합니다(사유 코드)’란에 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예, 가구대표응답자와 관계가 ‘배우자’로 조사된 사람이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또는 사별 및 이혼’으로 기재된 경우와 직업관련 등에 ‘전업주부’로 기재한 사람이 종사상 지위에 ‘임금 근로자’로 기재된 경우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여 수정한다.)
- 조사원이 직접 작성하는 체크 사항은 본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사건조사표 수와 조사된 사건조사표 수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 조사대상 가구 및 주변의 방법수준은 가구 방문 시 주변을 세심히 살펴서 작성하고, 모를 경우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조사표에 기재한다.
- 주택의 유형은 조사시점(2014년 7월(8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사건 조사표」 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시·도, 집계구 번호, 가구, 가구원 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건조사표를 응답한 가구원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건조사표의 사건번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가구원별로 1부터 순서대로 매겨졌는지 확인한다.
- ※ 예시 : A와 B가 사는 가구에 A는 2건의 범죄피해가 있었고, B는 1건의 범죄피해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A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2매중 1번, 2매중 2번으로 기재해야 하며, B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1매중 1번으로 기재한다.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 띄워야 할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가. 조사표 편철

- 조사표의 내용검토가 끝나면 가구별로 ‘기초 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순), ‘사

건 조사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자, 가구명부상 가구원 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사건조사표는 가구원 번호별 사건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정리한 조사표의 수가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표지에 기재된 조사표의 수와 일치하는지 세어본다.

V. 부록

- 1. 색인 목록
- 2. 행정구역(시군구) 분류부호
- 3. 주요 질의사례



V. 부록

1. 색인 목록

색인명	의 미
가구대표 응답자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가구원) 중에서 해당가구의 생활 상황을 대표하 여 응답하여 줄 수 있는 사람(가구원)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2014년 7월(8월)) 현재 조사대상 가구 에 상주하는 사람. ☞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은 가구원에 해당됨.
가정폭력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 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 흔히 물리적 폭력, 욕 설, 방임 및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로 나타나며, 가정폭력은 범 죄로서, 폭행죄 중의 하나이다.
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 교하는 것을 의미.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 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또는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됨.

색인명	의 미
경찰활동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
괴롭힘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의해 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무유형의 위 해 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 하여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함.
구타	물리적 혹은 상해를 포함하는 비합법적인 학대의 한 형태로서, 때리거나 치는 행위
근로소득	피고용자가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급료·임금·세 비(歲費)·연금·상여금 등
동네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 :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 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 는 지역
만취	만취상태란 술이 많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
무기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색인명	의 미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는 그 실행에 착수하여 처음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결과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그 중도에서 좌절되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중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범죄	국가의 형사법령(법규)을 위반한 행위. (유의어) 범법, 위법행위, 범행(범죄행위) ☞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절도)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모욕)로부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경제범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에 이르기 까지 그 해당범위는 매우 넓음 ☞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스토킹과 같은 행위도 우리나라 현행법령에 따라서 모두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임
사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졌음을 요건으로 함
사업소득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따위에서 생기는 소득. 총수입액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상습피해	상습피해란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 자극, 흥분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성폭력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색인명	의 미
성폭행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며 강간(強姦)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손괴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손상	일반적으로 재료의 모든 특성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흔히 손괴와 유의어로 사용 1. 물체가 깨지거나 상함. 2. 병이 들거나 다침 3. 품질이 변하여 나빠짐
스토킹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
위험한 물건	사람 신체에 대한 가해력을 가진 기구
위협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 협박과 동의어
이전소득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유괴, 인신매매	유괴 : 사람을 속여서 피어냄 인신매매 :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팔
횡령, 배임	횡령 : 공공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배임 :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
매점매석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둠

2. 행정구역(시군구) 분류부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서울특별시	11	부평구	23060	연천군	31350	공주시	34020	경상북도	37
강남구	11230	서구	23080	영통구	31014	금산군	34310	경산시	37100
강동구	11250	연수구	23040	오산시	31140	논산시	34060	경주시	37020
강북구	11090	웅진군	23320	오정구	31053	당진시	34080	고령군	37370
강서구	11160	중구	23010	용인시	31190	동남구	34011	구미시	37050
관악구	11210	광주광역시	24	원미구	31051	보령시	34030	군위군	37310
광진구	11050	광산구	24050	의왕시	31170	부여군	34330	김천시	37030
구로구	11170	남구	24030	의정부시	31030	서북구	34012	남구	37011
금천구	11180	동구	24010	이천시	31210	서산시	34050	문경시	37090
노원구	11110	북구	24040	일산동구	31103	서천군	34340	봉화군	37410
도봉구	11100	서구	24020	일산서구	31104	아산시	34040	북구	37012
동대문구	11060	대전광역시	25	장안구	31011	예산군	34370	상주시	37080
동작구	11200	남구	26020	중원구	31022	천안시	34010	성주군	37380
마포구	11140	대덕구	25050	처인구	31191	청양군	34350	안동시	37040
서대문구	11130	동구	25010	파주시	31200	태안군	34380	영덕군	37350
서초구	11220	동구	26030	팔달구	31013	홍성군	34360	영양군	37340
성동구	11040	북구	26040	평택시	31070	전라북도	35	영주시	37060
성북구	11080	서구	25030	포천시	31270	고창군	35370	영천시	37070
송파구	11240	울주군	26310	하남시	31180	군산시	35020	예천군	37400
양천구	11150	유성구	25040	화성시	31240	김제시	35060	울진군	37420
영등포구	11190	중구	25020	강원도	32	남원시	35050	울성군	37320
용산구	11030	중구	26010	강릉시	32030	덕진구	35012	청도군	37360
은평구	11120	세종특별자치시	29	고성군	32400	무주군	35330	청송군	37330
종로구	11010	세종시	29010	동해시	32040	부안군	35380	철곡군	37390
중구	11020	경기도	31	삼척시	32070	순창군	35360	포항시	37010
중랑구	11070	가평군	31370	속초시	32060	완산구	35011	경상남도	38
부산광역시	21	고양시	31100	양구군	32380	완주군	35310	거제시	38090
강서구	21120	과천시	31110	양양군	32410	익산시	35030	거창군	38390
금정구	21110	광명시	31060	영월군	32330	임실군	35350	고성군	38340
남구	21070	광주시	31250	원주시	32020	장수군	35340	김해시	38070
동구	21030	구리시	31120	인제군	32390	전주시	35010	남해군	38350
동래구	21060	군포시	31160	정선군	32350	정읍시	35040	마산합포구	38113
부산진구	21050	권선구	31012	철원군	32360	진안군	35320	마산회원구	38114
북구	21080	기흥구	31192	춘천시	32010	전라남도	36	밀양시	38080
사상구	21150	김포시	31230	태백시	32050	강진군	36390	사천시	38060
사하구	21100	남양주시	31130	평창군	32340	고흥군	36350	산청군	38370
서구	21020	단원구	31092	홍천군	32310	곡성군	36320	성산군	38112
수영구	21140	덕양구	31101	화천군	32370	광양시	36060	양산시	38100
연제구	21130	동두천시	31080	횡성군	32320	구례군	36330	의령군	38310
영도구	21040	동안구	31042	충청북도	33	나주시	36040	의창구	38111
중구	21010	만안구	31041	괴산군	33360	담양군	36310	진주시	38030
해운대구	21090	부천시	31050	단양군	33380	목포시	36010	진해구	38115
대구광역시	22	분당구	31023	보은군	33320	무안군	36420	창녕군	38330
남구	22040	상록구	31091	상당구	33011	보성군	36360	창원시	38110
달서구	22070	성남시	31020	영동군	33340	순천시	36030	통영시	38050
동구	22020	소사구	31052	옥천군	33330	신안군	36480	하동군	38360
북구	22050	수원시	31010	음성군	33370	여수시	36020	합안군	38320
서구	22030	수정구	31021	제천시	33030	영광군	36440	함양군	38380
수성구	22060	수지구	31193	증평군	33390	영암군	36410	합천군	38400
중구	22010	시흥시	31150	진천군	33350	완도군	36460	제주특별자치도	39
인천광역시	23	안산시	31090	청원군	33310	장성군	36450	서귀포시	39020
강화군	23310	안성시	31220	청주시	33010	장흥군	36380	제주시	39010
계양구	23070	안양시	31040	충주시	33020	진도군	36470		
남구	23030	양주시	31260	홍덕구	33012	함평군	36430		
남동구	23050	양평군	31380	충청남도	34	해남군	36400		
동구	23020	여주군	31320	계룡시	34070	화순군	36370		

3. 주요 질의 사례

1. 조사대상 가구인 지 여부

Q1. 대상가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하나요?
◇ 영업이 주된 목적이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대상이 됩니다.
Q2. 외국인도 조사하나요?
◇ 외국인도 조사해야 합니다. 단, 가족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응답곤란으로 처리하고, 가구대체 요령에 따라 다른 가구로 대체합니다.
Q3.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도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대체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람이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시 부재로 처리하고, 폐가 등 빈집이면 빈집으로 처리합니다.

2. 가구구성표 작성

Q4. 조사표의 가구구성에서 부부만 살고 있는데 한명이 일시 출장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H 가구구성 항목에서 두 명 모두 조사해야 하는지?, 한 명만 조사해야 하는지?
◇ 기초 조사표 H 가구 구성 항목에 두 명 모두 조사하고, 출장중인 가구원은 가능한 다른 가구원이 대리응답하게 합니다.
Q5. 2013년에는 일을 했으나, 조사시점 현재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 항목의 직업항목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 조사표 H 항목은 조사시점(2014년 7월(8월)) 현재 상태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직업 관련 항목은 무직, 종사상 지위는 해당없음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Q6. 가구원 모두가 만 18세 미만이면 가구대표 응답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 만 14세이상인 가구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구대표 응답자로 정합니다.
Q7.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공부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학생으로 조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일의 종류에 따라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Q8. 타지에서 공부하다 주말에만 오는 자식도 조사하나요?
◇ 주 거처가 타지에 있으면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기초조사표 배경문항 작성

Q9. 최종 학력 조사 시 재학, 중퇴, 휴학인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재학중인 경우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력을 최종 학력으로 기재하며, 휴학, 중퇴의 경우 휴학, 중퇴한 시점의 학력을 최종학력으로 기재합니다.
Q10.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내검시 재 질문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으로 응답자에게 기재하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응답을 거부하면 응답자 성명란에“가구대표 응답자”,“가구대표 응답자 배우자”,“첫째 자녀”,“둘째 자녀” 등으로 작성하되, 전화번호는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Q11. 자녀가 주는 용돈, 생활비 및 연금도 소득에 해당 되나요?
◇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 생활비는 이전소득이며, 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초조사표 22 번 문항 가구소득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Q12.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남편의 소득은 부인 가구의 소득에 포함하나요?
◇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는 부인 가구의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4. 조사대상 범죄피해인 지 여부

Q13. 범죄피해란 무엇이며, 조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범죄피해사건으로 봅니다.
◇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살인, 유괴, 약물남용, 도박, 성매매, 교통사고 등입니다.
Q14. 본인 부주의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분실된 카드 사용하여 결재된 경우와, 잃어버린 핸드폰 사용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범죄피해에 해당되니까?
◇ 단순한 분실의 경우는 범죄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금액 피해가 있었다면, 본 조사대상 피해에 해당됩니다.
Q15. 시골집에서 고물상에 팔려고 모아 둔 빈병, 비닐, 강통 등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간 경우 범죄피해에 해당되니까?
◇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응답자가 범죄피해라고 생각한다면 범죄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16. 자택이 아닌 식당,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됩니까?
◇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식당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도 사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17. 10세 아이의 자전거를 도둑 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사건 장소가 집이면 가구침입사건이므로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조사하고, 집밖이면 만 14세미만인 가구원이 도둑맞은 사건이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18. 경운기를 도둑 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농부가 도둑 맞은 경운기는 조사하나, 대리점의 도난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소 목장 등 외부에서 농축산업 사업체로 인식이 가능한 경우 발생한 도난 사건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Q19. 도박하다가 속임을 당한 경우 조사하나요?
◇ 도박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Q20. 별거중인 남편이 부인의 컴퓨터를 가져갔다면 도난으로 조사하나요?
◇ 공식 이혼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21. 이메일로 위협한 경우도 조사하나요?
◇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Q22. 편의점에서 일어난 도난도 조사하나요?
◇ 편의점의 물건이 도둑맞은 경우 조사하지 않으나, 편의점 점원이나 고객이 개인 물건(지갑 등)을 도둑 맞은 경우는 조사합니다.

Q23.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시 비운 사이 책상위의 책을 잃어버렸다면?
◇ 응답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누군가 고의로 물건을 가져갔으므로 도난 사건으로 봅니다.

Q24. 직장동료들이랑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다음날 고가의 시계가 없어진 걸 알고, 동료 중 한 명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면?
◇ 응답자가 동료가 훔쳐갔다고 확신한다면 도난사건으로 조사합니다.

Q25. 극장에서 가족옷을 빈자리에 놔두었는데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쳐다보니 훔치려던 사람이 일어나 극장을 나간 경우 조사하나요?
◇ 미수에 그친 도난 사건으로 조사합니다.

Q26. 문구점에서 학생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간 피해가 수십 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사업체의 물건이 도둑맞으면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5. 범죄피해 사건 수 결정

Q27. 두 형제가 길거리가다 강도에게 위협당했다면 몇 개의 사건인가요?
◇ 두 형제 각각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28.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남편이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가 아내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의 범죄피해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29. 아버지(가구대표 응답자)와 아들이 동일한 가구절도 사건을 각각 응답하면?
◇ 가구대표 응답자인 아버지의 피해사건만 조사합니다.
Q30.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다른 범죄피해 경험이 기억나면?
◇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사건조사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Q31.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폭행과 도난에 각각 응답했으나 사건조사표 작성시 동일한 사건임을 알았으면?
◇ 기초조사표를 수정하고 사건조사표를 한 건만 작성합니다.
Q32. 가구대표 응답자 차량과 배우자 차량이 각각 파손 되었을 경우 각각의 사건으로 보는지,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두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지?
◇ 2개의 사건을 별개로 보고 가구대표 응답자와 배우자에게 조사해야 합니다. 단, 동일시점 및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당한 사건일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1건의 범죄피해로 조사합니다.
Q33. 주거침입이 3건 있었는데 1건은 범인과 마주쳤고, 2건은 침입할 뻔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조사표 25번 문항에 3건으로 조사하고, 사건조사표는 사건별로 3개 작성합니다.

6. 사기(속임)

Q34. 인터넷에 경품을 준다고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했는데 경품은 안 오고, 보험가입 권유 전화만 걸려오는 경우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예시의 ③에 해당 되나요?
◇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범죄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5. 갯돈을 사기 당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기타의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36. 가족끼리 돈을 갚겠다고 빌려간 후 갚지 않았을때 속임(사기)에 해당 됩니까?
◇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되지 않거나 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갚을 의사는 있지만, 형편상 못 갚는 경우는 사기죄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본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에서도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속임(사기)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37. 아는 사람이 보험업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만 가로채고 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 속임(사기)에 해당 됩니까?
◇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상점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38.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과도한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 사기에 해당 됩니까?

◇ 기초조사표 23 번 문항 “우체국, 전화국, ~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7. 상습 범죄피해

Q39. 소량의 농작물을 여러 차례 도둑 맞았는데, 누가, 언제 훔쳐갔는지 모른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요?

◇ 기초조사표 24 번 문항 ⑩ 그 외의 물건에 표시하고, 도둑맞은 피해횟수를 적습니다. 피해횟수가 5건이상인 경우 상습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 수는 1개만 작성합니다.

Q40. 직장동료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5번 당했는데 상습피해로 보나요?

◇ 5번 각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나, 구별할 수 없다면 상습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는 1부만 작성합니다.

Q41. 학교 근방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에게 여러 번 돈을 빼앗긴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반복적인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상습피해라 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심각했던 범죄피해 1건을 사건조사표에 작성합니다.
◇ 만일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했다더라도, 각각의 범죄피해사건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개별 사건으로 보며, 그 피해사건 수만큼 사건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Q42. 같은 주차장에서 5건의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4건은 누군가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물건을 훔쳐갔고, 1번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상습피해로 보는지?

◇ 같은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다르므로 상습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5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8. 사건조사표 조사항목

Q43. 한 가구원이 여러 개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 순서는?

◇ 기초조사표 관련문항 순서로 작성하되, 관련문항이 동일한 경우 범죄피해 일시가 제일 빠른 사건부터 조사합니다.

Q44. 도난과 관련하여 범죄피해 물건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범죄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45. 단순 폭력사건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와 현장에서 합의했을 경우 범인 검거 여부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기초조사표 27 번 또는 28 번에 응답하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건조사표 24-7 번 범인 검거에는 “모두 검거하였다”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Q46. 드라이버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위험한 물건(사건조사표 8 번)으로 보나요?

◇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공격했을 때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Q47.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란 무엇인가요?

◇ 힘을 사용(밀거나 잡음)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포옹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Q48. 가해자의 공격으로 안경이 깨져 새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의료비로 보나요?

◇ 안경 구입도 의료비로 봅니다.

Q49. 무언가를 훔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는?

◇ 예를 들어 '재킷을 달라. 안 그러면 벗겨 가겠다'고 하든가, 피해자에게 급히 다가가 목걸이를 만지는 것을 훔치겠다는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Q50. 수리공이 집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중 물건을 훔치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의 허락으로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은 아니나, 도난사건입니다.

Q51. 택배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여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를 속여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봅니다.

Q51. 택배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여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를 속여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봅니다.

[부록 1-2] C형 조사에 대한 참여 안내문

2014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참여 안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조사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감안하시어, 귀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가구에는 소정의 사례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조사 기간

- 2014년 7월 ~ 8월 중

조사 방법

- 안내해드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설문에 응답

조사 대상

- 만14세 이상의가구원 전원(양력 2000년 1월 이전, 현 중3연령대)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조사 관련 문의처: ☎02-3488-2794

[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범죄통계조사센터

[조사기관]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조사팀

2014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온라인 조사 참여 방법 안내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아래의 온라인 조사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앞장의 문의처를 참고해 주세요.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1단계

- 인터넷을 통해 조사 사이트 접속
- 조사 참여 url <http://srv.mbmri.com/family>

2단계

- 조사원이 사전에 안내해드린 가구원별 ID를 확인하시고, 해당 ID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가구원 접속 ID

- 접속 ID는 총 8자리이며, 모든 숫자를 입력하셔야 로그인 됩니다.
ID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No.	가구대표와 관계	이름	접속 ID			
			시도	정계구	가구	가구원
01	가구대표 본인					
02						
03						
04						
05						
06						
07						

[부록 1-3] C형 조사형 스크립트

IV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23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⑧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① 있었다 ⇒ 1~99 건 ② 없었다

24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까?
(※ 도둑맞을 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시

- ① 현금, 수표, 상품권 등
- ②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 ③ 지갑, 핸드백, 가방
- ④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⑤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 ⑥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 ⑩ 그 외 다른 물건

① 있었다 ⇒ 1~99 건 ② 없었다

(Soft)'② 없었다'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Error Message :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1~99 건	② 없었다

- ☞ 같은 화면에 안내문 형식으로 띄워줄 것(※문25부터 문30까지 동일하게 제시)
- ※ 문24부터 지금까지 피해경험이 ①'있었다'고 응답해 주셨던 피해 경험과 다른 시점에 발생한 사건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같은 화면에 띄워줄 것(문25에 추가되는 안내문)
- ※ 해당 경험은 사건 발생 당시 장소가 귀하의 거주 장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령, 부모님 댁 방문 시 사건 경험이나 휴가철 숙소에서의 경험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별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Soft)"② 없었다'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Error Message :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① 있었다 ⇒ 1~99 건	② 없었다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background-color: #f0f0f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예 시</td> <td>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td> </tr> </table>		예 시
예 시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있었다 ⇒ 1~99 건 ② 없었다			

같은 화면에 띄워줄 것(문27에 추가되는 안내문)

- ※ 해당 경험은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 아닌,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경험만 해당됩니다.

(Soft)"② 없었다'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Error Message :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

- ① 칼, 총과 같은 무기
- ②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 ③ 돌이나 병을 던짐
- ④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 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 ⑥ 귀하 앞에서 위협함
- ⑦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① 있었다 ⇒

1~99 건 ② 없었다

같은 화면에 띄워줄 것(문28에 추가되는 안내문)

※ 해당 경험은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 아닌,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경험만 해당됩니다.

(Soft)"② 없었다'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Error Message :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 ② 친구, 애인 또는 이웃
- ③ 가족이나 친척
- ④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1~99 건 ② 없었다

(Soft)"② 없었다'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Error Message :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낯선 사람 ② 조금 아는 사람 ③ 잘 아는 사람
-----------	------------------------------------

① 있었다 ⇒ 1~99 건 ② 없었다

문30이 완료된 후, 아래 질문 제시.

(Soft)"② 없었다"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Error Message :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31) 문23~문30까지 응답해주신 (23~30번까지의 피해 경험 횟수 sum) 건 의 사건이 모두 다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다음의 "피해 경험 수 결정 방법"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제시된 내용이 틀려 수정이 필요하면 아래의 표에 수정해 주세요.

① 피해 경험 수 결정 방법

① 화면에 제시된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 수를 확인해 주세요.

② 점검 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 문항에 표시된 경우 같은 피해 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같은 피해 경험인 경우 '24번 물건 관련'에만 한 건으로 표시합니다.
즉, 같은 피해 경험이 2건으로 표시된 경우, 이를 한 피해 경험 당 한 건으로 수정합니다.

③ 최종적으로 수정된(오른쪽 표) 문항별 피해 경험 여부 건수를 합산한 총 피해 경험 수를 확인해 주세요.

④ 총 피해 경험 수와 귀하가 기억하는 피해 경험 수를 확인하시고, 차이가 나는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①지금까지 응답한 내용 및 수정하도록 표 제시

관련 문항	피해 경험 여부
23번 속임관련	①있었다_0~99_건
24번 물건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0~99_건
25번 침입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0~99_건
26번 손상관련	①있었다_0~99_건
27번 장소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0~99_건
28번 방법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0~99_건
29번 지인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0~99_건
30번 성추행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0~99_건
총 피해 경험 수	①있었다(미수포함)_____건

상습피해 수의 결정

※ 문23~문30까지 응답한 내용 중, 각 문항별로 5건 이상을 응답한 경우에만 확인

문32) 문31에서 응답해주신 사건 중, 상습피해를 당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상습피해 여부 결정 방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 ① 문항별 피해 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해 주세요.

※③①에서 수정한 응답값 중 5건 이상인 사건만 제시

관련 문항	피해 경험 여부	상습피해 여부 (※각 사건 구별 가능 여부)
23번 속임관련	①있었다____건	① 상습피해 경험이 있다(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다) ② 상습피해 경험이 없다(각 사건이 구별이 가능하다) ☞응답 그대로 count
24번 물건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건	① 상습피해 경험이 있다(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다) ② 상습피해 경험이 없다(각 사건이 구별이 가능하다) ☞응답 그대로 count
25번 침입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건	① 상습피해 경험이 있다(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다) ② 상습피해 경험이 없다(각 사건이 구별이 가능하다) ☞응답 그대로 count
26번 손상관련	①있었다____건	① 상습피해 경험이 있다(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다) ② 상습피해 경험이 없다(각 사건이 구별이 가능하다) ☞응답 그대로 count
27번 장소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건	① 상습피해 경험이 있다(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다) ② 상습피해 경험이 없다(각 사건이 구별이 가능하다) ☞응답 그대로 count
28번 방법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건	① 상습피해 경험이 있다(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다) ② 상습피해 경험이 없다(각 사건이 구별이 가능하다) ☞응답 그대로 count
29번 자인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건	① 상습피해 경험이 있다(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다) ② 상습피해 경험이 없다(각 사건이 구별이 가능하다) ☞응답 그대로 count
30번 성추행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건	① 상습피해 경험이 있다(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다) ② 상습피해 경험이 없다(각 사건이 구별이 가능하다) ☞응답 그대로 count

문33) 상습피해(5건 이상의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횟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상습피해 여부 결정 방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 ① 문항별 피해 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해 주세요.

※③②에서 '상습피해 경험이 있다' 사건만 제시

관련 문항	피해 경험 여부	상습피해 횟수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피해를 당했 으나 구별 못함)
23번 속임관련	①있었다_____건	_____건 ⇄ 1건으로 count
24번 물건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_건	_____건 ⇄ 1건으로 count
25번 침입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_건	_____건 ⇄ 1건으로 count
26번 손상관련	①있었다_____건	_____건 ⇄ 1건으로 count
27번 장소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_건	_____건 ⇄ 1건으로 count
28번 방법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_건	_____건 ⇄ 1건으로 count
29번 지인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_건	_____건 ⇄ 1건으로 count
30번 성추행관련	①있었다(미수포함)_____건	_____건 ⇄ 1건으로 count

※최종 조사 건수 count하여 사건조사표 수 제시할 때,

상습피해 여부에 따른 사건조사표 수 count

* 상습피해 경험 있는 경우(문32에서 ①'상습피해 경험이 있다')

=피해 경험 여부 - 상습피해 횟수 +1

* 상습피해 경험 없는 경우(문32에서 ②'상습피해 경험이 없다')

=피해 경험 여부 그대로 count

(hard)※상습피해 횟수 입력 시, 5회 미만 입력될 시 Error Message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피해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피해 횟수 입력 시, 피해 경험 횟수 이하로 입력되지 않을 시 Error Message :

“상습피해 횟수는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 수 이하로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조사 건수 count하여 사건조사표 수 제시

화면에 제시되는 문구

♣ 귀하께서 작성해주실 사건조사표 수는 _____ 건입니다.

[부록 2-1] 인지면접조사 지침서

【범죄피해조사표 비교연구】를 위한 면접 지침서

응답자와의 첫 대면

5분

- 면접 안내문 배부 및 설명 (범죄피해조사 목적, 면접 목적 및 방법 소개, 비밀보장 및 녹취 관련 내용 알람)

< 범죄피해조사표 비교연구를 위한 면접 참여 안내문 >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피해조사의 조사 항목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범죄피해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면접의 목적은 범죄피해조사표의 조사표를 응답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들이 조사항목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질문을 읽거나 들었을 때 떠오른 어떠한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접 과정은 응답자의 동의하에 녹음이 되는데, 이 자료에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동의서 및 응답자 사례비 영수증 사인

『범죄피해조사표 비교 연구』 면접
-자료제공 동의서-

본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표 비교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에 참여하고 면접과정이 녹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자료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 목적에 녹음자료가 사용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이름 : _____ (서명) _____

날 짜 : _____

○ 면접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

- 참여자는 배부한 조사표 A,B형에 대한 응답을 한다
- 조사표 A,B형에 응답을 완료 한 후 조사표 A,B형에 대한 면접을 시작한다.
이때 조사표 응답 순서를 참여자마다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 조사표 A,B형에 대한 면접을 종료한 후 참여자는 배부한 조사표 C형에 대한 응답을 한다.
- 조사표 C형에 응답을 완료 한 후 조사표 C형에 대한 면접을 시작한다.

조사표 A,B형 응답 자기 기입 시작**10분**

- 면접자는 면접 시작 전에 참여자가 조사표 A와 B형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면접진행자는 조사응답자에게 조사표에 대한 응답 순서(조사표 A형+조사표 B형, 조사표 B형+조사표 A형)를 참여자마다 번갈아가면서 진행하여 학습효과를 상쇄해야 한다.
- 면접자는 참여자가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을 할 때 응답과정 시 관찰한 내용(응답을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려하거나 하는 등)을 기록해 둔다.
-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면접자는 참여자의 질문을 받지 않으며 만일,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질문을 하려 했던 참여자가 있다면 조사표 응답이 완료된 후 해당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한 후 면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한다.

조사표 A,B형에 대한 면접 시작**30분**

-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는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응답한 조사표를 참고하여 응답한다
-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가 쉽게 응답하지 못하거나 응답내용을 바꾸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예) 응답하시기 전에 머뭇거리시는 것 같았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응답을 꽤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주시 수 있으신지요?

○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면접 지침 시작

- 문항에 대한 면접의 경우 해당 문항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문항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주어야 한다.
-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만일, 범죄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해당질문을 하지 않는다(해당질문의 경우 바탕색으로 표시해두었음)

1) 조사표 비교 평가 : 설문 A형의 문항 1번 ~ 문항 8번 vs. 설문 B형의 문항 23번 ~ 30번

면접 지침 예시
• 설문 A형의 문항 1번부터 8번과 설문 B형의 문항 23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은 모두 지난 한해 동안의 범죄피해경험을 묻는 문항입니다. 지난 한해 여러분의 범죄피해경험을 기억해 내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가령, 조사대상시점과 기준시점의 불일치- 현재 2014년도 8월인데 설문은 작년 한해동안의 피해경험을 묻고 있어 기억이 안남)
• 만일, 피해경험이 생각이 나셨다면 작년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정보(발생일시, 장소, 가해자여부, 피해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까? 각각의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문해 주십시오.
• 설문 A형의 경우는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등의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직접 묻는 방식으로 범죄피해여부를 선별하였고 설문 B형의 경우는 사건에 대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과 단서를 제공하여 응답자가 특정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상하고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A형과 B형 가운데 어떠한 유형이 응답하기에 쉬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A형과 B형 가운데 범죄피해경험을 기억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조사표 A형과 B형 가운데 어떠한 것을 먼저 응답하셨습니다까?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다면 첫 번째 응답한 조사표에서 응답하셨습니다까? 두 번째 응답한 조사표에서 응답하셨습니다까? 두 유형의 조사표에 모두 응답하셨습니다까? 만일,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면 첫 번째 응답하신 조사표였습니까? 두 번째 응답하신 조사표였습니까? 한 가지의 설문지 유형에만 있다고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조사 응답의 편의성 및 응답오류 : 설문 B형의 문항 23번 ~ 30번

면접 지침 예시
• 설문 B형의 경우 문 23번, 문24, 문27, 문28, 문29, 문30은 피해경험 회상을 돕기 위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예시문이 범죄피해 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 B형의 문 23번, 문24, 문27, 문28, 문29, 문30의 모든 예시문을 꼼꼼히 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에 나온 용어가 귀하에게 익숙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각 문항별로 면접자가 읽어주면서 진행한다).
• 설문 B형의 문 24번부터 문30까지 각 문항에서 '앞에서 언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동일한 사건은 사건발생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 또

는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만일, 자신의 집에서 허락없이 들어와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갔다면 문항 몇 번에 '있었다'고 응답하시겠습니까?
• 설문 B형에서 문항 28번에서 제시된 예시문 모두 폭행이나 협박피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만일,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 했다면 문항 몇 번에서 '있었다'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참여자가 문항 30번에서 '있었다'고 응답하셨다면 문항 28번의 예시를 읽어주면서 왜 28번에서 응답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확인한다)
• 만일, 귀하가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다면 해당 문항과 예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설문 B형의 문 24번부터 문30까지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항목이 두 개 이상입니까? 만일, 두 개 이상이라면 범죄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조사방법에 대한 선호도

면접 지침 예시
귀하가 범죄피해조사의 응답자가 되어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과 조사가원이 묻고 기입하는 조사원대면면접조사 가운데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귀하가 응답자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자료수집방식에 있어서 종이로 인쇄된 종이조사표를 통한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조사방법 가운데 어떤 유형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만일, 귀하가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묻고 응답하는 조사원 대면면접조사방식을 선택하셨다면 수집방식에 있어서 전화조사, 종이조사표를 통한 조사, 넷북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한 조사 가운데 어떤 유형을 응답하시겠습니까?

조사표 C형 응답 자기 기입 시작

10분

- 면접자는 면접 시작 전에 참여자가 조사표 C형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면접자는 참여자가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을 할 때 응답과정 시 관찰한 내용(응답을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려하거나 하는 등)을 기록해 두고 면접과정에서 참여자의 응답내용을 기록한다
- 조사표 작성과정에서는 면접자는 참여자의 질문을 받지 않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참여자간의 대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질문을 하려 했던 참여자가 있다면 조사표 응답이 완료된 후 해당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한 후 면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한다

조사표 C형에 대한 면접 시작

20

-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는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응답한 조사표를 참고하여 응답한다
-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가 쉽게 응답하지 못하거나 응답내용을 바꾸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 예) 응답하시기 전에 머뭇거리시는 것 같았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응답을 꽤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주시 수 있으신지요?
-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면접 지침 시작
 - 문항에 대한 면접의 경우 해당 문항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문항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주어야 한다.

1) 조사 응답의 오류 가능성 : 설문 C형의 문항 1번 ~ 22번

면접 지침 예시
• 설문 C형의 문항 1번부터 22번까지 응답하시면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어색한 부분은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설문 C형의 문항 5번과 6번, 7번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렵다’는 용어가 익숙하십니까? 두렵다는 용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C형의 문항 5번과 6번, 7번의 질문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로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면접원은 해당 질문을 ‘불안하다’로 바꿔서 질문한다* 응답의 변화가 있습니까? 만일 응답이 달라졌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무리 의견 및 감사인사

10분

- 면접 이후 최종 질문
 - 혹시 지금까지 한 항목 중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 항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더 부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 응답자 기입 조사표 회수 및 감사인사

[부록 2-2] 참여안내 및 자료제공동의서

범죄피해조사표 비교연구를 위한 면접 참여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가가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피해자조사의 조사 항목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범죄피해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면접의 목적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를 응답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들이 조사항목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질문을 읽거나 들었을 때 떠오른 어떠한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접 과정은 응답자의 동의하에 녹음이 되는데, 이 자료에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범죄피해조사표 비교 연구』 면접
-자료제공 동의서-

본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표 비교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에 참여하고
면접과정이 녹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자료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 목적에 녹음자료가 사용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이름 : _____ (서명) _____

날 짜 : _____

[부록 3-1] 개편 전 범죄피해 스크리닝 질문(A형)

개편 전 범죄피해 스크리닝 질문(A형)

주관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기관 : 미디어리서치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미디어리서치**
MillwardBrown

ID					
----	--	--	--	--	--

(설문A형)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여러 가지 범죄현상을 연구하고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피해를 입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1991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아홉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귀하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제비뽑기 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도 무기명으로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목적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자로 선정된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귀하를 비롯하여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범죄피해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오니, 부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사 관련 문의처 : (02)3488-2794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조사연구팀

▶ 다음은 귀하께서 작년 1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동안 당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

1. 작년(2013년)에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부속품(카스테레오, 타이어, 엔진 부품, 자동차 용품 등)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___ 0) 비해당(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___ 1) 없다 (☞ 2번 문항으로)

___ 2) 있다 (☞ 1-1번 문항으로)

1-1. 있다면, 몇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번

2. 작년(2013년)에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를 도난 당한 일이 있습니까?

___ 0) 비해당(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___ 1) 없다 (☞ 3번 문항으로)

___ 2) 있다 (☞ 2-1번 문항으로)

2-1. 있다면, 몇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번

3. 작년(2013년)에 귀하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나 물건(귀금속, 텔레비전, 오디오, 컴퓨터 등)을 몰래 훔쳐간 적이 있거나 훔쳐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단, 도둑이 가족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경우에는 이 문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___ 1) 없다 (☞ 4번 문항으로)

___ 2) 있다 (☞ 3-1번 문항으로)

3-1. 있다면, 몇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번

4. 작년(2013년)에 귀하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귀하나 귀하의 가족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돈(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나 물건(귀금속, 텔레비전, 오디오, 컴퓨터 등)을 빼앗아 간 적이 있거나 빼앗아 가고자 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없다 (☞ 5번 문항으로)

___ 2) 있다 (☞ 4-1번 문항으로)

4.1. 있다면, 몇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번

5. 작년(2013년)에 귀하는 집 밖에서 소매치기나 날치기, 들치기 등을 당하여 돈(현금, 수표, 유가증권)이나 물건(귀금속, 시계, 핸드백, 가방, 카세트 등)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나 잃어 버릴 뻔한 적이 있습니까? (단,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이 문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_____ 1) 없다 (☞ 6번 문항으로)

_____ 2) 있다 (☞ 5-1번 문항으로)

5-1. 있다면, 몇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번

6. 작년(2013년)에 귀하는 집 밖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여 돈(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나 물건(귀금속, 시계, 핸드백, 가방, 카세트 등)을 빼앗긴 적이 있거나 빼앗길 뻔한 적이 있습니까?

_____ 1) 없다 (☞ 7번 문항으로)

_____ 2) 있다 (☞ 6-1번 문항으로)

6-1. 있다면, 몇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번

7. 작년(2013년)에 귀하는 누군가(낯선 사람, 잘 알고 지내는 사람, 가족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피해를 입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단, 앞 문항에서 대답한 강도와 여성의 경우 성폭행은 여기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1) 없다 (☞ 8번 문항으로)

_____ 2) 있다 (☞ 7-1번 문항으로)

7-1. 있다면, 몇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번

8. 작년(2013년)에 귀하는 누군가(낯선 사람, 잘 알고 지내는 사람, 가족 등)에게 강간이나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_____ 1) 없다

_____ 2) 있다 (☞ 8-1번 문항으로)

8-1. 있다면, 몇 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번

[부 록 3-2] 개편 후 조사표 범죄피해 스크리닝 질문 (B형)

주관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기관 : 미디어리서치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	--	--	--	--	--

(설문 B형)

2013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인사 말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조사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조사 관련 문의처 : (02)3488-2794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조사연구팀

〈조사표 쓰는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쓰십시오.
-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쓰십시오.

IV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23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 ③ 누군가 돈을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값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⑧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24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까?(※ 도둑맞을 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시

- ① 현금, 수표, 상품권 등
- ②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 ③ 지갑, 핸드백, 가방
- ④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⑤ 전자거 혹은 그 부속품
- ⑥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 ⑧ TV, DVD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 ⑩ 그 외 다른 물건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	① 칼, 총과 같은 무기 ②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③ 돌이나 병을 던짐 ④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⑥ 귀하 앞에서 위협함 ⑦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 ② 친구, 애인 또는 이웃
- ③ 가족이나 친척
- ④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① 낯선 사람
- ② 조금 아는 사람
- ③ 잘 아는 사람

① 있었다 ⇒ 건 ② 없었다

[부 록 3-3] 배경변인 및 범죄피해 관련 이론적 변인(C형)

주관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기관 : 미디어리서치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	--	--	--	--	--

(설문 C형)

2013 년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인사 말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조사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조사 관련 문의처 : (02)3488-2794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조사연구팀

〈조사표 쓰는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쓰십시오.
-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쓰십시오.

I

동네와 이웃 환경

1

작년(2013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작년(2013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작년(2013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작년(2013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항 목	매우 감소 할 것	약간 감소 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증가 할 것	매우 증가 할 것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Ⅱ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 목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렇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포함)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 목	있었다	없었거나 모른다
1) 신체 피해	①	②
2) 재산 피해	①	②

10 귀하는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일주일 평균 며칠 정도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을 이용했습니까?

① 일주일에 5일 이상 ② 일주일에 3 ~ 4일
③ 일주일에 1 ~ 2일 ④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1 귀하는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2 귀하는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3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하와 가구원이 모두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① 거의 비우지 않았음 ②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④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⑤ 12시간 이상

14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 ~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배달라고 (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배 경 문 항

1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년 개월

18 최근 5년 이내(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회 ② 없다

19 가구원 가운데 현재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19-1** 번으로 ② 없다 → 응답 후 **20** 번으로

19-1 현재 집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호나 간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0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2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22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① 월평균 100만 원 미만	② 월평균 100 ~ 200만 원 미만	
③ 월평균 200 ~ 300만 원 미만	④ 월평균 300 ~ 400만 원 미만	
⑤ 월평균 400 ~ 500만 원 미만	⑥ 월평균 500 ~ 600만 원 미만	
⑦ 월평균 600 ~ 700만 원 미만	⑧ 월평균 700 ~ 1,000만 원 미만	
⑨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부 록 4] 조사표 효과 분석에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비교 시 중복사례 관련
조치 내용

<2012년 방식에서 삭제된 사례와 그 조치>

유지된 사례		삭제된 사례	
반복된 사례번호	피해범죄 유형	사례번호	피해범죄 유형
69	대인절도	70	대인절도
90	대인강도	89	기타범죄
1015	대인강도	1016	대인강도
1650	대인강도	1651	기타범죄
2545	대인절도	2546	기타범죄
2625	기타범죄	2626	기타범죄
3153	기타범죄	3154	기타범죄
3161	기타범죄	3162	기타범죄
3563	대인강도 (성범죄 유지)	3564	성범죄
3589	대인강도	3590	대인강도
3645	주거침입절도	3646	기타범죄
3647	기타범죄	3648	기타범죄
3797	성범죄	3798	기타범죄
4066	주거침입절도	4067	주거침입절도
4077	기타범죄	4078	기타범죄

결과적으로 대인절도 1사례, 주거침입절도 1사례, 대인강도 2사례, 기타범죄 10사례가 줄어들었다. 단 성범죄는 유지시켰음.

연구총서 14-B-05

전국범죄피해조사(IV)

-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

발행 | 2014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박상옥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범신사 (02)503-8737

I S B N | 978-89-7366-363-7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